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48-02
연구보고 2016-34-02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김은영 박원순 이재희 이혜민

주관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협력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6-48-01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육아정책연구소
16-48-02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6-48-03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6-48-04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영유아 학대 현황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 개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박원순 부연구위원 이재희 부연구위원 이혜민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연구위원	박원순 부연구위원 이재희 부연구위원 이혜민 연구원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윤정숙 연구위원 유진 부연구위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강지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김경희 팀장 김미경 상담원

머 리 말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중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유아의 특성 상 심각한 결과로 귀결되는 비율이 높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인식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대아동이 발견되는 비율은 1,000명당 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학대를 받고 성장한 아동들은 나중에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아동학대의 예방, 발견, 치료는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행복을 사회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고 우리 사회를 아동 존중 문화로 개선하는 것이 그 시작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영유아 학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과 영향, 관련 인식을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예방을 위한 체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와 그 기관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정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 학대 관련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다시 되돌아보고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 연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주신 정부 부처 관계자,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에 참석하여 본 연구에 대한 귀한 의견을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5
II. 연구의 배경	23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영유아 학대의 특성	23
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26
3. 아동학대 행위자	28
4. 아동학대 원인	29
5. 아동학대의 영향	37
6. 아동학대 관련 지원	41
III. 영유아 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44
1. 국내 제도 및 정책 분석	44
2. 국외 제도 및 정책 분석	82
3. 소결	102
IV. 학부모와 교사의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	106
1. 영유아 학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106
2. 영유아 학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	146
3. 영유아 학대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인식 비교	185
4. 소결	195
V. 정책 제언	201
1. 정책 방향	202
2. 제도 및 행정적 지원	202
3. 지원대상별 지원	205

참고문헌	214
부록	231
부록 1. 학부모 대상 설문지	233
부록 2. 교사 대상 설문지	242
부록 3. 메타분석에 활용된 연구와 각 변인별 상관 계수	254

표 차례

〈표 I-3- 1〉 설문지의 구성	20
〈표 II-1- 1〉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23
〈표 II-1- 2〉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25
〈표 II-1- 3〉 아동학대 유형별 비율	25
〈표 II-2- 1〉 아동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인지 여부	27
〈표 II-3- 1〉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28
〈표 II-4 1〉 아동학대 원인	29
〈표 II-4 2〉 영유아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36
〈표 III-1- 1〉 영유아 학대 관련법의 목적	45
〈표 III-1-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주요 내용	47
〈표 III-1-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 내용	50
〈표 III-1-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 직군	51
〈표 III-1- 5〉 「아동복지법」 개정 주요 내용	52
〈표 III-1- 6〉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주요 내용	54
〈표 III-1- 7〉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영역 중 ‘안전한 삶’ 관리 지표	57
〈표 III-1- 8〉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영역 중 ‘안전한 삶’ 내 아동학대 관련 소관 부처 현황	57
〈표 III-1- 9〉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부처의 역할	60
〈표 III-1-1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	61
〈표 III-1-11〉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설치 현황	62
〈표 III-1-12〉 최근 5년간 아동일시보호시설 현황	63
〈표 III-1-1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권고 사항	65
〈표 III-1-14〉 CCTV 설치 현황: 2016년 1월 기준	68
〈표 III-1-15〉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아동학대 안전(2016년)	70
〈표 III-1-16〉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사항	71
〈표 III-1-17〉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73
〈표 III-1-18〉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및 교육시간: 유치원	74

〈표 III-1-19〉 연도별 해바라기 센터 운영 현황	75
〈표 III-1-20〉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내용	78
〈표 III-1-21〉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	81
〈표 III-3- 1〉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관련 예산	102
〈표 IV-1- 1〉 조사 대상자 특성	107
〈표 IV-1- 2〉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108
〈표 IV-1- 3〉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사항	109
〈표 IV-1- 4〉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관련 행동	111
〈표 IV-1- 5〉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행동 경험	112
〈표 IV-1- 6〉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주로 하는 경우 상황	114
〈표 IV-1- 7〉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주로 하는 경우 이 상 황을 줄이기 위한 노력	115
〈표 IV-1- 8〉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해당 기관의 가정방문 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여부	117
〈표 IV-1- 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에 대한 인식 및 이를 목 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지 여부	118
〈표 IV-1-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학대 의심 행위의 대상 아동	119
〈표 IV-1-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사항	121
〈표 IV-1-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 은 이유	122
〈표 IV-1-1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내 자녀 학대를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123
〈표 IV-1-1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123
〈표 IV-1-15〉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124
〈표 IV-1-16〉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정보 획득 경로	125
〈표 IV-1-17〉 육아기간 중 받은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횟수	126
〈표 IV-1-18〉 1회당 평균 교육시간	127
〈표 IV-1-19〉 수강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의 효과 정도	128
〈표 IV-1-20〉 영유아 학대 관련 부모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129
〈표 IV-1-21〉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130
〈표 IV-1-22〉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	131

〈표 IV-1-2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32
〈표 IV-1-2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	133
〈표 IV-1-2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2~3순위	133
〈표 IV-1-26〉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	134
〈표 IV-1-27〉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2~3순위	135
〈표 IV-1-28〉 가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135
〈표 IV-1-29〉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137
〈표 IV-1-30〉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138
〈표 IV-1-31〉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140
〈표 IV-1-32〉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	141
〈표 IV-1-3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 설치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142
〈표 IV-1-34〉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	144
〈표 IV-1-35〉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	145
〈표 IV-1-36〉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2~3순위	145
〈표 IV-2- 1〉 조사 대상자 특성	146
〈표 IV-2- 2〉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147
〈표 IV-2- 3〉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 중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	149
〈표 IV-2- 4〉 아동에게서 신체적·행동적 징후 목격 경험 및 아동학대 의심 정도	150
〈표 IV-2- 5〉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행한 조치	152
〈표 IV-2- 6〉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	153
〈표 IV-2- 7〉 향후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취할 행동	154
〈표 IV-2- 8〉 아동이 기관에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	154
〈표 IV-2- 9〉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156
〈표 IV-2-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목격 혹은 본인이 행한 적 있는 행동	157
〈표 IV-2-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행한 조치	159
〈표 IV-2-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목격 혹은 들었을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	160
〈표 IV-2-13〉 향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취할 행동	161
〈표 IV-2-14〉 기관에서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하는 상황	162
〈표 IV-2-15〉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	163
〈표 IV-2-16〉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교육 수강 여부	164
〈표 IV-2-17〉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방식	165
〈표 IV-2-18〉 지난 1년간 받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166
〈표 IV-2-19〉 1회당 평균 교육시간	167
〈표 IV-2-20〉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주최 기관	168
〈표 IV-2-21〉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 여부	169
〈표 IV-2-22〉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않은) 이유	170
〈표 IV-2-23〉 아동학대 관련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	171
〈표 IV-2-24〉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171
〈표 IV-2-25〉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	172
〈표 IV-2-26〉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73
〈표 IV-2-2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	174
〈표 IV-2-28〉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74
〈표 IV-2-29〉 가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175
〈표 IV-2-30〉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176
〈표 IV-2-3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인지여부	177
〈표 IV-2-32〉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여부	178
〈표 IV-2-33〉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여부	179
〈표 IV-2-3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180
〈표 IV-2-35〉 CCTV 설치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	181
〈표 IV-2-3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대 한 인지 및 활용 여부	182
〈표 IV-2-37〉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의 내 용에 대한 만족도	183
〈표 IV-1-38〉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요구: 1순위	184

〈표 IV-1-39〉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요구: 2~3순위	185
〈표 IV-3- 1〉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185
〈표 IV-3- 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 서 제출 및 수령 여부	186
〈표 IV-3- 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학대 의심 행동 목격 여부	186
〈표 IV-3- 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사항	187
〈표 IV-3- 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187
〈표 IV-3- 6〉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188
〈표 IV-3- 7〉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188
〈표 IV-3- 8〉 1회당 평균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간	188
〈표 IV-3- 9〉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의 효과 여부	189
〈표 IV-3-10〉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189
〈표 IV-3-11〉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	189
〈표 IV-3-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90
〈표 IV-3-1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 순위	190
〈표 IV-3-14〉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91
〈표 IV-3-15〉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 한 조치	191
〈표 IV-3-16〉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192
〈표 IV-3-17〉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192
〈표 IV-3-18〉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193
〈표 IV-3-19〉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	193
〈표 IV-3-2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193
〈표 IV-3-21〉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 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194
〈표 IV-3-22〉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	194

그림 차례

[그림 I-3-1] 협동연구 체계 및 구성	15
[그림 I-3-2] 메타분석 논문 선정 단계에 대한 PRISMA 흐름도	17
[그림 III-1-1]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49
[그림 III-1-2]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개요	56
[그림 III-1-3]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	58
[그림 III-1-4]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67
[그림 III-1-5]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추진 체계	77
[그림 III-1-6] 전국 스마일센터 설립 연혁	79
[그림 III-2-1] 지역 아동보호 당국에 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조치	93
[그림 III-2-2] 긴급 보호	94
[그림 III-2-3] 아동법에 따른 평가 조치	95
[그림 III-2-4] 전략회의 이후의 조치	96
[그림 III-2-5] 아동보호 회의 소집후 상황	97
[그림 V-1-1]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	201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신체적 학대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254
〈부록 표 2〉 정서적 학대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255
〈부록 표 3〉 방임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257
〈부록 표 4〉 신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259
〈부록 표 5〉 정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261
〈부록 표 6〉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265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됨.
 -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15년에는 19,203건으로 지난 15년간 4.6배 증가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 영유아 학대는 심각한 결과로 귀결되는 비율이 높음.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유아의 특성 상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가 주로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음.
 - 2015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19건 중 피해 아동이 0~6세 영유아인 비율은 약 89%임.
- 본 연구는 영유아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아동학대의 정의와 영유아 학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과 영향, 관련 인식을 정리함.
-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관련 제도와 범 부처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함.
- 선진국(영국과 독일)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알아봄.
-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관련 인식을 분석함.
-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함.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통계자료, 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함.
 - 영유아기 아동학대 발생 요인에 대해서 통합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영

유아 학대 관련 20개 논문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함.

설문조사

-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 1,139명, 교사 1,247명, 총 2,386명의 응답을 분석함.

국외 출장: 영국 및 독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2. 연구의 배경

가. 아동학대의 정의 및 영유아 학대의 특성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임.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함.

영유아 학대의 특성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방임의 비율은 적어지나, 신체학대와 성학대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1세 미만은 방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1~6세에는 정서학대, 신체학대의 순으로 비율이 높음.

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경향이 있음.

다. 아동학대 행위자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지난 14년 동안 80%를 넘다가 2015년 처음으로 80% 미만인 79.8%로 나타남.

라. 아동학대 원인

- 아동학대에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 및 갈등적 구조, 부모의 양육 관련 태도, 사회적 구조 등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메타분석 결과 영유아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요인은 아동특성, 가족특성, 교사특성, 지역사회요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애착, 양육태도였음.
 -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어머니 성격,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였음.
 -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교사의 자아존중감, 교사의 직무특성이었음.
 - 방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어머니 성격, 양육태도, 교사의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였음.

마. 아동학대의 영향

- 아동학대는 아동의 적응 문제, 행동문제 및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침.
- 아동학대는 아동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바. 아동학대 관련 지원

- 아동학대 관련 지원에는 부모 교육 등의 가정 지원, 보건 전문가 판별 등의 보건 지원, 피해자 치료 등의 치료 지원, 아동 보호 서비스 등의 법과 교정 조치, 예방과 교육 캠페인 등 지역사회 기반 노력 등이 있음.

3. 영유아 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가. 국내 제도 및 정책

□ 아동학대 관련법

-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심판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등이 있음.

- 2012년 발생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2014년 9월부터 시행 중임.
 - 제정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였음.
 -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 11월부터 시행 중임.
- 특례법과 함께 아동복지법이 2014년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통해서서는 종래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었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였음.

□ 아동학대 관련 정책

- 정부에서는 2014년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였고, 2015년에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한편 정부는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의 원년으로 선포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전면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강화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처벌을 강화함.
 -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아동을 조기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시·군·구 별로 운영 중임.
 - 아동보호전문기관 외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일시보호시설도 운영 중임.
- 보건복지부에서는 또한 2015년 어린이집 아동폭력(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 중임.

-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one-strike out 제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수요자 중심의 평가인증제도 개편,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등이 있음.
- 교육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음.
 -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안전이 지속적으로 상정되고 있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교육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음. 본 매뉴얼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무단결석 시 교직원의 대응요령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음.
 - 이후 매뉴얼 내용을 강화하여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출석하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 아동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안내하였음.
- 이외에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치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할 경우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였음.
-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부모교육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부모가 직면한 복합적 문제 해결과 자녀의 안전한 양육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외에도 아동학대 수사 역량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학대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정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최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은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발견 및 예방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시스템 정비 및 부모교육 확대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아동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에 한계점을 가짐.

나. 국외 제도 및 정책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에 관한 총 54개의 조항이 채택되었음.
- 세계보건기구는 각 국가와 문화에 따라 아동학대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아동을 위탁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유기 혹은 방기, 상업적/기타 착취,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존엄성에 대한 실질적, 잠재적 위협의 원인’이라 정의한 바 있음.
 -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아동학대에 더욱 취약한 세 가지 요인으로 저연령, 여아, 장애아, 쌍생아, 미숙아와 같은 특수성을 제시하였음.
-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방지법(CAPTA)을 최초로 제정하고 1997년 기존의 입양지원법을 개정하여 1997년 입양과 안전한 가족법(ASFA)을 제정하였음.
 - 미국은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학대 방지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아동학대를 줄이고,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복지, 학교 준비도, 신체 건강 및 발달, 긍정적 양육, 가정의 자족능력, 의료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부상을 방지하도록 함.
 - 미국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를 통하여 자격을 갖춘 교원을 배치하고, 가려진 공간을 최소화하며, 교원에게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지침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사에 대한 지속적 감독, 그러나 학대예방의 미명하에 교사-아동 간의 신체적 상호작용을 제약하지 말아야 하며, 교원 채용 시 검증을 제안하였음.
- 일본은 아동학대가 아동의 ‘심신의 성장과 ‘인격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정의한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2000년에 제정하였음.
 - 일본은 학교, 아동복지시설, 병원 기타 아동의 복지 업무와 관계있는 단체 및 학교가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동학대를 신고 받은 아동상담소장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을 면접, 안전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보호자를 출두하도록 하며 이를 거절하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강제 방문 조사를 취할 수 있음.

- 영국의 아동에 관한 기본법은 1989년에 제정된 「아동법」(Children Act)이나 관련법의 제정은 이미 1800년대 중반부터 있어왔음.
 - 현대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는 2000년 일어난 클림비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 영국의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줄고 있는 추세임.
 - 영국의 법률은 아동학대에 대한 업무를 지역의 공공기관이 담당하게 하고 있으나 1884년에 세워진 NSPCC라는 자선단체도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 영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서는 교사가 아니라도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는 경력조치를 통과해야만 채용이 가능하며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의 관심사로 취급하고 있음.
-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이후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청(Jugendamt)이 아동학대예방조치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청은 독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이는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 보육, 사회화 및 생활 전반에 걸친 매우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기관임.
 - 아동학대와 관련한 청소년청의 역할은 아동 보호, 가족상담, 별거 및 이혼상담, 양육지원 및 입양 배정, 보호자 및 관리자의 지정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더 이상 보호하기 힘들어도 마땅한 보호자를 찾지 못할 때 법원은 청소년청을 보호자로 지정함.
 - 독일의 아동보육 및 교육기관의 종사자는 양성과정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변호사의 교육을 6개월간 받으며, 14주간 아동학대 관련 직무교육을 받은 선임교사에 의한 전과교육을 실시함.

4. 학부모와 교사의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

가. 학부모의 인식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전반적으로 영아 부모, 어린이집 부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아동학대 경험 관련해서는 성적학대에 비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특히,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경험이 있다고 한 비율이 50%가 넘었음.
- 가정 내 학대관련 행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라고 응답하였음.
- 자녀가 무단결석했을 때 기관에서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한 학부모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신체학대와 성학대에 비해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체별지지도)가 아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한두 번 맞고 클 수 있다는 생각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아동학대 관련 교육

-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정보는 TV 등 언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인 92.4%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관련 지식을 얻는 비율은 낮았음.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가 지적한 것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이었으며, 다음으로 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음.
-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은 양육스트레스였으며, 다음으로 부부 및 가족갈등 비율이었음. 이러한 원인에 맞게 양육스트레스 경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 아동학대 관련 정책이나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잘 모르는 편이었으며,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5.2%에 불과함.
-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하는 정책은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교육 실시'였음.

나. 교사의 인식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 가정에서의 학대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어린이 집, 유치원 순임.
- 아동에게서 정서적 학대로 인한 행동적 징후의 목격 비율이 높았음.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실제로 행한 조치는 부모와 개별 면담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향후에는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체적 학대 행동 중에는 영유아의 머리카락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을 목격하거나 직접 행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정서적 학대 행동 중에서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을 목격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본인이 한 적이 있는 행동은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에 행한 조치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기관에서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하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아동학대 관련 교육

- 지난 1년간 대부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2회, 평균 1~2시간,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을 모두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 관련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1순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집단 강의 및 강연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의 1순위 응답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의 1순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의 1순위는 양육스트레스,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의무화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사의 인지도는 대체로 높았으며,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4명 중 3명이 정확히 알고 있었음.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4점 척도에 평균 2.7점으로 보통에서 약간 도움이 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음.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있으나 활용도는 다소 낮았으며, 매뉴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만족하는 편 이상으로 나타남.
-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은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순으로 나타남.

다. 학부모와 교사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부모가 교사보다 심각하게 인식

하고 있었음.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교사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와 교사 모두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 관련 교육

-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와 회당 평균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간은 상대적으로 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와 교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로 부모는 ‘교사양성과정 강화’,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는 부모와 교사 모두 양육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로 부모는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의무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 정도는 모든 항목에 대해 교사의 인지 정도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음.
-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로 부모는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라는 응답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임.

5. 정책 제언

가. 정책 방향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수립
-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정책에 비중

나. 정책 방안

- 제도 및 행정적 지원
 -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학대 발생 시 기관 폐쇄 조항 개정,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 분리조사 및 전담조사제 도입
 - 부처 간, 부처와 실행기관 간의 협업 및 시스템 공유 필요
 - 의료시스템 및 빅데이터의 활용
 - 아동학대에 대한 탄력적인 개입 필요
 -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활용
 - 학대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및 교육
- 지원대상별 지원
 - 부모를 위한 지원: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TV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부모 자조 모임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 교사를 위한 지원: 현직교사교육 강화, 예비교사 선발과정 강화 및 교사양성교육과정 개선, 구조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운영 개선, 교사 직무 부담 감소를 위한 인력 지원,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상담 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교사의 자존감 강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최근 가정을 비롯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았으나 최근 영유아 학대에 대한 언론보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은 전년과 대비하여 36.0%로 역사상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2015년에는 19,203건으로 지난 15년간 4.6배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의 가파른 상승은 실제로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신고된 건수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다루어진 건은 16,651건으로 신고된 건수의 86.7%이며,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11,715건으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의 70.4%이다. 2015년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11,715건 중 1세 미만은 2.9%, 1-3세는 11.2%, 4-6세는 14.4%로 영유아기 학대 사례의 비율이 2.5%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영유아는 신체통제 능력과 위험에 대한 감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성인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유아는 학대에 노출되어도 표현능력이 낮고 대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5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19건 중 피해 아동이 0~6세 영유아인 비율은 약 89%(17건)로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가 주로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우리나라에서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학대 보호도 한 단계 진보하였다. 새로운 법의 도입으로 그동안 아

동학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법에서는 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가정 보호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하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가벼운 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학대의 정의와 영유아 학대의 특성을 알아보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며, 학대의 원인을 살펴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통해 기관에서의 학대와 가정에서의 학대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영유아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¹⁾

첫째, 아동학대의 정의와 영유아 학대의 특성을 파악한다. 아동학대의 유형과 연령에 따른 학대의 특성 탐색을 통해 영유아 학대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과 영향, 관련 인식을 정리한다. 또한 메타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다뤘던 아동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동학대 발생 요인에 대해서 통합된 결과를 산출한다.

셋째,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관련 제도와 범 부처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의 정책을 분석한다.

넷째, 선진국의 영유아 학대 관리 및 예방시스템 구축 제도를 알아본다. 특히 영국과 독일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학부모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인식을 통해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현황과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1) 협동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영유아 학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을 제안하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영유아 학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학대 현황을 분석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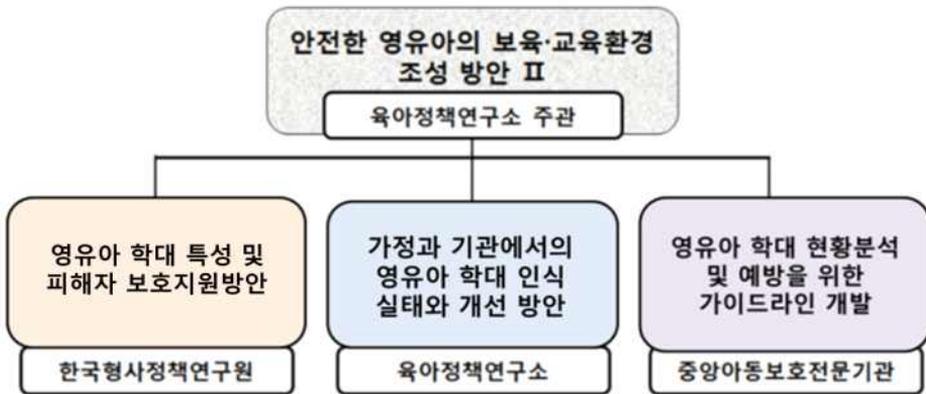
여섯째, 연구결과를 기초로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가.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협동연구체계 구성 및 운영

본 협동연구의 주관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협력팀’을 구성하여 각 기관별 연구팀과 연계하고 상호 지원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3차에 걸쳐 협동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협동기관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3차년도 연구의 2년차 연구로 ‘영유아 학대’를 주제로 하였다.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수행을 위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구팀과 [그림 1-3-1]과 같이 연구협력체계를 구성하였으며, 관련 주제와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림 1-3-1] 협동연구 체계 및 구성

나. 문헌연구

국내·외 선행연구와 영유아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과 함께 선진국의 영유아 안전 정책 및 지표 관련 주요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다. 메타분석

본 분석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다뤘던 아동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동학대 발생 요인에 대해서 통합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선행 국외 메타분석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어떠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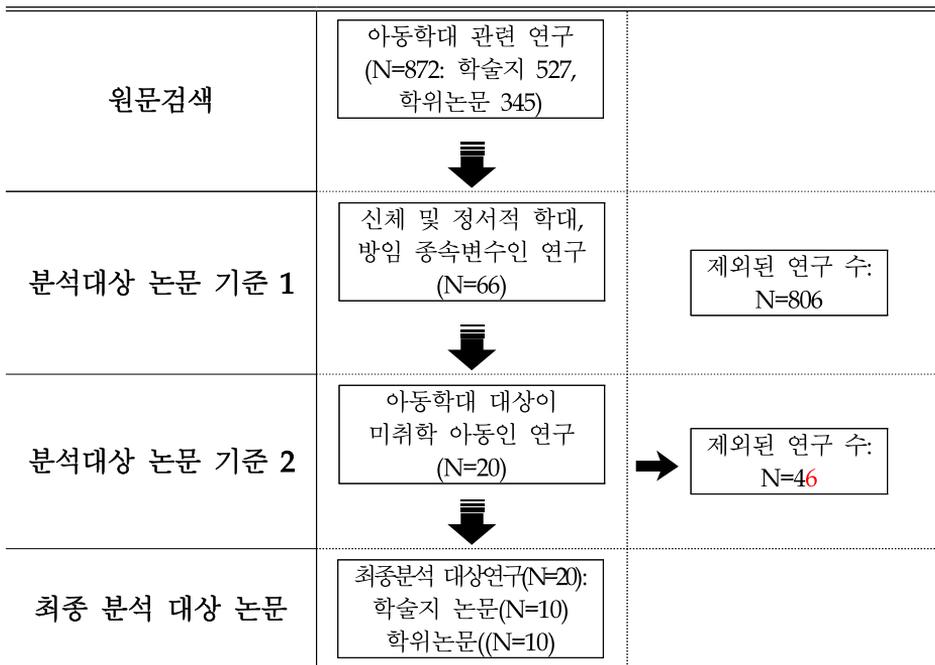
1) 논문 검색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학술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술데이터는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시스템(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누리미디어(DBpia), 학술교육원(earticle), 교보문고 스킨라, 학지사 뉴논문 등을 활용하였다. 관련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영아학대’, ‘유아학대’, ‘학대’, ‘가정폭력’을 키워드로 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학술지논문 527개 학위논문 345개를 찾아 총 872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2) 분석 논문 선정

검색한 논문 중 메타분석에 활용할 논문은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성 학대 관련 논문은 제외하였다. 성학대의 경우, 다른 학대와는 발생 원인이 다르고 연구도 독립(Stoltenborgh, van IJzendoorn, Euser, & Bakermans-kranenburg, 2011)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성 학대를 다룬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논문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매개변인이나 종속변인이 신체학대, 정서학대(언어학대 포함), 방임인 논문만 분석에 포함되었다. 또한, 동일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각기 다른 논문에 출판한 경우도 신뢰도가 높은 하나의 연구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학위논문을 학술

지에 투고한 경우에는 학술지에 출판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됨으로 인하여 삭제된 분석 있는 경우는 학술지에 출판된 결과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학대 아동의 연령이 취학 전인 논문만 본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효과의 크기를 산출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기재하고 있는 논문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872개의 논문 중 20개의 논문만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논문 선정과정은 [그림 1-3-2]에 제시하였다.



[그림 1-3-2] 메타분석 논문 선정 단계에 대한 PRISMA 흐름도

3) 자료 코딩

분석에 활용할 최종 논문을 정한 후 자료에 대한 코딩을 실시하였다. 논문의 출판년도, 응답자 특성, 아동의 나이, 학대유형(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독립변인, 사례수, p값, t값, F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코딩 후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4) 자료 분석

효과의 크기는 Fisher의 Zr 변환공식을 활용²⁾하여 표준화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준화상관계수 산출은 각 연구마다 기준이 다른 효과크기를 표준화하여 통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효과크기들에 대한 표집오차와 측정오차를 활용하여 효과크기를 교정 후 각 연구의 사례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 표준화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효과크기와 더불어 아동학대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 간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Whitener, 1990). 즉, 95% 신뢰구간에 실제 예측된 값과 진점수간의 차이 점수의 오차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한 것으로 산출된다.

평균 효과 크기는 R의 meta 패키지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각 변인별 효과 크기 k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연구의 모집단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표준화 상관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된 각 연구들의 계수 값이 일관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질성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이질성 통계치를 나타내는 지수 중 I^2 ³⁾을 활용하였다. I^2 은 총 분산 중 실제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며 25%이면 이질성이 작은 것, 50%이면 중간 크기 정도, 75% 이상이면 이질성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황성동, 2015).

5) 분석의 틀

메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아동학대 발생 선행요인을 범주화 하였다. WHO(2006)에서는 생태학적 모델과 Stith 등(2009)의 메타분석 프레임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WHO는 아동학대 발생 선행요인을 개인적 요인, 관계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Stith 등은 미시체계를 부모-아동상호작용, 부모특성, 아동특성, 가족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기준과,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 잠재 유발요인으로 가정한 요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특성 부모특성, 교사특성, 지역사회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아동특성에는 아동의 성별, 연령, 출생순서

2) 표준화된 효과크기 산출 공식: $Z_r = 0.5 \ln \frac{1+r}{1-r}$

3) $I^2 = \frac{Q-df}{Q} \times 100\%$

가 있었으며, 부모 특성으로는 부모 연령 및 학력, 직업, 건강, 어머니 성격,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 등이 있었다. 교사 특성으로는 교사의 연령 및 학력, 자아존중감, 교사의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직무스트레스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시설수준과 기관 유형, 주거환경 등이 있었다.

아동학대 유발 잠재 변인들의 유형과 발생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범주화된 요인(부모-아동상호작용, 부모특성, 아동특성, 가족특성)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실행하지 않았다. 하나의 범주로 묶였다 하더라도 선행 연구자 따라서 아동학대 유발 잠재 변인의 범주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통일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Stith 등(2009)의 메타분석과 동일하게 각 개별 요인의 효과 크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효과 크기가 하나인 경우는 표준화 된 효과크기 Z_r 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라. 설문조사

가정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고, 학대 관련하여 어려운 점과 요구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 조사대상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이다. 유치원 400개원, 어린이집 800개원 총 1,200개원의 교사 1명씩 1,200명과 연령별 기관 이용 비율을 고려하여 학부모 1,000명으로 총 2,200명을 조사 대상 목표로 설정하였다. 교사 대상 조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역과 설립유형을 고려한 층화표집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사수를 고려한 제곱근 비례 할당을 하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교사와 유아교사를 강제 할당하였다. 학부모 조사는 응답의 독립성을 위해 조사기관이 보유한 학부모 패널 중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사조사는 유치원 교사 395명, 어린이집 영아 교사 543명, 유아교사 309명으로 총 1,24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고, 부모조사는 유치원 학부모 230명, 어린이집 영아 학부모 461명,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 448명으로 총 1,13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최종 설문조사 분석 대상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를 합하여 총 2,386명이다.

2)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선행연구(안재진, 2002; 이경숙·박진아·신의진, 2015; 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Straus, Hamby, Finkelhor, Moore, & Runyan, 1998)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였다. 교사에게는 소속 기관에서의 사건 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의 목격이나 간접 경험,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며, 학부모에게도 가정에서의 상황 뿐 아니라 자녀가 기관에서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녀가 가정이나 기관에서 경험하거나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법 및 매뉴얼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보았다. 설문지는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전문가를 비롯하여 아동학대 관련 연구를 수행했던 전문가 7인과 관련공무원 2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3-1>과 같으며, 설문지는 부록 1, 2에 제시하였다.

<표 1-3-1> 설문지의 구성

구분		설문 내용	설문대상	
			부모	교사
조사 대상자 및 배경 특성	소속 기관	설립유형, 기관규모		○
	개인	성별, 연령, 학력, 자녀와의 관계, 소재지	○	○
		전공, 직위, 교사 경력		○
		담당 영유아 연령, 담당 영유아 수		○
	가족	가정형태, 보조양육자 유무, 모취업 유무, 월평균 가구 수입	○	
자녀	성별, 연령, 재원기관 설립유형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아동학대의 심각성	○	○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우려	○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상황에 대한 인식	○	○
아동학대 목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목격 여부, 유형, 학대행위자, 조치, 이유, 향후 행동 방향	○	○
		가정에서의 학대 의심 증상, 가정에서의 학대 의심 사례 경험 여부 및 조치		○
아동학대 관련 교육 정도		교육여부, 횟수, 주최기관, 효과,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교육내용, 효과적인 교육 방법	○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책		기관 아동학대의 원인, 필요한 조치, 가정 아동학대의 원인, 예방조치,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	○	○

(표 I-3-1 계속)

구분	설문 내용	설문대상	
		부모	교사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특례법 인지 정도, 신고의무자 대상 인지 정도, 과태료 인지 정도, CCTV에 대한 인식 및 이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지 정도,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한 인지 정도	○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에 대한 인지 정도 및 활용 여부, 만족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

3) 설문조사 절차

설문지는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웹 설문지로 제작하였다. 기관조사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리스트 중 목표 표본의 10배수를 난수 추출하여 전화 리쿠르팅을 하였다. 전화 리쿠르팅은 추출된 기관을 무작위로 뽑아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Auto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수락한 담임교사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수집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와 설문조사 웹주소를 배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수락하고 설문을 하지 않은 경우 조사 중간에 전화를 하여 참여를 독려했다. 학부모 조사의 경우 조사업체 패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전질문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가려낸 후 조사대상자로 판명되면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4) 설문조사 분석

수집된 자료를 SPSS 20.0(Window용)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본배경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을 산출한다. 연구대상자의 소속기관과 개인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χ^2 검증 t검증, F검증을 실시하고, F검증에서는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마. 국외 출장

영유아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학대를 예방하고 실천하기 위한 선진국의 기구들과 정부 중심의 추진 정책들을 관찰하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영국과 독일로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영국에서는 '범정부적 실천계획'의 추진내용을 살펴보고자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아동학대 담당 부서(Child Protection and Safeguarding Unit)와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기구(Children's Commissioner) 및 보육시설(House of Commons Nursery) 관계자를 면담하였다. 독일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원체계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아동학대 담당 정부기관인 베를린 중앙청소년청(Jugendamt Berlin Mitte)과 학대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기구인 아동긴급보호센터(Kindernothilfe) 및 유치원(kiddies international) 교사를 면담하였다.

바.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본 연구의 주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정책담당자와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서의 중간 보고워크숍과 최종보고워크숍에 부처 담당자가 참여하였다.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서면자문을 받았으며,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대상을 구체화하며 연구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영유아의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사. 제2회 어린이 안전포럼 개최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주요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협동연구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포럼을 개최하였다. 연구결과가 마무리될 무렵인 2016년 12월 15일에 '학대 예방을 통한 영유아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작년에 이어 제2회 어린이 안전포럼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와 부처공무원 및 관련 단체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영유아 학대의 특성

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아동복지법 제 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1-1〉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료: 아동복지법 제17조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하며, 해당 학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먼저 신체학대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이 포함되며,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말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성학대는 아동 대상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마지막으로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하며, 방임은 세부적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그리고 유기로 분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이러한 학대에 대한 유형 구분은 다른 나라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복지에 책임 있는 자가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학대, 무관심, 부적절한 양육을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해롭거나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일본에서는 아동학대조사연구회가 1983년에 아동학대에 대해 정의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아동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 보호의 태만 또는 거부, 성적학대, 심리적 학대로 나누고 있다(김잔디, 2014).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 국문; p. 7~8)’고 정의하여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로 분류하고 있다.

나. 영유아 학대의 특성

2016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표 II-1-2>와 같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만 6세 이하 아동은 전체 피해 사례 중 28.5%에 해당하였다. 이 중 1세 미만 아동의 학대도 총 344 사례인 2.9%나 되었다. 영유아기에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보건

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때문에, 실제 영유아 학대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

〈표 II-1-2〉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구분	1세 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계
건수	344	312	457	543	570	485	628	2,123	2,289	2,600	1,364	11,715
(비율)	(2.9)	(2.7)	(3.9)	(4.6)	(4.9)	(4.1)	(5.4)	(18.1)	(19.5)	(22.2)	(11.6)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106.
 <표 4-2>를 재구성함.

2015 전국 아동학대 유형별 비율을 재구성해보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방임의 비율은 적어지나, 신체학대와 성학대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1세 미만 아동의 학대 유형은 방임이 54.5%로 과반수였다. 만 1~3세의 경우 정서학대를 당한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학대도 30.5%가 해당되었다. 만 4~6세 아동의 경우에도 정서학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도 35.3%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1-3〉 아동학대 유형별 비율

단위: 건(%)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수)
1세 미만	68(16.4)	121(29.2)	0(0.0)	226(54.5)	100.0(415)
1~3세	564(30.5)	750(40.5)	6(0.3)	530(28.6)	100.0(1,850)
4~6세	877(35.3)	1,054(42.2)	29(1.2)	524(21.1)	100.0(2,484)
7~9세	1,171(37.1)	1,241(39.3)	78(2.5)	668(21.2)	100.0(3,158)
10~12세	1,319(38.2)	1,401(40.6)	140(4.1)	594(17.2)	100.0(3,454)
13~15세	1,738(41.7)	1,737(41.7)	234(5.6)	455(10.9)	100.0(4,164)
16~17세	924(43.2)	893(41.8)	142(6.6)	178(8.3)	100.0(2,137)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125.
 <표 4-18>을 재구성

생애초기 시기인 영유아기는 급속한 발달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학대의 영향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영유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대 유형인 방임의 경우 쉽게 발견되는 신체학대나 성학대에 비해 많이 드러나지 않아 장기간 지속된 후 신고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장화정·윤은영·박은혜, 2013; Kathryn & David, 2002에서 재인용)는 점을 고려해볼 때, 영유아 학대에 조기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앞서 살펴본 대로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이 잇달아 벌어짐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2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 비율은 2.2%였으나, 2014년에는 3.9%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자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을 살펴본 이경숙·박진아·신의진(2015)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 519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의심이 되었다는 비율은 14.6%, 다른 영유아가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의심이 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7%나 해당되었고 자녀 및 다른 영유아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부모는 대처방안으로 해당 보육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목격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았는데(내 자녀 아동학대의 경우 16.3%, 다른 영유아 아동학대의 경우 26.1%), 무조치 이유로는 '내 자녀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녀의 경우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다(이경숙·박진아·신의진, 2015). 부모들은 아동학대를 가한 보육교사 대상 후속조치로 '교사자격 취소'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자격 정지', '가해교사 명단 공개'를 원하고 있었다(이경숙·박진아·신의진, 2015).

이경숙·박진아·최명희(2015)의 연구에서는 전국보육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상담 관련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17.9%의 교사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재연·김지운(2002)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2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대의 증상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아동의 신체에 매 맞은 자국이 있거나 다쳤어도 치료받은 자국이 없을 때'와 같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 아동학대에 대하여 인식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보육교사 중 19.7%가 지난 1년 동안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이재연·김지운, 2002). 이렇듯 선행연구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대를 목격한 비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대를 목격한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 및 원장의 조치는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아와 이경숙(2015)의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7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어린이집 내에서 다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목격 경험은 있지만, 본인이 가해 보육교사보다 경력이 짧거나, 교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쉽게 개입하기 어려워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이재연·김지윤(2002)의 연구에서도 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겠다는 보육교사는 70% 정도에 불과했다. 이경숙·박진아·최명희(2015)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교사가 목격한 이후 대처방안으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학대 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는 응답이, 원장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조치사항이 소극적이었음을 확인되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원장 학대의 경우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높게 나타났다(이경숙·박진아·최명희, 2015).

어린이집 원장 약 4,000여명에게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2012년에는 전체 응답 대상 어린이집 원장 중 87.6%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15년에는 99.1%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2; 이미화 외 2016).

〈표 II-2-1〉 아동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인지 여부

구분	단위: %(명)				계
	전혀 모름	잘 모름	대략 알고 있음	정확하게 알고 있음	
2012년	1.7	10.7	40.5	47.1	100.0(3,994)
2015년	0.1	0.8	13.9	85.2	100.0(4,046)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보건복지부. p. 109.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보건복지부. p. 131.

경북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윤선오·박복숙(2011)의 연구에서도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신이 신고의무자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종사자 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몰라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과 아동학대 신고 후 부과될 책임과 조사과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선오·박복숙, 2011).

이렇듯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음에도 신고율이 낮은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신고 의무에 대한 태도가 내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대해 살펴본 황인옥(2015)의 연구에서는 김해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3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경력과 학력이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았으며, 교사의 아동학대 관련지식, 사례지식, 신고에 관한 태도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숙·박진아·최명희(2015)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88.9%가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육기관 교직원 대상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아동학대 행위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지난 14년 동안 80%를 넘다가 2015년 처음으로 80% 미만인 79.8%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이렇게 아동학대의 주된 가해자가 부모인 것은 친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7. 31).

〈표 II-3-1〉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부모	5,039(83.1)	5,370(83.9)	5,454(80.3)	8,207(81.8)	9,348(79.8)	
친인척	349(5.8)	435(6.8)	351(5.2)	559(5.6)	562(4.8)	
대리	보육 교직원	-	110(1.7)	202(3.0)	295(2.9)	427(3.6)
	유치원 교직원	-	31(0.5)	53(0.8)	99(1.0)	203(1.7)
양육자	초중고교 교직원	-	16(0.2)	28(0.4)	145(1.4)	234(2.0)
	학원·교습소 종사자	-	37(0.6)	11(0.2)	80(0.8)	64(0.5)

(표 II-3-1 계속)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리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	119(1.8)	389(5.7)	206(2.1)	325(2.8)
양육 부모의 동거인	-	75(1.2)	86(1.3)	146(1.5)	158(1.3)
위탁부모	-	3(0.0)	13(0.2)	12(0.1)	13(0.1)
자 베이비시터	-	6(0.1)	4(0.1)	7(0.1)	7(0.1)
타인	92(1.5)	108(1.7)	85(1.3)	124(1.2)	187(1.6)
기타	95(1.6)	70(1.1)	85(1.3)	129(1.3)	166(1.4)
파악 안 됨	1(0.0)	23(0.3)	35(0.5)	18(0.2)	21(0.2)
총계	6,058(100.0)	6,403(100.0)	6,796(100.0)	10,027(100.0)	11,715(100.0)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7. 31).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39-240.

<표 7-9>

4. 아동학대 원인

가. 문헌검토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으로 주요 원인이 밝혀져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7. 31).

<표 II-4-1> 아동학대 원인

학대행위자 특성	2013		2014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양육기술 미숙	7,099	32.6	10,076	33.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883	22.4	6,200	20.4
부부 및 가족 갈등	2,049	9.4	3,050	10.0
성격 및 기질문제	1,543	7.1	2,134	7.0
중독 문제	1,275	5.9	2,026	6.7
기타	4,939	22.7	6,968	22.8
계	21,788	100.0	30,454	100.0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7. 31).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표. p. 8.

실제로 아동학대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선행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 특성에 의해 야기된다는 ‘발달론적 관점’, 부모의 공격성, 충동성, 정신과적 문제 등을 소인으로 삼는 ‘정신병리학적 관점’, 아동의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등을 원인으로 보는 ‘사회문화적 관점’, 아동학대의 원인을 가족과 지역사회, 사회문화적 사회체계의 상호작용 또는 조건의 결핍으로 보는 ‘생태학적 관점’ 등으로 설명된다(임동호, 2008).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여년에 불과한데(김춘경·이주옥·송영주, 2009), 아동학대 원인에 대해 밝히고자 최근 수행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광혁(2006)의 연구에서는 2000년에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중 만 7세 아동이 있는 가구 1,476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와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소득이 낮고 빈곤한 가구일수록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소득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대해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저소득층에 국한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나타났다(김광혁, 2006). 또한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 받은 129명의 사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진주(2008)의 연구에서도 낮은 경제적 상태가 아동학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부모인 부부간의 관계도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현심·김민정·김상원·최미경·김재희(2011)의 연구에서 344명의 만3세 유아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은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간 갈등이 클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높았고,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분노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여진주(2008)의 연구에서도 부부불화가 아동학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경제적 상태와 부부불화 이외에도 사회적 지지망 결여, 알코올 및 약물문제, 부적절한 양육태도, 성격적·기질적 결함이 아동학대에 순서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한 여진주의 2010년 연구에서도, 빈곤과 부부불화가 아동학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세에서 12세 사이의 초등학교 아동 98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김준호와 김선애(1997)의 연구에서도 가정이 갈등적일수

록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이재연과 한지숙(2003)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우, 어머니가 음주를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거부감이 크거나 아이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그리고 주변에 도와줄 친인척이 없고 정보나 충고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아동기에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가 음주를 하는 경우, 어머니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등에서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유경, 2008).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원인을 살펴본 이현기(200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아동 1,780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음주하는 경우, 계부 또는 계부와와 같이 사는 경우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최근 10여년간 국내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에 가정의 경제적 문제, 양육 관련 태도, 사회적 구조 등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빈곤, 가정의 갈등적 구조, 부모의 음주 등이 일관적으로 아동학대의 요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아동학대 및 유기와 관련된 양육자의 특징으로 성별, 가족 구조, 가족의 크기 및 구성, 인성 및 행동적 특성, 학대의 경험, 가정폭력, 및 기타요인 7가지를 들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66-68).⁴⁾ 첫째, 성별에 있어서 여성 양육자가 남성보다 신체적 학대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치명적 두부 손상, 학대에 의한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학대비율은 남성 양육자가 더 높았으며 성적 학대도 피해자가 남아이든 여아이든 관계없이 남성의 가해 비율이 더 높았다. 둘째, 학대의 위험이 높은 가정 구조로는 부모가 어린 경우, 한부모 가정, 가난, 부모의 무직, 부모가 저학력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가족의 크기에 있어서 칠레의 사례에서는 자녀가 넷 이상일 때 세 배나 더 폭력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가족의 수보다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바뀌는 경우와 같이 불안정한 가정 구조가 더 아동 유기 위험이 높음을 드러냈다. 넷

4) 이하 내용은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를 인용하였음.

제, 인성과 행동특성에 있어서는 부모의 자존감이 낮거나, 충동 조절력이 낮을 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반사회적 성향을 보일 때 아동학대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성장기에 아동학대를 경험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부부 간에 폭력적인 경우 아동학대와 관계가 깊다. 일곱째, 기타 요인으로 부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이 아동학대와 유기와 연관이 깊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또한 아동학대와 유기의 원인으로 자녀의 특성이나 양육자의 특성 외에 지역·사회적 요인으로 가난, 사회적 자본을 들고 있다. 첫째 가난과 실업률은 많은 연구에서 아동학대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지역사회 유대감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낮은 곳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다. 즉, 사회적 관계망과 이웃 간의 연계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이 가난하고 폭력적이고 저학력인 환경이라도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훨씬 더 많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68).

나. 메타분석⁵⁾

1) 메타분석 선행연구

아동학대는 앞서 전술하였듯이 다양한 사회구조 및 개인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다. 초기 아동학대 원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 병리학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부모의 심리적 성격적 특징에 초점을 맞춰(Buchholtz & Korn-Bursztyn, 1993; Giles-Sims, 1998; Hazler & Denham, 2002) 연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심리적, 최근 아동학대에 원인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델을 근거로 하여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여진주, 2008). Belsky(1993)가 제안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인 요인들은 아동 및 부모특성, 가족 환경,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및 정치 경제적인 요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와 거시체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동학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였던 정신병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보다 설득력이 높은 모델이라고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개인, 가족, 사회,

5) 자세한 분석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음

문화 등 다양한 아동학대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발생에 대해서 증명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경험적인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간접적으로 생태학적 모델에 제시되어 있는 요인과의 아동학대와의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메타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메타분석은 선행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경험적 결과를 통합하여 분석이 실시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던 아동학대의 다양한 발생 요인과의 아동학대 발생의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메타분석은 아동학대와 학교적응(김미정·염동문, 2012), 피학대아동 중재 방법(김은주, 2012), 학대경험과 우울(백종림·정익중, 2013),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안선경·양지혜·정익중, 2012) 연구 등이 있다. 김미정·염동문(2012)의 연구와 김은주(2012), 안선경 등(2012)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원인이 아닌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발달적, 정신적 손실과 유형과 피학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아니었다. 안선경 등(2012)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적 요인에 국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체학대는 부모성별, 부모스트레스, 갈등적 가정 분위기, 양육태도, 가족응집력, 부부생활만족, 부모자녀 관계 등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경 외, 2012).

국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Black, Heyman, & Slep, 2001), 방임(Schumacher, Slep, & Heyman, 2001)에 대한 메타분석이 진행되었고, Stith(2009)는 1960년대 이후의 아동학대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은 아니었지만 Belsky(1993)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리뷰를 통해 아동학대 유발 요인이 단일한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아동의 발달 환경 및 맥락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다. Black 등(2001)의 연구에서는 총 46개의 신체 학대 연구를 대상으로 Belsky(1993)가 제안했던 사회적 고립, 가족요인, 부모-아동 상호작용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동의 인지, 심리적, 인구사회학적 변인, 지능, 과거력 등에 요인에 대해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통제에 대한 공포, 충동성 등 대인관계 요인, 인지적 요인,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내적 귀인 성향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부족, 양육태도 등이 신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ck et al., 1993). Schumacher(2001) 등의 연구에서는 10개의 방임 연구

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부모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방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ith 등(2009)은 155개의 선행연구와 39개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위험요인을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체적 학대에 큰 효과를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분노 및 과민성, 가족 갈등과 응집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임에 큰 효과를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 부모의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 스트레스 수준, 분노 및 과민성,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Stith et al., 2009)

2) 영유아 학대에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전술한 것과 같이 국내외 아동학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수의 메타분석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18세 이하의 아동 전체 대상을 포괄한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선행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영유아 대상 학대의 특수성을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학대 연구만 대상으로 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화상관계수 Zr 값은 .40이상이면 효과크기가 크다고 간주하고, .25~.40 구간은 중간, .10~.25는 작은 효과 크기, .10미만이면 효과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간주한다(안선경 외, 2012; Becker, 2000에서 재인용). 분석결과,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 요인은 어머니 성격,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였다. 효과 크기가 중간이라고 결과가 제시된 요인은 결혼가정 여부, 교사의 자아존중감이었다.

신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효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 수준이 .05에 충족된 요인은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애착, 어머니 우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근무형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양육태도, 교사 직무특성, 출생순서, 아버지 직업, 부모의 기타 스트레스,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 어머니 음주여부, 교사의 근로조건, 부모 건강이었다.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교사의 자아존중감, 교사의 직무특성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 교사에 대한 사회적지지, 어머니 성격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효과가 중간 크기였다.

정서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효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 수준이 .05에 충족된 요인은 부부갈등, 애착, 교사 직무태도, 출생순서, 교사의 자녀유무, 어머니 우울, 어머니 자기효능감, 기타 스트레스, 주거환경, 교

사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연령, 어머니 음주, 부모 건강이었다.

마지막으로 방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컸던 요인은 어머니 성격, 양육태도, 교사의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이었다. 방임에 미치는 효과가 중간 크기였던 양육스트레스, 교사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였다.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효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수준이 .05에 충족된 요인은 기타 스트레스, 교사 직무특성, 부부갈등, 어머니 우울, 교사 사회적지지, 애착, 주거환경, 교사 근로조건, 시설 수준, 교사 자녀유무, 어머니 사회적지지,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기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아동연령, 어머니 근무형태, 어머니 종교, 교사 성격(내적통제), 교사 학력이었다.

각 학대유형별 영유아의 아동학대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교사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대 유형에서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이 큰 효과의 크기를 나타냈다. 교사 직무 스트레스는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서, 교사의 직무 특성은 정서적 학대에서 큰 효과의 크기를 나타냈다. 교사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등도 각 학대 유형에 중간 효과크기 정도를 나타냈다. 즉,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및 인식 수준이 낮고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또 직무특성에서 포함하고 있는 교사 업무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등이 없을 때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교육이 충분하게 아동학대 인식 및 개선과 연계되진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본 메타분석에서 교사 관련 요인들이 효과 크기가 높았던 결과는 부모로 인한 학대보다도 교사로 인한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가설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학위 논문이 많아 표본 구성이 편파 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족 관련 요인 중에서 아동학대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요인은 어머니 성격이었다. 메타분석을 위해 어머니 성격으로 통합했던 요인은 분노(박동영, 2013), 내향성과 강박성(조숙현·윤혜미, 2005)이었는데, 모든 학대 유형에서 효과의 크기가 컸다. 즉, 어머니의 분노조절력이 낮을수록, 강박적인 성격일수록, 내향적인 성격일수록 어머니의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도 효과의 크기가 작긴 하였지만 아동학대 유형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관련 요인이었다.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애착, 양육태도, 결혼가정 여부 등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과 관련된 요인들이 각 아동학대 유형에 중간크기 혹은 작은 크기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성격 변화와 우울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가족 내 아동학대 원인이 한 가지 뚜렷한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관계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아동관련 변인과 기존에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던 경제 수준, 부모의 학력, 교사의 학력 등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혹은 작은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교육 및 보육기관의 시설 수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 지역사회 요인들도 각 아동학대 유형에 작은 효과이긴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90% 이상 연구가 정확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 대상이 초점이었다. 상대적으로 영유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메타분석 범주로 학위 논문까지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로부터의 학대, 교사로부터의 학대와 관련된 변인이 균형감 있게 담기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다양한 성격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영유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취학아동과는 다른 영유아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4-2〉 영유아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효과 크기	Zr 값	신체학대 요인	정서학대 요인	방임 요인
Large	0.40 이상	·어머니성격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교사의 자아존중감 ·교사의 직무특성	·어머니 성격 ·양육태도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표 II-4-2 계속)

효과 크기	Zr 값	신체학대 요인	정서학대 요인	방임 요인
Medium	0.25~0.40	·결손가정 여부 ·교사의 자아존중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교사에 대한 사회적지지 ·어머니 성격	·양육스트레스 ·교사의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Small	0.10 ~ 0.25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애착 ·어머니 우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근무형태 ·교사 대 영유아비율 ·양육태도 ·교사 직무특성 ·출생순서 ·아버지직업 ·부모의 기타스트레스 ·교사가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지지 ·어머니 음주여부 ·교사의 근로조건 ·부모건강	·부부갈등 ·애착 ·교사 직무태도 ·출생순서 ·교사의 자녀유무 ·어머니 우울 ·어머니 자기효능감 ·아동연령 ·부모의 기타스트레스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어머니 음주 ·부모건강 ·결혼만족도	·부모의 기타스트레스 ·교사 직무특성 ·부부갈등 ·애착 ·어머니우울 ·교사의 사회적지지 ·애착 ·주거환경 ·교사의 근로조건 ·시설수준 ·교사 자녀유무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아동연령 ·어머니 근무형태 ·어머니 종교 ·교사 성격(내적통제) ·교사 학력

5. 아동학대의 영향

아동학대는 그 자체로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아동의 위축,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성, 과잉 행동,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포함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수정·정익중, 2013, 재인용6). 우선 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 변인을 살펴본 이복희(2007)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8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요인이 높을수록 아동의 적응변인이 낮아지며, 행동문제와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임이 높을수록 또래 수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복희, 200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 자료 중 총 2,188명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자료를 분석한 김소연과 전종설(2015)의 연구 결과에서도 아동학대 경험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완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적영향을 미쳐, 내재화 문제를 겪는 아동의 경우 침울하고 억압되어 있어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접했을 때 위축되어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소연·전종설, 2015). 아동의 외현화 문제 역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공격적 충동을 강압적으로 폭력적인 행동 방식으로 표출함으로써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김소연·전종설, 2015).

문헌검색을 통한 16개 연구논문을 메타분석에 이용한 김미정·염동문(2012)의 연구에서도 정서, 방임과 같은 학대경험과 학업성취, 학교규범준수,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의 학교적응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정익중(2008)의 연구에서도 전국 결연사업의 대상아동 중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 904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의 증가와 인지학습능력의 저하를 매개로 하여 소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간의 관계는 공격성의 증가 경로를 통해 매개되는 간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모두 각각 직·간접적으로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정익중, 2008).

아동학대는 아동의 학업성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온숙·정익중(2007)의 연구에서는 서울아동패널연구의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아동(1차년도 시 4학년, 2차년도 시 5학년) 1,78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임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6) 재인용한 논문은 다음과 같음(김광혁, 2009; 정익중, 2008; Lamont, 2010; Shonk & Cicchetti, 2001; Mills, 2004; Stirling, Amaya-Jackson, & Amaya-Jackson, 2008).

나타났고, 정서학대는 아동의 우울성향,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은숙·정익중, 2007). 즉 정서학대는 아동의 우울성향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우울성향은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려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은숙·정익중, 2007).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도 뚜렷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살펴본 김준호와 김선애의 연구(1997)에서는 학대와 반사회적 행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하고 방임될수록 아동의 공격성과 과잉활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와 소심증, 공감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언어적 학대와 방임의 영향력만이 유의미하였다(김준호·김선애, 1997).

충북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김평화와 윤혜미의 연구(2013)에서도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부부폭력의 목격 순으로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결핍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과 관심의 박탈의 누적되면서 정서결핍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공격성으로 발현되었다(김평화·윤혜미,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자 1,945쌍의 자료를 활용한 유정아와 정익중(2014)의 분석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문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임의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여아의 우울과 공격성 문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정아·정익중, 2014).

민대기(2014)의 연구에서는 2005년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 중 아동용 부가자료로 2005년 12월 당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759명 아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불안감,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대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아동기의 정신적 건강에 가장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불안감과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대기, 2014).

서울아동패널연구의 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546명을

분석한 전해숙(2008)의 연구 결과에서도 아동학대는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아동학대는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친구관계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와 같은 부정적 경험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감소보다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아동의 우울감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전해숙, 2008).

최근에는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행동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1차, 4차,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1차년도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475명을 분석한 김수정과 정익중(2013)의 연구 결과, 1차년도의 최신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4차, 7차년도의 지속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4차년도의 최신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4차, 7차년도의 지속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수정·정익중, 2013). 즉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아동학대의 지속 효과가 강력하고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동학대의 최신 효과도 존재함을 밝혀냈으며, 아동학대는 초등학교시기에 최신효과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지속효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났다(김수정·정익중, 2013).

아동학대는 아동의 탄력성과 자아통제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가족과 분리되어 1개월 이상 보호되고 있는 9~12세 아동 3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경험은 아동의 탄력성과 인지기능,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학대경험이 심각한 아동일수록 낮은 탄력성을 보여 아동학대가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소영·이양희, 2008). 아동학대 경험이 적을수록 인지기능이 좋았고, 인지기능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높은 탄력성을 보였다(주소영·이양희, 2008).

김상미와 남진열의 연구(2014)에서는 제주 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중학교 2학년 아동 1,5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가 과잉기대, 과잉간섭을 할수록 아동학대를 하는 성향이 높았고, 이러한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자기통제력에 대한 아동학대의 영향력에서는 아동학대 중 신체, 정서 및 방입학대를 하는 경우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의 관계에서 아동학대는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김상미·남진열, 2014).

이렇듯 아동학대는 일관적으로 아동의 적응 문제, 행동문제와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영향을 넘어서 이후의 아동 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6. 아동학대 관련 지원⁷⁾

가. 가정 지원적 접근

가정지원 접근은 부모훈련, 가정방문 및 기타 가정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유지 집중 서비스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부모훈련은, 자녀의 발달과 아동의 행동문제를 대처하는데 필요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보통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아동학대를 경험했거나 위험이 높은 가정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모든 부모와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둘째, 가정방문 및 기타 가정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을 가정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기대되는 중재로 가정 방문을 통해 가정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정보와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세 번째, 가족 유지 집중 서비스는 아동이 대리 양육을 받지 않도록 가족을 함께 모이게 디자인된 것이다. 아동학대가 확인된 가정을 대상으로 중재는 단기간(수주 내지 수개월) 동안 주당 10~30시간에 이르도록 집중적으로 가정이나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가족의 필요에 따라 심리치료나 긴급 월세 지원과 같은 기타 실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나. 보건 지원적 접근

보건 지원적 접근은 보건 전문가의 판별과 보건 전문가 교육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보건 전문가에 의한 판별은 아동학대나 유기를 규명하고 다루고 보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보건 전문가가 맡는 것이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7) World Health Organization(2002; 70~78)의 자료를 정리함.

중요하다. 두 번째, 보건 전문가의 교육은 말 그대로 보건 전문가들에게 아동학대와 유기의 초기 징후와 증상의 발견과 보고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유기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별한 면담 기술과 다양한 신체 검사 등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의료 전문가는 또한 가족이 함께 있는 것과 기타 위험 요인이 있는지는 않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치료적 접근

아동학대와 유기의 결과는 다양하다. 특히 아동의 연령, 발달 수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치료적 접근은 피해자, 폭력을 목격한 아동,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한 성인을 위한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피해자를 위한 치료의 대표적인 예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위한 치료적 보육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는 인지 및 발달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접근은 아동의 일상 활동 과정 속에 치료와 특별한 처치 방법을 적절히 적용한다. 두 번째, 폭력을 목격한 아동을 위한 치료적 접근은 비교적 최근에 시도된 것이다. 관련 연구에서는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유년기에 학대를 경험한 성인들은 정신 건강의 문제나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있어 이들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초기에 밝혀지지 않고 성인이 된 후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들 성인을 위한 치료적 접근도 필요하다.

라. 법과 교정 조치

법과 교정조치는 의무적 보고나 자발적 보고, 아동 보호 서비스, 아동 사망사건 조사 팀, 체포와 기소 정책, 범법자에 대한 강제 치료 5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는 다수의 국가에서 보건 전문가에게 의무이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국가에서는 의무 행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보건 전문가들의 의무 보고에 대한 강제는 필수적이다. 둘째, 아동 보호 기관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구체적인 실증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한다. 초기 보고는 보건 인력, 경찰, 교사, 그리고 이웃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 들어온 정보를 근거로 한다. 초기 보고가 규명이 되면 아동 보호 기관은 이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동을 보호하고, 동시에 가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상충되는 요구 사이에서 결정이 쉽지 않다. 셋째, 아동 사망사건 조사팀은 경찰, 검찰, 보건 전문가, 아동 보호 기관, 검시관 등과 같은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이 되고, 이러한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아동학대나 유기의 징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체포와 기소 정책에 있어서 형사재판 정책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역할이 다르다. 기소의 결정은 학대의 심각성, 증거 능력, 피해 아동의 진술 능력, 기소 이외의 대안의 가능성 등이 모두 망라되어 내려지기 때문에 실제 기소율은 이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범법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 치료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강제 치료와 자발적 치료는 논란이 되고 있다. 강제 치료의 논리는 범법자가 자발적 치료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지만,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 치료는 일부 범법자가 반발할 수 있기에 범법자의 자발적 치료 의지가 중요하다.

마.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력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력은 학교기반 프로그램, 예방과 교육 캠페인, 지역사회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한 중재를 들 수 있다. 첫째, 학교기반 프로그램은 일부 국가에서 정규 교과과정에 성학대 예방 전략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아동이 어떻게 위협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것이다. 둘째, 예방과 교육 캠페인은 아동학대와 유기를 줄이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일반 대중들이 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한 중재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바. 사회적 접근

사회적 접근은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과 국제 협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노력들은 피해자나 가해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는 않는다. 이는 아동학대가 보다 근본적으로 가난, 교육 수준, 실업률과 관계가 깊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1989년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성인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Ⅲ. 영유아 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1. 국내 제도 및 정책 분석

본 항목에서는 아동학대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뒤 최근 제정 및 개정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영유아 학대 관련 법령

1) 영유아 학대 관련법

영유아 학대 관련 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심판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각 법의 목적은 <표 III-1-1>과 같다.

「아동복지법」은 제3조 7항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15조는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17조에서는 학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의2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29조의3은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제46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제15조의4에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을, 제16조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의2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제45조 3항에는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를 받

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6조와 제47조, 제48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9조의3에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I-1-1〉 영유아 학대 관련법의 목적

법령	목적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아동보호심판 규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자료: 참고문헌 p. 220에 제시한 각 법령 참조

「유아교육법」은 제21조의 2에서 유아의 인권 보장을, 제32조에서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제정된 법령으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법은 아동학대범죄 처벌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처리절차, 아동보호사건 처리, 피해아동보호명령 처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보호심판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함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과 함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34조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아동학대 관련 다양한 법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신고 의무와 교육, 아동학대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에 발생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12월 31일 의결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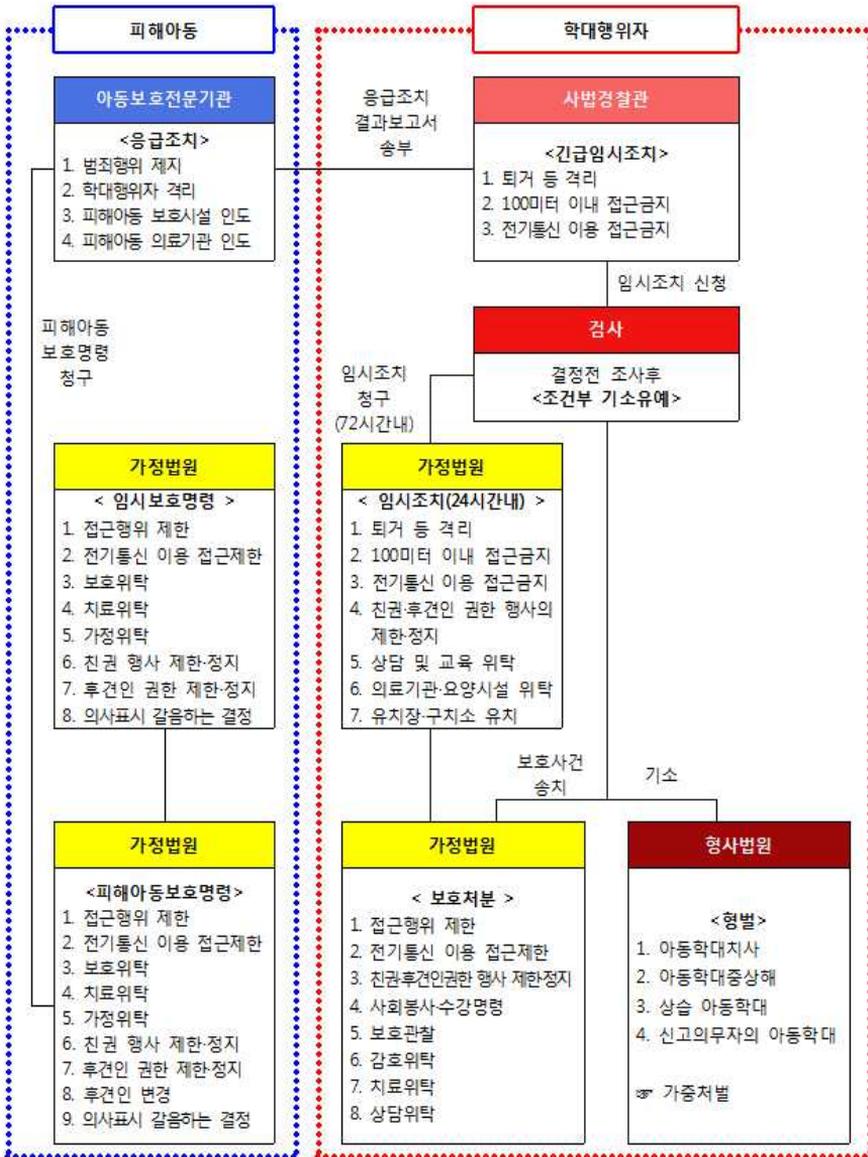
주요내용	시행 전	시행 후
1)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 집행유예 가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 불가)
2)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하여야 함.	-	-
3)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과태료도 상향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의 몸에 멍이든 것을 발견,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었고 미신고시 과태료도 미부과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4)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됨.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 아동 사망의 결과 초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에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지 못하여, 추후 재범 우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제한하여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

(표 III-1-2 계속)

주요내용	시행 전	시행 후
5)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 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함.	-	-
6)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됨.	-	-
7)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	-	-
8)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됨.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 아동에 대한 수술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아동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민법상 친권 '상실'의 뚜렷한 해결책 미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수술 동의 결정 가능

자료: 법무부·보건복지부(2013. 12. 31). 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p. 1-3 재구성

제정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였다(법무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2. 31). 또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24개 직군으로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 것이 특징이다(법무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2. 31).



자료: 관계부처 협동(2014. 2. 2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p. 30.

[그림 III-1-1]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력범죄 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16. 5. 19). 2016년 5월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은 다음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 내용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24개 직군, 약 168만 명) 지정	-기존 신고의무자에 더해 성폭력피해 자동합치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직군의 종사자(약 3천 명)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기한 명확화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조치 ⁸⁾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도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 시 형량 강화	-위반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상향 조정)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고소에 대한 특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피해아동은 직계존속인 부모를 고소할 수 없음.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특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와 합의하게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이 어려움	-피해아동과 합의가 있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함.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강화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분리되는 것을 거부할 때 적극적인 분리보호 조치가 곤란하였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분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16. 5. 19). 아동학대 신고자, 강력범죄 신고자처럼 신변 보호. p. 3-5 재구성

8) 구체적 내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명으로 조서 작성,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않도록 함. 신고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안전 조치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은 기존 24개 직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2,093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480여명), 입양기관 종사자(200명) 등 3천여명이 신고의무자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5. 19). 해당 직군은 다음 <표 III-1-4>와 같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장은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게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표 III-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번호	신고의무자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표 III-1-4 계속)

번호	신고의무자
18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9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2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3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4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자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법률 제14172호, 2016.5.29., 개정, 2017.5.30. 시행]

3) 아동복지법

한편 특례법과 함께 2014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표 III-1-5>와 같다. 2014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통해서도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사건을 발견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하였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및 사생활 보호의 근거를 마련했다(법무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2. 31).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었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한 데에 의의가 있다(법무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2. 31).

<표 III-1-5> 「아동복지법」 개정 주요 내용

주요내용	시행 전	시행 후
1)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됨.	-	-
2)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함.	주소지 소재 학교에 취학함으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손쉽게 노출	주소지 이외의 보호시설 등 소재 학교에 취학함으로써 학대행위자의 접근 차단
3)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됨.	-	-

(표 III-1-5 계속)

주요내용	시행 전	시행 후
4)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음.	아동 관련기관은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기간 중 취업 여부를 확인·점검, 해임 요구

자료: 법무부·보건복지부(2013. 12. 31). 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p. 3-4 재구성

2015년 3월에 공포되어 시행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또한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하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 등 기관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2016년 3월에는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15). 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주이며, 지자체의 가정 복귀 후 모니터링, 아동보호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15).

나. 국내 최근 정책 동향

영유아가 포함된 아동학대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에 의하여 정책 대상 및 방안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본 항목에서는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각 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수립

2014년 2월 2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국

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4. 2. 28). 이러한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4. 2. 28),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II-1-6>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다.

<표 III-1-6>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주요 내용

대책	주요내용	세부내용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학대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직군의 교육 및 아동학대 간이접점포 보급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고위험군 발굴 및 가정방문을 통한 조기발견
	· 학대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경찰이 반드시 개입하여 수사 실시 -가해자 부모에 대한 퇴거, 접근·통신 금지, 친권행사 제한·정지 이행 -학대 고위험군 가정의 거주지 이전 시 담당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 인수·인계, 피해아동 졸업 시까지 지속적 모니터링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 아동학대 고위험군의 가정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속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시군구의 각종 사회서비스(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지원을 통해 학대 발생 요인이 되는 가정 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강화	·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의무규정인 어린이 집·유치원·초중고교의 아동안전교육 충실 이행	
	· 아동학대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송출 및 온라인교육 등을 통한 일반 국민 인식 개선	
	·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제도 활용, 경미한 학대에도 부모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상담 수강 의무 부과	
가해자 처벌 강화	·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학대중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중사자 및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 제한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4. 2. 28). 아동학대 신고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공동 대응. p. 3-5 재구성

2) 중장기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⁹⁾

정부는 2015년 5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 정책의 취약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¹⁰⁾」(1991년 가입)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기플랜이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아동 학대 관리 대책과 관련된 지표는 ‘안전한 삶’에 해당한다. ‘안전한 삶’의 개요는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가정·학교에서의 생활 안전, 성범죄·아동학대로부터의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안전한 삶’의 정책방향은 ‘생활공간 안전 확보’,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아동안전 기반 구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 목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종합대책(‘14년)을 이행관리하고,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쉼터 등)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매년)하고, 아동학대특별법상 ‘아동보호사건’ 전담 단독재판부 운영(서울가정법원 5개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어린이집 폐쇄와 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수사·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유아교육·보육 환경 조성하는 데에 있게 하고, 교사(학원교사 포함)에 의해 훈계·훈육의 허용이 체벌 존속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홍보(매년)하는 것도 목표이다.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은 ‘아동권리 실현기반 조성’,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민간과의 협력 강화’,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전략적 캠페인 시행’이 있다. 이 중 ‘아동권리 실행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9) 해당 부분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5. 13).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 바탕으로 작성함.

10) 유엔총회(‘89. 11. 20)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한 인권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5년)를 심사하고 개선권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15~19) 아동정책 기본계획(안). p. 17.

[그림 III-1-2]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개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영역 중 '안전한 삶' 관리지표는 다음 <표 III-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 내 사고 발생건수(15세미만), 보행사고 사상자수(13세미만), 고속도로 유아 카시트 착용률, 아동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률,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 체벌 경험률의 6가지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5. 13).

<표 III-1-7>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영역 중 '안전한 삶' 관리 지표

성과지표명	현재	목표치('19)	주관부처	비고
가정 내 사고 발생건수(15세미만)	16,564건	15,000건	복지부	어린이안전사고 사례분석보고서
보행사고 사상자수 (13세 미만)	5,023명	4,300명	국토부,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고속도로 유아 카시트 착용률	33.60%	60%	국토부, 경찰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아동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률	61.3%(범죄) 56.4%(교통사고)	범죄67% 교통62%	경찰청 국토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3%	1.0%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체벌 경험률	부모 25.7% 교사 23.7%	15%	여가부 교육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5. 13).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 수립. p. 9-10.

한편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 영역 중 '안전한 삶'과 관련된 소관 부처 현황은 <표 III-1-8>과 같다.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 관리 및 인프라 확충 추진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소관 부처가 된다. 안전한 유아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소관 부처가 된다.

<표 III-1-8>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영역 중 '안전한 삶' 내 아동학대 관련 소관 부처 현황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부처)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이행관리 및 인프라 확충 추진	복지부, 법무부
안전한 유아교육·보육 환경 조성	복지부, 교육부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홍보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아동매매 예방·억제·처벌 시스템 보완	복지부(경찰청)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15~19) 아동정책 기본계획(안). p. 107.

3) 아동학대 방지 대책 수립

정부는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의 원년으로 선포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전면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29). 이번 대책은 지난 2014년 2월에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이 필요한 과제, 중전 대책에는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들을 총 망라한 종합대책이다(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29).

이러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는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강화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대응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29),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이 있다. 아동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그림 III-1-3]과 같다. 본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복지지원시스템’ 가동이며, 건강, 소득, 고용 등 행정기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아동을 조기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다(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29). 정부는 부모교육 및 인식개선, 상시 발굴 및 행복지원 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 조기개입 및 친권제한 강화, 재학대 방지체계 및 가족기능 강화지원체계에 대한 일정을 발표하였다(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29).



자료: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3. 29). 정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다. p. 3.

[그림 III-1-3]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

정부는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2016년 3/4분기 기준으로 총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53.8% 증가했다고 밝혔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시 경찰 동행 조사건이 79% 증가하였으며, 피해아동 응급조치는 128.4%, 피해아동 및 가정의 상담·심리치료 건수는 25.6%가 늘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도자료, 2016. 11. 18).

4)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굴

유치원에 다녔던 아동이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받다가 숨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결석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16. 3. 18.)를 열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였다(뉴스 1, 2016. 3. 19). 본 매뉴얼은 교육부가 주관하여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뉴스 1, 2016. 3. 19). 이 매뉴얼을 통해 2일 이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무단결석하거나 영유아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KTV 국민방송, 2016. 3. 18).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부터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3월부터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2. 25). 영유아 점검 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포함한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6,494명)의 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우선 대상으로 점검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2. 25). 그 결과 학대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상당수가 복수국적을 가져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재가 불분명한 1명은 경찰 조사 중이며, 생계곤란 등을 겪는 위기아동 2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스 1, 2016. 4. 25).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하여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2. 25).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협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부에서의 복지업무 담당자와 취학업무 담당자 간의 협업도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됨에 따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아동학

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교육부·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6. 4. 18).

또한 2016년 4~5월에는 아동보호시설 내 아동학대를 일제 점검하였으며(뉴스 1, 2016. 5. 24), 2016년 6~7월에는 고위험 가구인 5,000가구의 양육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6. 10. 13). 그 결과 경찰청에서는 전국 아동 보호시설 776곳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 2016. 5. 24). 정부는 2017년부터 건강검진 미 실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학대위기에 놓인 아동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라 밝혔다(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도자료, 2016. 11. 18).

다. 각 부처의 역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관련 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학대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집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2016 아동분야 사업안내' 자료를 통하여 다음 <표 III-1-9>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표 III-1-9>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부처의 역할

부처	역할
보건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관련 법·제도 마련 및 개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자격 관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신고의무자·아동·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 및 아동학대예방주간 행사 및 홍보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 실시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과과정 포함,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지원(초·중·고 교과과정 포함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중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강사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및 위협에 대한 예방 협조(피해 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
	보육·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학대발생 보육·교육시설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징계

(표 III-1-9 계속)

부처	역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예방과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가정폭력예방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내 피해아동 보호지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 교육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행위자 교정·교화 지원체계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 교육
법무부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행위자 교정·교화 지원체계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아동분야 사업안내 II. p. 189-190.

<표 III-1-9>에서와 같이 규정된 각 부처의 역할을 포함하여,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부처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대응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

가) 아동보호전문기관·피해아동쉼터·일시보호시설 운영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시·군·구별로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 <표 III-1-10>와 같다.

<표 III-1-1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

조항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표 III-1-10 계속)

조항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아동복지법 제45조 [법률 제14085호, 2016.3.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2016년까지 총 60개가 개소되었으며, 시·도별 운영 현황은 다음 <표 III-1-11>과 같다. 2014년 시점에는 전국 50개소가 운영 중이었지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0. 11), 2016년까지 60개소로 확대되었다.

<표 III-1-11>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60	1	8	4	3	3	2	1	1	12	4	3	3	3	3	4	3	2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ininstall)에서 2016년 12월 31일 인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역시 2016년 중에 616명에서 767명으로 증원하였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0. 7), 추후 83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5. 19).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정책수립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학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한다.¹¹⁾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¹²⁾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법경찰에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청구를 요청하며,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에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¹³⁾

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PAGE=9&page=1)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1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PAGE=9&page=1)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13)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child.seoul.go.kr/archives/288>)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학대로 인해 긴급히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 후유증 감소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6년 말 현재 58개소가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0. 11). 본 기관에는 평균 4명(원장 1명, 보육사 2명, 심리치료사 1명)이 근무 중이며, 현재 53개소의 쉼터에서 직원 359명이 근무하여 인력은 기관당 7명 이내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0. 7).

한편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 학대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유기아동 등 다양한 사유의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며,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현재 7개 시·도에서 12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0. 7).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는 현재 12개 시설에서 35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0. 7), 최근 5년간 아동일시보호시설 현황은 다음 <표 III-1-12>와 같다.

<표 III-1-12> 최근 5년간 아동일시보호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설 수	12	12	11	11	12
종사자 수	201	206	201	207	239
아동 수	361	335	359	336	350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10. 7). 학대 대응 강화 위해 학대아동 보호현장 방문. p. 3.

나) 아동인권 증진 지원 사업 실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아동인권 증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아동의 성장과 발달, 권익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예비부모, 아동학대 등 권리침해 사례 발견이 용이한 어린이집 교사, 시설종사자, 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¹⁴⁾ 아동권리교육을 통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아동단체의 권리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며, 아동이 독립된 인격 주체로서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행사를 실시하고 대한민국 아동총회·지역대회 및 본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¹⁵⁾

1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PAGE=5&topTitle=아동인권 증진 지원)에서 2016년 6월 20일 인출.

2000년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은 학대받는 아동의 고통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자 11월 19일을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아동권리주간을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교육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도자료, 2015. 11. 19). 이 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하여 아동복지정책의 장기 발전 방향 및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¹⁶⁾ 또한 매년 5월 1일부터 7일을 어린이주간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 및 모범어린이 시상 등으로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으며, 2016년 어린이주간에는 아동권리현장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5. 2). 전문과 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현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을 함축적으로 모아 정리하였고, 우리 아동들이 겪고 있는 위기에 주목해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놀 권리, 표현의 자유와 참여, 상상과 도전, 창의적 활동 등을 다루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5. 2).

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추진¹⁷⁾

보건복지부는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체계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조문별 이행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¹⁸⁾ 우리나라는 협약 가입 이래 1994년에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0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96년과 2003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았고, 또한 2008년 12월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3·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2011년 9월에 심의 받았다.

제3·4차 한국보고서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1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PAGE=5&topTitle=아동인권 증진 지원)에서 2016년 6월 20일 인출.

1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PAGE=5&topTitle=아동인권 증진 지원)에서 2016년 6월 20일 인출.

17) 해당 부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PAGE=5&topTitle=아동인권 증진 지원)에서 2016년 6월 20일 인출하여 작성함.

방안이 포함된 국가보고서는 2017년 6월에 제출될 예정이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5. 1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사항은 다음 <표 III-1-13>과 같다.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시민권과 자유 항목을 위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보고체계 및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이 권고 사항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5. 13).

<표 III-1-1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권고 사항

구 분	내용
일반 이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법정에 유엔인권협약 적용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 아동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 독립적 아동 모니터링 기구 설치 · 아동예산 확충 : 26개 OECD국가 중 국가예산 하위 · 아동관련 자료수집 방법 개선 ·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 및 법안 제정 · 자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 · 입법·행정·사법절차의 아동최선의 원칙적용 ·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시민권과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신고 보장을 위한 체계 도입 · 학교에서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 교내외 아동의 의사결정과 정치적 활동 보장 ·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 및 규정 개정 ·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보고체계 및 지원 강화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돌봄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점검 · 입양 관련법 발효 사전 조치 및 헤이그협약 비준
장애 기초 보건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장애아동 교육 및 지원 강화 · 보건예산 증가 및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 · 정신건강 증진 위한 정책 및 종합서비스 개발 · 아동·청소년 건강 위한 교육, 캠페인 · 의무적인 아동복지 재원 배정을 위한 법 개정
교육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 및 폭력적인 교육환경 개선 · 여가·문화활동 권리 보장
특별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 권리 보장 · 근로아동의 환경 개선 · 아동 성착취·매매 처벌 및 예방, 지원 강화 · 국제기준 부합 소년사법제도 도입 ·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법적절차 개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5. 13).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 수립. p. 12.

라)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 실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아동학대 신고캠페인을 2016년 4월 9일부터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는 엄마의 마음”,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버스 배너 광고가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8). 4월 9일부터 송출된 TV 광고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전화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어린이집 아동폭력(학대) 근절 대책 마련 및 실시

(1) 근절 대책 마련¹⁹⁾

2015년 1월,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그림 III-14]와 같다.

아동학대 행위의 처벌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는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아동학대 행위를 3회 이상 위반 시 시설의 폐쇄가 가능하였지만,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one strike-out) 하였다. 기존에는 해당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을 때 기존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이를 영구히 불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즉시 운영 정지시키고, 보육교사 자격 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가해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표여부를 결정했으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을 즉시 공표하도록 하였다.

어린이집 폐쇄조치 시에는 부모·전문가·지자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처분결정 및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피해아동 및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현재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기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세웠다.

19) 해당 부분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 28).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9. 29).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 반면교사 삼아 대책 보완’을 바탕으로 작성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 1).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 p. 3.

[그림 III-1-4]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2) 근절 대책 실시

(가) CCTV²⁰⁾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통하여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말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CTV 설치비 272억원(국비기준)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5년 1월,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24.8%(10,874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1월에는 설치율 100%를 달성하였다(표 III-1-14 참조).

〈표 III-1-14〉 CCTV 설치 현황: 2016년 1월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어린이집	설치예외*(A)				설치대상 개소수 (A)	설치완료	
		계	기요건 충족	미설치 동의	네트워크 카메라		개소수 (B)	비율 (B/A)
합계	42,324	3,717	2,668	759	290	38,607	38,607	100

자료: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30.

CCTV 설치의 의무화 뿐 아니라 부모의 열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영상 기록을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보존의무 등을 CCTV 관리책임자(원장)에게 부과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상·하반기 정기적인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실태 및 해당 영상의 모니터링(학대 징후 확인을 위함),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나) 어린이집 평가인증²¹⁾

이외에 발표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급자·서류 중심의 평가인증제도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고자 한다(평가자: 재원 영유아 부모, 평가내용: 어린이집 전반에 걸친 보육서비스 만족도). 평가지표의 경우 부모대상 설문항목에 반영하고, 원장·교사의 인성지표, 아동학대 관련 지표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집의 평가를

20) 해당 부분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2. 22).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9. 29).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 반면교사 삼아 대책 보완을 바탕으로 작성함.

21) 해당 부분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 28).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를 바탕으로 작성함.

기존의 선택적 평가에서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하고, 매년 평가 결과는 등급화 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자 한다.

(다) 보육교사 관련²²⁾

또한 복지부는 궁극적으로 우수한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목표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신규교사 자격시험의 경우 인성교육, 안전교육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을 검토한다. 보육교사 대상 교육도 강화하여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서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을 대폭강화하고, 2급 교사의 1급 승급 시 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 원장 자격도 강화하여 원장이 되기 위한 필요 경력기간을 상향하고, 사전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등 원장의 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보육교사 채용단계에서 인성 검사,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등 검증을 의무화하고,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성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아동 행동지도 등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보육교사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수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예비교사 뿐 아니라 현직교사에 대해서도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인성 중심의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교사의 결혼·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확대하여 직무교육 시에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서류업무 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정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하여, 상담 전담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자 한다.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학대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도 마련하며, 진단에 따라 전문 상담·교육 참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2016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에

22) 해당 부분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 28).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를 바탕으로 작성함.

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121회에 걸쳐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었으며, 어린이집 당 보육교직원 1명이 집합교육(2시간)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으로 돌아가 여타 보육교직원에게 전달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1. 9).

2) 교육부

가)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

교육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5년 12월,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조사 및 매뉴얼을 마련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3. 18). 또한 2016년 3월,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4~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일제 점검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5. 19).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안건이 지속적으로 상정되고 있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 아동학대 안건은 다음 <표 III-1-15>와 같다.

<표 III-1-15>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아동학대 안건(2016년)

안건	일자	상정 부처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점검 및 대책	‘15.12.28, ‘16.1.17, ‘16.1.29, ‘16.3.18, ‘16.4.25	교육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대책	‘16.1.29, ‘16.2.26	복지부
아동권리헌장 제정안	‘16.4.25	복지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16.3.18	여가부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	‘16.5.20	복지부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16.9.30	복지부

자료: 교육부(2016. 11). 내부자료.

가장 최근 주재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16. 9. 30. 개최)에서는 기존에 마련·추진 중인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이 보고되어 논의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9. 29). 논의된 내용은 다음 <표 III-1-16>과 같다.

〈표 III-1-16〉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사항

논의사항	세부 내용
조기발견 체계 작동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내년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함.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 누락 없이 발견하도록 학적정보가 관리·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 개선 -기존 대책에 포함된 신고의무자 및 이웃의 신고 활성화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추진
피해아동 등 아동 보호 체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점검 -드립스타트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지자체-민간기관 간 업무표준 지침 마련을 통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종합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부모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별로 마련한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대해 전문가가 찾아가는 교육 등 실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반기 정기적인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실태 및 해당 영상의 모니터링(학대 징후 확인을 위함),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 단속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아동학대 발생 시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학대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 마련, 진단에 따라 전문 상담·교육 참여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9. 29).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 반면교사 삼아 대책 보완. p. 3-4.

나) 유아교육법 개정

폭력 등 아동학대에서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폐쇄근거를 마련하겠다는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따라(교육부 보도자료, 2015. 1. 27) 교육부에서는 정부 입법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 내용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관할청이 유치원에 대해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6년 5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할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를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5. 19). 또한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의 유아 인권보장 의무 및 체벌금지 조항이 신설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5. 19).

다) 매뉴얼 개발 및 배포

교육부는 2016년 4월, 교육부 장관 주재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본 매뉴얼은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2016. 3. 18)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제작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3. 18). 해당 매뉴얼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무단결석 시 교직원의 대응요령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매뉴얼을 통하여 교직원에게 2일 이상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하도록 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16).

한편 정부에서는 매뉴얼 적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이 결석 중 가정 내 아동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매뉴얼 내용을 강화하였다. 교육부가 주관하여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매뉴얼 내용을 점검한 후 출석하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무선 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보다는 가급적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여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내하였다(교육부 공문, 2016. 9. 30; 연합뉴스, 2016. 10. 14).

라)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개발·보급²³⁾

교육부는 2016년 12월, 유치원 교직원 스스로 아동학대 민감성을 점검할 수 있는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였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고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교육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직원의 민감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학대 3개, 정서학대 7개, 성학대 2개, 방임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크리스트는 유치원 교직원에게 의한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학대 인식도 등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세부 문항은 다음 <표 III-1-17>과 같다.

23) 해당 부분은 '교육부 보도자료(2016. 12. 14).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개발·보급을 바탕으로 작성함.

〈표 III-1-17〉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문항	예	아니오
1	유아를 때리거나 신체에 고통을 가한 적이 있다.		
2	도구 등을 이용하여 유아를 억압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3	유아가 한 행동을 그대로 하도록 하는 보복성 행동을 요구한 적이 있다.		
4	아동을 위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다.		
5	유아에게 비난, 원망, 거부, 우롱,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 적이 있다.		
6	유아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7	유아가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활동을 강제로 시킨 적이 있다.		
8	수업시간이나 급·간식 시간에 유아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적이 있다.		
9	유아를 교실이나 특정 장소에 혼자 있게 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강제한 적이 있다.		
10	유아의 신체부위를 만져 유아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한 적이 있다.		
11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노골적이거나 자극적인 성적 표현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다.		
12	유아의 요구에 대해 모른 척 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적이 있다.		
13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14	교육활동 중에 유아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느라 유아를 방치한 적이 있다.		
15	유아가 한 수행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창피를 준 적이 있다.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6. 12. 14).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개발·보급. p. 4.

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교육부에서는 2016년 3월, '안전교육 기준 고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생활 안전 교육을 한층 강화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3. 14). 이번 고시는 2014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하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등을 담은 것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3. 14).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대처방법을 아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은 연령별로 10시간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교육부 고시, 제2016-90호).

〈표 III-1-18〉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및 교육시간: 유치원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실, 가정, 등하굣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등 교통안전 규칙 알고 지키기	내용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알기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1.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알기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알기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기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약제품 만지지나 먹지 않기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119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어른과 손잡고 걷기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등의 중독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기		손씻기와 소독하기 등 청결유지 하기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나와 내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 좋게 지내기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기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교육시간 14시간	교육시간 11시간	교육시간 10시간	교육시간 6시간	교육시간 6시간	교육시간 2시간	교육시간 2시간
학기당 2회 이상 실시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자료: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6-90호, 2016.3.15., 제정] p. 4-5.

아울러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은 2015년부터 유치원 정보공시 내용에 반영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평가에 안전 관련 전문 교육 이수 교직원 수(유치원 포함)를 반영하고 있다(교육부 내부자료, 2016. 11).

바) 유치원 내 CCTV 설치 확대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따라 폭력 등 아동학대에서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내 CCTV 설치 확대가 추진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5. 1. 27). 교육부는 유치원 교실 및 교실 외 실내 공간에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해 수요조사를 거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내부자료, 2016. 11.). 교실 내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교직원, 학부모

등 단위 유치원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교육부 내부자료, 2016. 11.). 교육부는 새로 설치되는 CCTV 1대당 2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유치원 내 CCTV 5,485대 10억 9천 7백만원을 지원했다(교육부 내부자료, 2016. 11.). 교육부는 교실 내 설치율이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원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 2016. 3. 24). 한편 2016년 9월 기준으로 전체 국공립유치원 교실 중 3.9%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체 9,457개 교실 중 370개 설치), 사립유치원 교실 중에서는 78.7%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25,505개 교실 중 20,067개)(연합뉴스, 2016. 9. 26). 아울러 시도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유치원 CCTV 설치 확대 촉진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실 내 CCTV가 설치된 유치원 수(2017년 실적)를 시도 교육청 평가(2018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교육부 내부자료, 2016. 11.).

3) 여성가족부

가) 해바라기 센터 사업²⁴⁾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경찰청과 협업하여 해바라기 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바라기 센터는 기능에 따라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으로 나뉘며, 그 중 해바라기 센터(아동형)에서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윈스톱으로 제공한다. 연도별로 해바라기 센터는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아동형 해바라기 센터는 총 8개소이다(표 III-1-19 참조).

〈표 III-1-19〉 연도별 해바라기 센터 운영 현황

연도	합계	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아동·청소년	통합
2004	1개소	-	1개소	-
2005	5개소	2개소	3개소	-
2006	17개소	14개소	3개소	-
2007	18개소	15개소	3개소	-

24) 해당 부분은 '여성가족부(2016).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을 바탕으로 작성함.

(표 III-1-19 계속)

연도	합계	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아동·청소년	통합
2008	20개소	16개소	4개소	-
2009	28개소	18개소	10개소	-
2010	30개소	17개소	9개소	4개소
2011	31개소	16개소	9개소	6개소
2012	30개소	15개소	8개소	7개소
2013	33개소	17개소	8개소	8개소
2014	34개소	16개소	8개소	10개소(거점1)
2015	36개소	16개소	8개소	12개소(거점1)

자료: 여성가족부(2016). 해바라기센터 사업 안내.

해바라기 센터(아동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하고, 사건조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나)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부모교육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²⁵⁾ 홍보 리플릿에는 임신·출산 및 영유아기 육아정보와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2016년 4월 8일부터 전국 보건소(254개소), 산부인과 병원(1,358개소), 산후조리원(604개소)에 배포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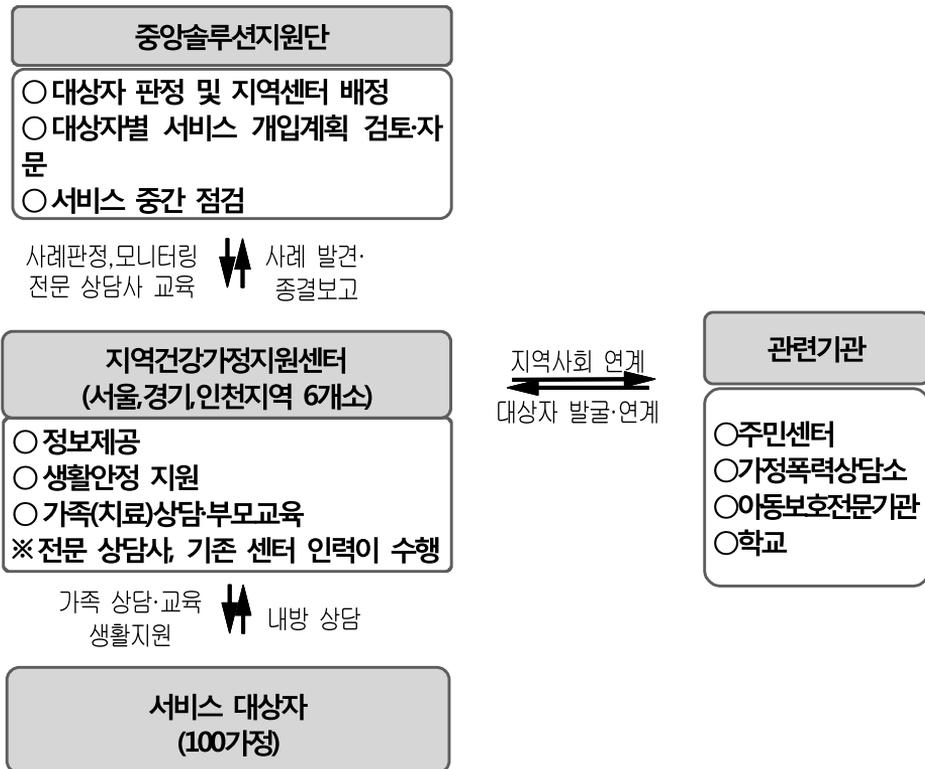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 주간(5. 9~5. 15)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와 부부폭력 등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콘텐츠를 방송을 통해 확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하며, 이를 통하여 폭력 예방 문화를 형성할 계획이라 밝혔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6. 5. 12).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공동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 자녀양육 관련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0. 26), 향후에도 엘리베이터 모니터·전광판·IPTV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매체를 이용하여 부모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경

2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cp/cpe/cp_cpe_f001.do)에서 2016년 10월 20일 인출.

찰청·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도자료, 2016. 11. 18).

다)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을 넘어서 부모가 직면한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및 부모교육 실시 등을 통한 자녀의 안전한 양육지원을 위해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6. 6. 15). 서비스 추진 체계는 다음 [그림 III-1-5]와 같으며, 내용은 다음 <표 III-1-20>과 같다.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 6. 15). 『가족행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본격 개시. p. 3.

[그림 III-1-5]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추진 체계

〈표 III-1-20〉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내용

서비스 영역		내 용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		양육정보, 지역사회 정보, 가족품앗이 연계
생활안정 지원		생활환경정돈, 가족여가지원, 자조모임 연계, 노무 상담 연계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양육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원인 파악 및 상담·교육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 소통 문제 파악 및 상담·교육
	부부 및 가족관계	부부·가족관계 상담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 6. 15). 『가족행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본격 개시.

4) 법무부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법무부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가 선정한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아동학대에도 적용하고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14. 9. 3). 또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 인력이 수사 및 재판과정 등의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증대하거나 보조하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14. 9. 3). 이 두 가지 제도는 종래에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만 적용해왔지만,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토대로 아동학대 범죄에도 적용하고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14. 9. 3).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 법률을 지원한다(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2015. 7). 국선변호사는 지정받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2015. 7).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진술과 행동 특성에 관하여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아동·장애인에 대한 조사 또는 재판 시에 동석하여 의사소통을 조력하도록 하고 있다(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2015. 7).

나)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운영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역시 2014년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 시행된 제도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이 제도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로,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인해 그 피해가 반복 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한 제도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의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피해 아동보호명령사건 중 절차보조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보호의 내용은 ①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④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⑤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⑥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⑦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⑧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등이다(원혜옥, 2015).

다) 스마일센터 운영

스마일센터는 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심리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총 6개 지역에 설치되었고, 2015년에는 춘천지역과 전주지역 센터가 설치되었다(법무부 보도자료, 2015. 12. 29). 2016년에는 수원과 서울 서부 지역에 각 1개소가 설치되어, 2016년 현재 총 10개소가 운영 중이다(법무부 보도자료, 2016. 12. 28).

2010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1개		1개		2개		2개		2개		2개
서울센터		부산센터		인천·광주센터		대전·대구센터		춘천·전주센터		수원·서울서부센터

자료: 다음의 자료를 통해 재구성함.

- 1) 법무부 보도자료(2015. 12. 29). 범죄피해자의 미소(Smile), 법무부가 찾아드립니다! p. 4
- 2) 법무부 보도자료(2016. 12. 28). 법무부, 서울서부에 전국 10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p. 1.

[그림 III-1-6] 전국 스마일센터 설립 연혁

경찰서,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서가 접수되거나 본인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사례 회의를 통해 해당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절차가 결정되며, 상담, 심리치료,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환자들보다 더 불안하며, 대인기피 및 공황장애, 기억력 상실 등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15. 12. 29). 이에 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진단평가, 심리치료, 기타 심신단련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 심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범죄피해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감'을 크게 완화시키고자 한다(법무부 보도자료, 2016. 12. 28). 법무부는 2010년 '스마일센터' 사업 시작 이후, 2016년 11월말 기준으로 심리치유 지원, 임시주거 지원, 법률지원 등의 실적을 총 98,933건으로 추산하고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16. 12. 28). 법무부는 앞으로도 스마일센터 운영을 통하여 학대 아동에 대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법무부, 2016. 2), 20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법무부 보도자료, 2015. 12. 29).

라) 아동학대 수사 역량 강화

법무부는 2016년에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아동·여성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신설하여 수사역량을 갖춘 우수검사를 배치하고(법무부 업무계획, 2016. 2), 전국 5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각각 배치하고 학대전담경찰관도 211명 추가 배치하였다(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도자료, 2016. 11. 18). 이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암장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 검시 및 부검을 강화하며, 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구형 및 선고현황을 분석하여 범죄유형별로 구속여부·보호처분·구형에 대한 세부적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법무부 업무계획, 2016. 2).

법무부는 2011년에 최초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된 데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2016년 2월에 광주와 대구에 신설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에 대처하고, 입체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주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6. 2. 2). 대구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 하여 아동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협업시스템을 구

축·가동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고(대구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6. 2.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 검사 당직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검사가 주요 아동학대사건을 상시 신속하게 지휘할 수 있도록 24시간 핫라인(Hot Line)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 밝혔다(광주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6. 2. 2).

마) 학대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 정비

법무부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범죄 수사 초기부터 접근금지,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가해자 퇴거 등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학대를 예방할 계획이라 밝혔다(법무부, 2016. 2). 또한 초등수사 사건부터 수사과정에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전문가에게 사건 처분 및 피해자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인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법무부, 2016. 2).

5) 기타

이의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범을 엄단하기로 하였다(대검찰청 보도자료, 2016. 11. 1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III-1-21>과 같다.

<표 III-1-21>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

주요내용	상세내용
아동의 생명 침해행위 최고수준 엄벌	-아동학대치사 사범에 대해서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하고, 필요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학대행위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 취급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친권자 기타 보호의무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가중취급을 정하도록 함.
범죄의 내용과 피해정도에 따른 처벌의 체계적 구별	-아동학대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에 따라 범죄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별하고 범정에 따라 단계별로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함.
범행 정황의 합리적 반영	-아동에 대한 유기 또는 치료·의식주 방임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을 구형에 반영하여 경제적 궁핍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료: 대검찰청 보도자료(2016. 11. 14).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 강화. p. 3-4.

2. 국외 제도 및 정책 분석

2000년대 이후 아동의 권리와 안전 및 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온 국내와 달리 국제기구와 외국은 보다 이른 시기부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본 항목에서는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아동학대 관련법 및 예방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국제기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간에 한 목소리를 국제기구를 통해 내기 시작한 것은 1924년 국제연맹회의에서 5개항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한 것으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United Nations, 1989).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이 1959년 11월 20일 채택한 10개 항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확장된 이래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포함한 폭넓은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United Nations, 1989). 이 협약은 아동이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한 국제인권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발달권과 참여권에 관한 총 54개의 조항에 담고 있다(United Nations, 198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n.d.). 전체 3부로 구성된 협약은 1조부터 41조까지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담은 1부, 당사국들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의 전문기구들을 포함해 당사국들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제기구와 당사국들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담은 2부, 협약의 가입 및 발효, 그리고 개정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United Nations, 1989).

2) 세계 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²⁶⁾

세계보건기구는 아동학대(child abuse 혹은 child maltreatment)와 유기가 문

26) 해당 부분은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을 바탕으로 작성함.

화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문화에 따라 용인되는 부모의 양육 행위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1999)는 아동학대를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아동을 위탁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ill-treat), 성적 학대, 유기 혹은 방기(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상업적 착취나 기타 착취,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존엄성에 대한 실질적, 잠재적 위해의 원인’(세계보건기구, 199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59에서 재인용)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세계보건기구는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4대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로 분류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59-60).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가 이러한 아동학대 및 유기와 관련하여 특별히 아동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 있음을 밝혔는데, 연령, 성, 그리고 특수성이 그 세 가지 요인이다. 첫째, 연령은 어릴수록 나이든 아이들에 비하여 아동학대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영아들일수록 유아에 비하여 더 취약성이 더 높았다. 영아는 치명적인 아동학대 비율이 5세 이상의 아동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치명적이지 않은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영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 않았다. 두 번째, 성별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는 여아가 다양한 아동학대의 대상이 될 확률이 많았다. 여아는 남아에 비하여 영아살해, 성적 학대, 교육 및 영양 유기, 그리고 매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혹한 체벌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아에 비해서 남아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아동학대와 유기에 취약한 아동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는 미숙아, 쌍생아, 장애와 같은 것들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하여 아동학대와 유기 대상이 되기 더 쉬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미국

1)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미국은 1974년 일명 CAPTA(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였다. 1974년 최초로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통해 2010년 12월 20일 “CAPTA Reauthorization Act of 2010”으로 개정된 이 법은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1)와 강은영·김희균(2015)에

따르면, 예방, 평가, 조사, 기소, 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기금을 각 주에게 제공하고, 공공 기관과 비영리단체가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기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CAPTA는 연방정부의 역할은 연구, 평가, 기술 지원, 자료 수집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아동학대와 유기를 다룰 아동학대 및 유기 대응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를 설립하는 역할, 아동 복지 정보 센터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를 설립하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강은영·김희균, 2015;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1).

미국은 입양지원과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AACWA)을 개정하여 입양 등으로 가족을 떠나 보호받는(out-of-home care)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입양과 안전한 가족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ASFA)을 제정하였다(전영실·노성훈, 2011;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6; Stein, 2000). 이전까지 미국의 입양과 관련된 철학은 가족 보호, 가족의 재결합을 기반으로 있었으나 ASFA를 계기로 가족 재결합의 노력이 아동을 위협에 처하게 한다면 아동의 복지를 위협하는 가족 중심주의를 포기하게 하였다(전영실·노성훈, 2011; Stein, 2000). 즉 아동의 부모가 아동 유기, 고문, 신체적, 성적 학대의 피의자일 경우, 부모가 자녀나 다른 아이를 사망케 한 법적 책임이 있을 때, 다른 자녀에 대한 친권이 법에 의해 상실된 경우 등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숙려기간 없이 아동의 조속한 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Stein, 2000).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

가) 건강한 가족 아메리카 (Healthy Families America: HFA)²⁷⁾

건강한 가족 아메리카(Healthy Families America: HFA)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아동학대와 유기에 관한 자문위원회(U.S. Advisory Board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91)는 ‘하와이 건강한 시작’(Hawaii Healthy Start)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예방 전략으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Duggan et al., 2007; 802, United States Advisory Board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91에서 재인용). 2년 뒤인 1993년 HFA는 미국 전

27) 해당 부분은 Healthy Families America 홈페이지(<http://www.healthyfamiliesamerica.org>)를 바탕으로 작성함.

역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학대 방지프로그램이 승인된 HFA는 심리사회적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위기 가정으로 분류된 가정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HFA는 현재 미국의 35개 주와 워싱턴 D.C., 캐나다 및 6곳의 미국령에서 실행되고 있다(Healthy Families America, 2016a). 비록 HFA는 하와이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아서 출발했지만, 미국 전국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과 운영하는 단체에 따라 차별화하여 운영된다(Oshana, Harding, Friedman, & Holton, 2005).

Healthy Families America (2016b)에 따르면 HFA의 목적은 첫째, 아동학대를 줄이고, 둘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복지를 향상하며, 셋째, 학교 준비도를 향상시키며, 넷째,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증진하며, 다섯째, 긍정적 양육을 증진하며, 여섯째, 가정의 자족능력을 향상시키고, 일곱째, 의료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여덟째, 아동의 부상과 응급실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지역예방서비스대책기구(Task Force on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2003)는 HFA와 같은 가정방문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약 40%의 아동학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Oshana, Harding, Friedman, & Holton, 2005; Task Force on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2003에서 재인용).

전영실·노성훈(2011)에 따르면 HFA의 특징에 대해 각 지역마다 다른 철학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 프로그램마다 대상으로 삼는 지원 가정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주마다 지원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 주의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에 따라 독특한 운영 방식이 결정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HFA는 각 가정의 문제를 가정이 스스로 발견하고 이에 따라 자녀에게 유익한 환경을 스스로 계획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한다(전영실·노성훈, 2011).

나) 포괄적 아동발달 프로그램(Comprehensive Child Development Program: CCDP)²⁸⁾

CCDP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의 발달을 증진시키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0년에서 1996년 사이 기금이 조성되고 만들어진 연방지원 프로그램이다(Child Trends, 2016).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가정은

28) 해당 부분은 Child Trends 홈페이지(<http://www.childtrends.org/programs/comprehensive-child-development-program>)를 바탕으로 작성함.

먼저 가정과 함께 일할 사례 담당자가 배정되며, 배정된 사례 담당자는 한 달에 평균 2회 가량 가정의 필요에 따라 매번 30분에서 90분 이상 방문해 가정의 필요를 파악하며 파악한 정보에 따라 서비스의 목표와 요구되는 서비스의 종류를 정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관련 서비스와 자원을 소개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문과 지원을 제공한다. CCDP는 또한 0~5세 사이의 자녀에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가정 방문을 통한 유아교육을 제공한다. 유아교육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할 때 직접 유아를 교육하는 것 이외에 부모에게 자녀 양육법 교육도 병행한다. 가정을 방문한 전문가가 부모들의 유아에게 하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알려주고 새로운 행동을 제시해준다. 또한, CCDP는 성장발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성장발달이 표준 발달과정에 지연되지 않는지 평가한다(전영실·노성훈, 2011; Child Trends, 2016).

3)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의 학대방지 대책²⁹⁾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에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NAEYC, 1996). 첫째, 적절한 교원의 수이다.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는 유자격 교사를 아이들 수에 맞게 적절한 수만큼 고용해야 한다. 적정한 교직원의 수에 비하여 아동이 많으면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교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고의 위험이 늘거나, 혹은 교사가 아이들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할 위험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뿐 아니라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성인의 수에 비례하게 적절한 아이들의 수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

둘째, 가려진 공간의 최소화이다.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쉬운 사적이거나 가려진 공간은 실내나 실외를 막론하고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리적인 환경이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실내 공간 뿐 아니라 실외 공간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공간이라고 느낀다면 아동학대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아이들이 혼자 있거나 소그룹으로 조용

29) 해당 부분은 'NAEYC(1996).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Early Childhood Professionals to Prevent Child Abuse'를 바탕으로 작성함.

히 놀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교사나 성인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대예방교육의 실시이다.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모든 교사나 직원들은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그리고 현직에서도 정기적으로 학대와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내용은 먼저 아동 학대와 관련해 의심이 들 때 아동과 함께 일하는 누구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뿐 아니라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은 학대를 줄일 수 있는 책략, 학대위험을 알리는 징후들, 학대를 신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같은 것은 미리 익혀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가 일어났을 때 조기에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안전한 환경을 위한 명확한 지침과 절차이다. 먼저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외부인이 접근하는 것은 통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방문객은 출입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위협요인을 갖은 외부인이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물리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통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이를 데리러 갈 사람이 부모가 아니거나, 평소와 다를 경우 기관에 이를 미리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에 대한 지속적 감독과 부모 참여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나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가 혼자 떨어져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우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주의를 요한다. 아동학대가 기관의 성인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예방활동은 아이들의 부모가 자주 교실 및 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이와 같은 부모의 방문 및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학대예방을 위해 “노터치 지침”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터치 지침”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동과 교직원 간의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뜻하고 반응적인 교사의 신체접촉은 나이가 어린 연령의 아이이든, 더 큰 아이이든 모두 똑같이 필요하다.

일곱째, 교원 채용 시의 검증이다. 교원의 신규 임용 시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는 교사의 범죄 기록 조회, 교육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한 자세하고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나 직원을 통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다. 일본

1)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일본에서는 1933년 아동학대방지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이후 전쟁고아 등 요보호아동이 급증하여 1947년 이들을 위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며 이전에 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복지법으로 통합·흡수되었다(배상균, 2015). 이후 일본은 2000년 5월 17일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학대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기 전까지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별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게 언론에 부각되어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 되었다(김잔디, 2014).

그러나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이 새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004년에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및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연이어 일본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김잔디, 2014; 배상균, 2015). 위 법률들은 2000년 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에서 보호자가 그 보호하는 아동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아동학대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의무 범위의 확대, 아동의 안전을 위한 규정의 정비, 아동가정상담체계의 내실화, 아동복지시설과 양부모제도의 개선, 요보호아동에 관한 사법적 개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배상균, 2015).

이로 인해 2000년 이전 일본에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법은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 사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관행이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하게 되었다(김잔디, 2014).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

일본은 2004년부터 11월을 “아동학대 방지 추진 월간”으로 지정하고 매년 11월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배상균, 2015). 아동학대방지법이 2000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 점은 한편으로는 아동학대방지법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면에서는 그동안 가정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그리고 주변에서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고도 가정 내 일로 치부했던 것이 점차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방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자인 보호자가 아동의 학대를 스스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학대 피해 아동이 직접 학대 사실을 신고하기도 어렵다. 아동학대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법은 “학교, 아동복지시설, 병원 기타 아동의 복지 업무와 관계있는 단체 및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의사, 보건사, 변호사 그 외의 아동의 복지 업무상 관계있는 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김잔디, 2014; 배상균, 2015). 이와 같이 아동학대방지법에서 신고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적인 아동학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일본은 2013년 현재 아동학대를 상담할 수 있는 207개의 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김미숙, 2014; 오미희, 2015). 이 아동상담소는 교정시설 지원, 상담, 조사, 아동 및 가정 지원, 일시보호 등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다(김미숙, 2014). 아동상담소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 뿐 아니라 장애, 비행, 가정위탁, 일반 양육 상담 등 보다 포괄적인 아동의 양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이러한 상담으로 학대의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조사를 통해 아동과 가정을 조사하여 아동의 필요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김미숙, 2014). 오미희(2015)는 후생노동성의 공시자료를 통해 아동상담소의 상담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아동학대 사후 조치

가) 아동학대의 신고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를 지닌 자를 ‘학교, 아동복지시설, 병원 기타 아동의 복지 업무와 관계있는 단체 및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의사, 보건사, 변호사 그 외의 아동의 복지 업무상 관계있는 자’(김잔디, 2014; 배상균, 2015)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 대상을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에서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아동으로 확대하였다(배상균, 2015).

나) 신고의 대응³⁰⁾

일본의 후생노동성(2016년 12월 16일 인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아동상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접수된 사례가 모두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아동학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혹은 의심 사례로 신고된 경우 외에도 다른 상담을 통해서 아동학대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후생노동성(2013)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의 비행이나 양육관련 상담에서 “거짓말을 자주 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 혹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등을 호소한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잠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배상균, 2015; 厚生労働省 『子ども虐待対応の手引き, 2009에서 재인용).

다) 학대아동의 보호 및 격리

학대 아동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되면 아동상담소장은 아동학대방지법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면담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보호할 수 있다(김잔디, 2014). 특히 아동학대방지법은 일시보호조치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배상균, 2015). 이러한 일시보호조치는 지역 아동상담소와 지자체별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부모/친권자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고, 혹시 아동학대가 아닐 수 있다는 신고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되면 매뉴얼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에 지역 관계기관의 직원들이 복수로 참여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배상균, 2015; 후생노동성,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대 일시보호조치의 기간은 2개월까지로 제한되고 있다(배상균, 2015).

또한 아동이 친권자와 함께 살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가정법원은 아동을 장기간 양부모에게 위탁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김잔디, 2014).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역시 최대 3년으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으며, 아동이 시설에서 장기간 보호받을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외상 및 정

30) 해당 부분은 후생노동성(일본) 홈페이지(<http://www.mhlw.go.jp/bunya/kodomo/dv12/03.html>) 중 ‘후생성의 아동학대대응매뉴얼(2016년 12월 16일 인출)’을 바탕으로 작성함.

신적 상처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김잔디, 2014).

라. 영국

영국의 최근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2014-15학년도를 기준으로 총 635,600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인 2013-14학년도에 비하여 약 3% 정도 감소된 수치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6).

1)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국의 법의 연원은 1868년 빈민구제법(Poor Law Act)부터 살펴볼 수 있다. 이후 1886년 제정된 유아후견법(Guardianship of Infants Act)은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라는 전통적인 사상에서 나아가 어머니의 권리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버지가 사망한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그 자녀에 대하여 21세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을 갖도록 하는 등의 오늘날에 비하면 제한된 내용이었다(송수진, 2016).

오늘날 영국에서 아동에 관한 기본법은 1989년 제정된 아동법(Children Act)으로 이 법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부모뿐 아니라 공공 기관, 지역 아동보호 당국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는 아동의 복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아동이 가정을 최대한 유지하고, 부모와 가족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협의를 통한 아동보호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송수진, 2016;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6). 다만 아동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송수진, 2016;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6).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

현대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는 2000년에 발생한 빅토리아 클림비(Victoria Climbie, 이하 클림비)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 코드리부아르에서 출생한 클림비는 친척인 마리 코아오를 따라 영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보호자인 마리의 심각한 학대를 수차례 주변에서 신고하였고, 보육기관, 병원에서 학대의 흔적을 발견하였음에도 클림비를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영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이를 계기로 의회에 클림비 보고서가 제출되게 되었다. 보고서는 조사를 통하여 여러 차례 아이에 대한 학대를 멈추게 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친 것을 보고하였다(Laming, 2003). 이에 1989년 제정된 아동법이 2004년 전면 개정되었고,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부서(Social Service Department)가 아동서비스 부서(Children's Services Department)로 바뀌는 등 아동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Laming,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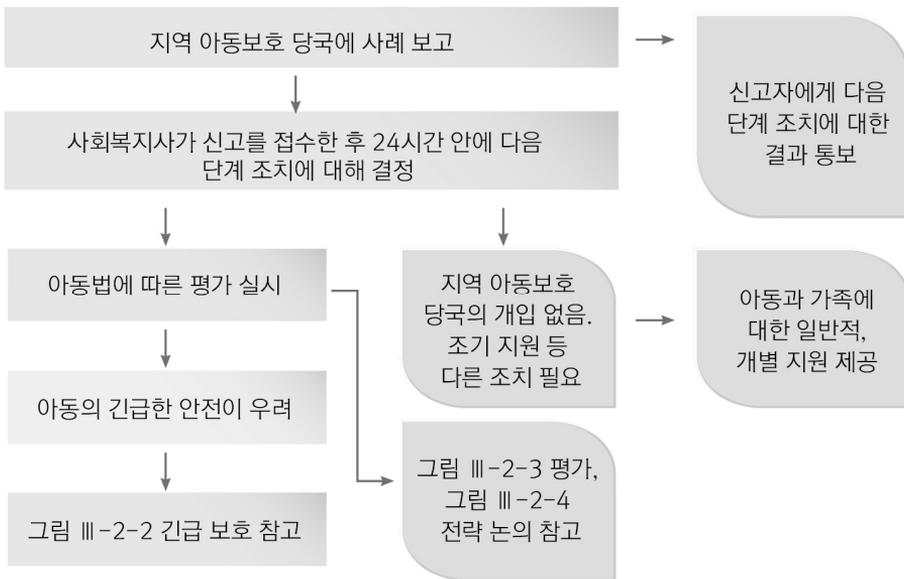
영국 정부는 클림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를 사후 대책을 중심으로 한 접근에서 조기에 개입하는 것으로 접근법이 바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이 교육적 성취, 실업, 범죄, 반사회적 행동 등 아동기 이후에까지 지속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송수진, 2016).

영국의 법률은 아동학대에 대한 업무를 주로 지역의 아동보호 당국과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게 하고 있지만, 1884년에 세워진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이하 NSPCC)라는 자선단체도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 보호문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특히 2004년 개정된 아동법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 문제를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이하 Working Together)을 마련하여 앞서 언급한 아동보호 당국, 경찰, NSPCC 등의 기관들과, 보건 당국, 각급 학교, 보육 기관, 성인 사회복지 관청, 주택 관청, 교정 당국, 이민 당국, 아동 및 가정법원, 군 당국, 자원봉사 및 민간 영역, 종교 단체와 같은 다양한 관련 기관 간에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Working Together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를 통해서 잘 협력하고 있는데 2004년에 수정된 아동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아동학대로 고통 받고 있거나 고통 받을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를 세울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6년 최초로 설치되어 기존의 지역 아동 보호 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를 대신하게 하였다(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2011). 실제 아동 학대의심사례가 실제 접수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도식으로 살펴보면 [그림 III-2-1]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의 아동보호 당국에 접수된 사례는 반드시 24시간 안에 다음 조치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정해진 시간 동안 이를 판단하는데 아동이 보호당국의 개입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종류의 지원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다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아동의 발달적 요구, 부모의 역량, 가정과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긴급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판단하게 한다. 특히 아동보호당국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조기 지원과 같은 다른 종류의 지원도 안내하고 지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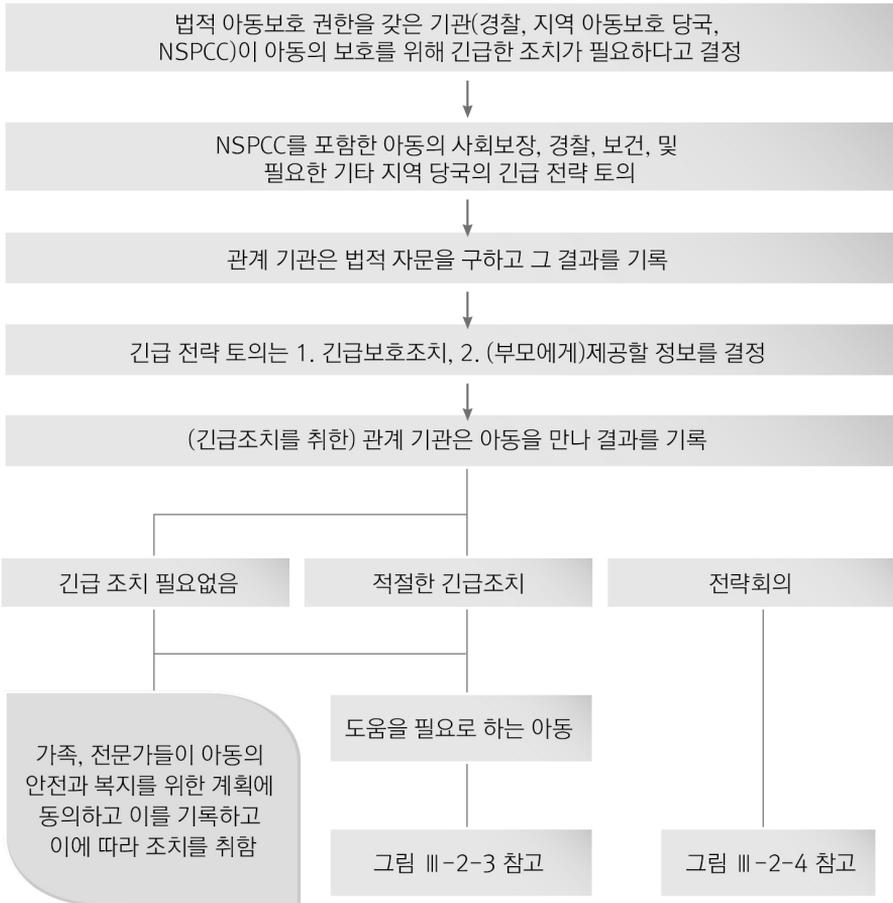


[그림 III-2-1] 지역 아동보호 당국에 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조치

자료: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30, Flow chart 1, Action taken when a child is referred to local authority children's social care services.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평가는 아동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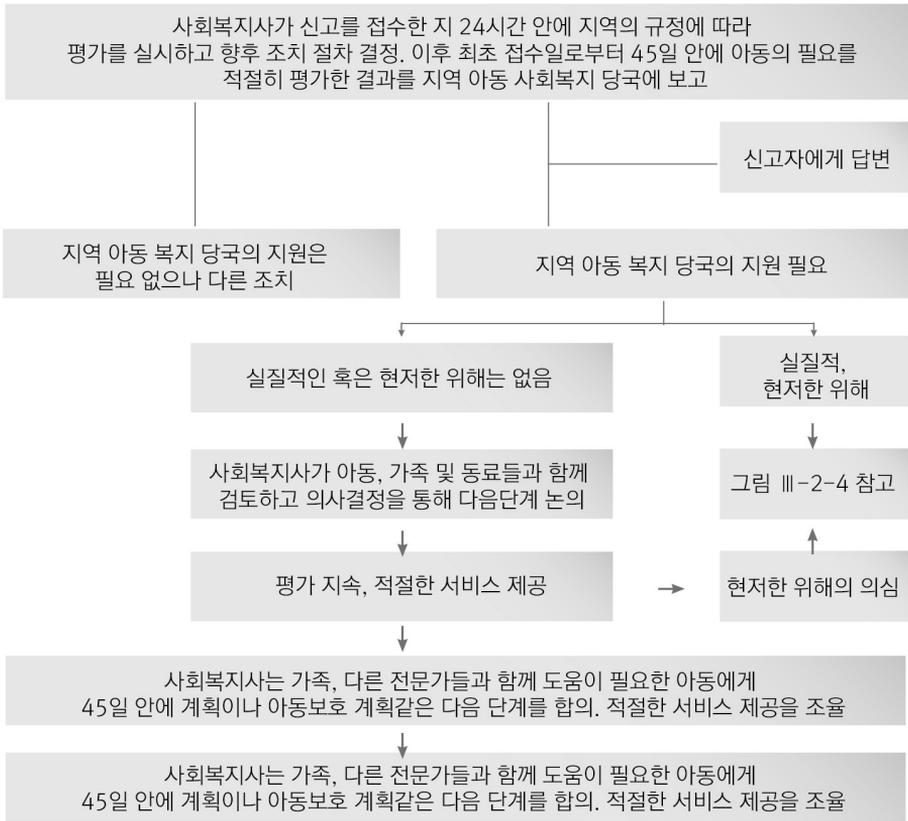
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즉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긴급한 안전에 대한 위해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림 III-2-2]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림 III-2-2] 긴급 보호

자료: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32, Flow chart 2, Immediate prot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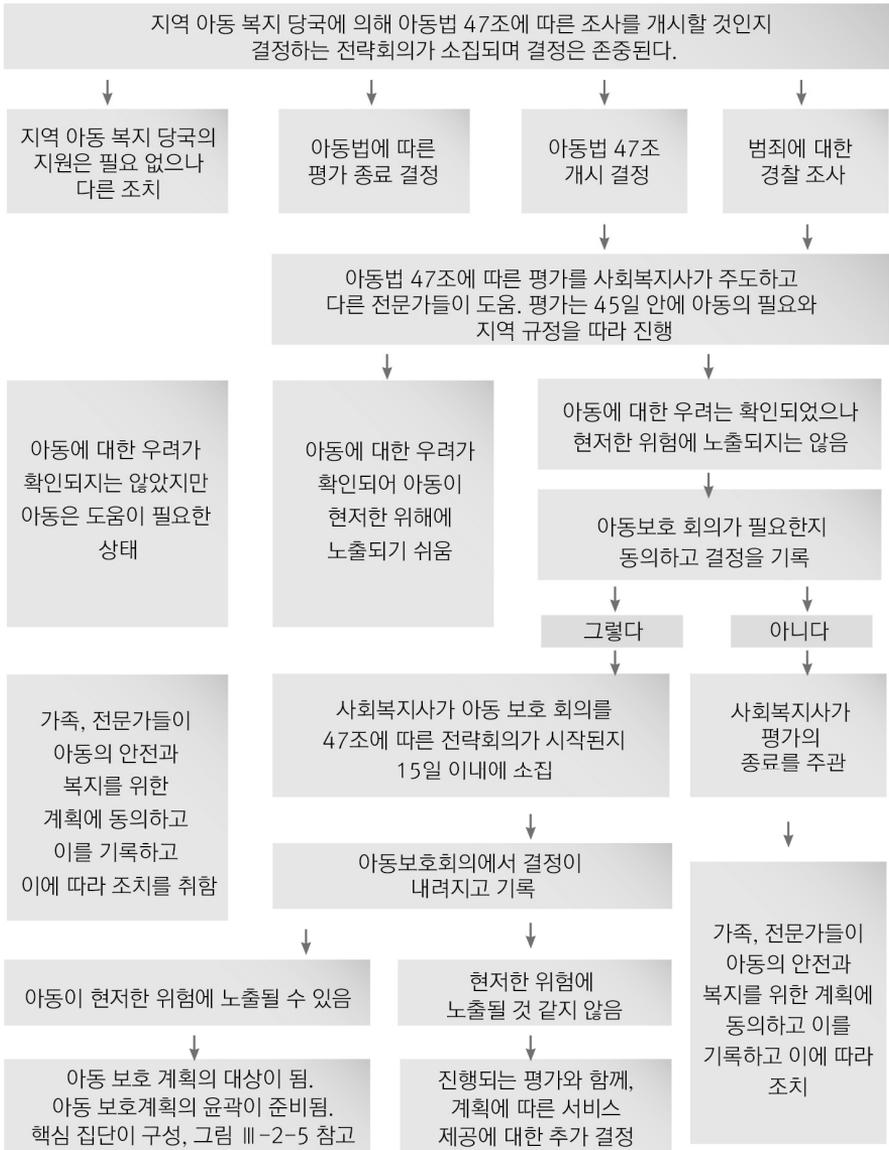
위의 [그림 III-2-2]는 민관이 함께하는 전략토의를 통해 긴급조치가 필요 없는 아동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평가의 절차를 [그림 III-2-3]과 같이 거치게 된다.



[그림 III-2-3] 아동법에 따른 평가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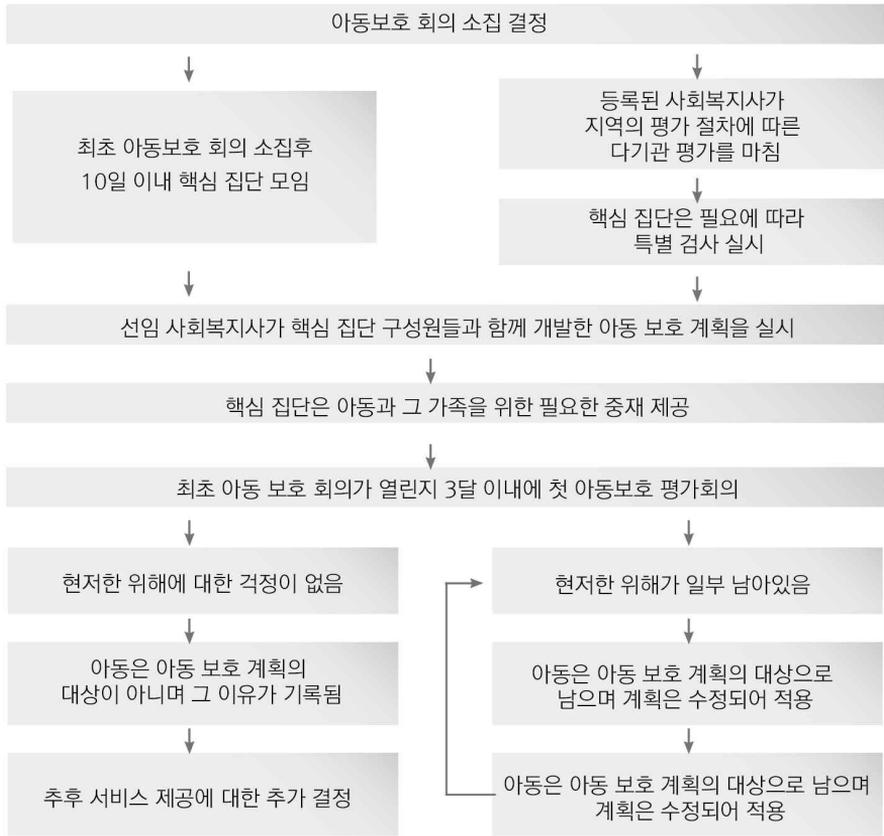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35, Flow chart 3, Action taken for an assessment of a child under the Children Act 1989.

평가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최초 24시간 이내에 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해 지역 아동 보호 당국의 개입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지역 아동 보호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현저한 위험의 경우는 전략회의를 소집하여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III-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2-4] 전략회의 이후의 조치

지료: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38, Flow chart 4, Action following a strategy discussion.



[그림 III-2-5] 아동보호 회의 소집후 상황

자료: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48, Flow chart 5, What happens after the child protection conference, including the review?

이와 같은 체계를 따라 아동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꾸준한 평가를 지속하고 개선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접근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이 외에도 영국에서는 2006년 아동법에 의해 Sure Start Center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발달과정, 문해력, 아동과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Ritchie, 2016). 그러나 Sure Start Center는 지역별로 그 운영 방향 및 역할이 달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데 무리가 있다. 다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어서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해 복지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가장 영향력 있는 서비스는 부모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Ritchie, 2016).

3)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의 학대방지 대책³¹⁾

한편 영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서의 학대방지 대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아동보호위원회에 참여하여 해당 기관의 아동이나 그 부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지역의 아동보호 당국, 치안 당국, 보건 당국, 및 다양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갖는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다(Arijali, 2016).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신입교사들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직원들은 범죄경력 등을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를 통해 모두 조회 받고 채용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머무는 동안 아동이 다친 것이 확인이 되면 무조건 보고해야 하며, 가정에서 자녀가 다친 경우에도 기관에 그 경위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가정에서 아동학대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은 아동과 단 둘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받는다.

마. 독일

1)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독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형법과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아동에 대한 학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호자에 의한 피보호자에 대한 학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괴롭히거나 학대를 가한 경우, 보호의 의무를 악의적으로 태만히 행한 경우, 그리고 부양, 보호, 및 교육의무를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입힌 경우를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으

31) 해당 부분은 '영국 런던 소재 어린이집(House of Commons Nursery) 책임자인 Anjali와의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로 볼 수 있다(송수진, 2016).

한편 1991년에 시행된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해 청소년청(Jugendamt)이 아동학대예방조치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독일의 특징은 청소년청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청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직접 가정의 문제에 개입하고, 가정법원은 청소년청과 협력하여 부모와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에게 위협이 되는 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다(양영임, 2016).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

독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청소년청(Jugendamt)이 있다. 이 청소년청은 간혹 아동-청소년청(Kinder-Jugendamt)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독일의 청소년(Jugend)이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아동(Kinder)을 따로 밝히지 않고 청소년청(Jugendamt)이라고만 명칭을 사용해도 아동과 청소년을 모두 포괄한다. 청소년청은 부모와 법적 보호자에게 예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청은 청소년복지위원회(youth welfare committee, JHA)와 행정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정부의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지원은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청소년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과 청소년 지원이라 함은 학교교육 외의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 보육, 사회화 및 생활 전반에 걸친 매우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른다(정수정·류방란, 2012). 독일은 각 주(Länder)마다 자치권이 강해 연방 전체가 일률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가 많지 않으나,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크고 작은 청소년청을 각자 가지고 있다(양영임, 2016). 또한 청소년청은 모두 독립되어 있어서 위계적으로 중앙조직이나 상부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예산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Dreber, 2009).

청소년청의 아동보호를 위한 역할은 첫째, 아동보호, 둘째, 가족 상담, 별거 및 이혼 상담, 셋째, 보호자, 관리자 지정, 넷째, 양육 지원, 입양 배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가) 아동 보호

아동이 처한 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학대의 위협에 처한 경우 청소년청은 관련 가정과 연락하며 이를 주시하고, 학교, 의사, 경찰 및 어린이집과 긴밀히 협조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모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기까지 청소년청이 아동을 직접 보호하기도 하고, 부모가 장기간 준비되지 않아 아동의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가정법원이 아동이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게 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나) 가족 상담, 별거 및 이혼 상담

이혼 위기에 처한 가정에 청소년청은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정법원의 절차에도 개입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상대 부모의 양육비 비원을 받지 못할 때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다) 보호자, 관리자 지정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더 이상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울 때는 법적 보호자가 따로 지정이 되는데, 마땅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청소년청을 아동의 법적보호자로 지정한다. 또한 미혼모의 경우에도 청소년청이 미혼모의 동의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지원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라) 양육 지원, 입양 배정

보다 지속적이고 면밀한 도움이 필요한 일부 부모에게 장기적이고 강화된 도움을 제공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양 가정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 청소년청은 친부모와 같이 살 수 없는 아동을 친척 양부모, 비혈연 양부모, 혹은 해외 입양을 추천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3)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의 학대방지 대책³²⁾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서의 아동 학대방지 대책은 먼저 교사교육을

32) 해당 부분은 '독일 베를린 소재 유치원(kiddies international) 교사인 Yana와의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들 수 있다. 베를린 소재 유치원 교사와의 인터뷰(Yana, 2016)를 통해 연구자들은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에 대한 교사교육 전략을 소개받았다. Yana(2016)에 의하면, 독일의 교사들은 모두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법과 관련된 교재를 통해 교사가 되기 전 예비교사교육을 받을 시에 6개월간 관련법에 관한 내용을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지도 받는다. 또한 선임교사를 주체로 하여 교사들의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직무연수는 법에 대한 세미나 혹은 연수이며 이는 14주 간 아동보호에 대해 특별한 교육을 받은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 내 다른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교사들은 또한 시에서 배포한 아동 보호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아동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은 주로 아동 보호 이슈를 다루고 있다.³³⁾

한편 기관에서 아동학대 발견 시의 절차는 1) 교사가 징후 발견, 2) 학급 내 다른 팀 교사(모든 학급마다 3명의 교사)에게 전달, 3) 주임교사에게 전달, 4) 교사 모두가 그 건에 대해 토론(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판단), 5) 모든 상황에 대해 문서(주에서 준 양식으로 독일 내 16개주가 모두 양식을 가지고 있음) 작성, 6) 유치원 운영 회사에 보고, 7) 이 모든 상황을 부모에게 알림(함께 해결책을 찾거나 안 되면 청소년청에 의뢰)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 모든 절차 이후는 유치원의 손을 떠나 청소년청 등에서 처리하며 만약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건으로 의심하여 위 절차대로 진행하다가 중간에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 중지하게 된다. 이러한 처리 절차가 가능한 이유는 교사들끼리도 서로를 지켜보고 함께 일하기 때문인데, 만일 교사 중 누군가 아동학대 같은 행위를 발견할 경우 상황을 설명하라고 요구해서 함께 생각하고 서로 소통하는 게 일상적인 현상이다.

만일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고할 수 있으며 교사의 경우 3년마다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을 갱신하며, 이 때 원장이 양식을 통해 경찰에게 해당 교사는 아무 일이 없었음을 보고해야만 자격 갱신이 가능하다.

33) 시 배포 자료는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예를 들면, 아동에게 멍이나 상처가 있거나, 슬퍼하거나 잘 못지 않는 경우, 식습관 행위가 불안정한 경우, 수면을 취하지 않는 행위, 아동이 부모의 이상 행동(약물 중독관련 행동)을 교사에게 설명하는 등이 관찰을 통해 발견되면 아동학대에 징후로 간주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3. 소결

가. 국내 제도 및 정책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관련 대응 대책을 끊임없이 수립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정책 변화는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전에는 아동학대 발생 이후 조치를 논하였다면,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더 이상의 피해아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부처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가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의견에 따라 다양한 부처 및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시에 자녀양육 정보를 영상, 안내지(리플릿)로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0. 26).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아동학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비판점을 갖는다. 첫째, 정부의 아동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15년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488억 1,100만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372억 8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김은정, 2016).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이양사업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이 2014년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이후 국가적 책임강화를 위해 20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한편, 인프라 대폭 확충, 인력 증원으로 인해 예산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것이라 밝혔다(2016. 3. 30, 보건복지부 설명자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 발생률 및 신고 건수를 고려해 볼 때 관련 예산은 부족해 보인다.

〈표 III-3-1〉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관련 예산

구분	'14년도 예산	'15년도 예산	'16년도 예산
합계	17,466백만원	48,811백만원	37,208백만원
국비 (지방비)	1,769백만원 (15,697백만원)	25,247백만원 (23,564백만원)	18,562백만원 (18,646백만원)

자료: 1) 보건복지부 설명자료(2016. 3. 30). '아동학대 느는데 정부 예산증액 '멈칫'...용두사미로 끝나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p. 1.

2) 김은정(2016).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보건복지포럼. p. 35.

둘째,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이 부족이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19,203건으로 2015년 기준 전체 상담원 522명을 나누어 1인당 업무량을 산출해보면 1년간 상담원 1명이 신고접수 받은 사례는 36.8건이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년의 경우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 심사례에 해당하는 16,651건을 대상으로 총 35,379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심사례 1건 당 약 2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단순 신고건수 뿐 아니라 현장조사 건수는 상담원 1인당 168.2건이며, 상담, 치료 등 서비스제공 횟수는 1,341.6회이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높은 지역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개소를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셋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홍보 자료 단순 배포 등의 부모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예방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 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확인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2014).

나. 국외 제도 및 정책

국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1924년 국제연맹회의에 의해 5개항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유엔이 1959년 11월 20일 채택한 10개 항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시간이 흐르면서도 꾸준히 아동에 관한 권리와 보호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처럼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꾸준히 요구되어 왔으나 시대에 따라, 또 문화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정의는 각기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각국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시사점을 그 배경과 문화에 비추어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절히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아동 학대 예방과 관련한 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Top-Down 방식의 제도보다는 부모교육을 동반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점을 들 수 있다. 연방제라는 미국의 제도와 주마다 법률이 다르고 자치권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처한 문제와 상황이 달라 연방의 제도가 각기 달리 적용될 수 있기에 그렇다. 한편 HFA나 CCDP와 같은 프로그램의 이름(건강한 가족 아메리카, 포괄적 아동발달 프로그램)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은 실제 직접적인 중재를 통하여 아동과 그 가족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처한 환경에 가용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의 미숙함에서 오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발달적 특징을 숙지하도록 유도하고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아동 학대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영유아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부족으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제 하에 아동 학대 예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교육 및 보육 제도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의 유사성이 높아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특히 과거 아동학대에 관한 공권력의 개입을 가정사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래도록 유지해온 측면에서 그 유사성이 두드러지는데, 제도와 법률로써 이런 모습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부모나 친권자에 의한 아동 학대가 여전히 잘 발견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두드러진 사례에 대하여 사후 처방 식의 대책이 주를 이루어 예방적 접근에서는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영국의 아동 학대 예방 정책의 특징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아동보호 당국의 주도적인 역할로 볼 수 있다. 영국은 아동법에 민간 자선단체인 NSPCC의 법적 권리를 부여해 마치 공공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민간단체들이 각 지역의 아동 보호 당국과 협력하여 지역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협력한다. 여기에서 중앙 정부의 역할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각 지역의 수준과 환경에 맞게 각 지역의 협의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오랜 시간 축적해온 영국의 특징이 잘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사정에 맞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많은 사회적 관심을 얻게 되었으나 이 분야에 오래도록 관심을 갖고 역할 해온 민간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체계적인 접근과 달리 낙후된 지역에서는 민간의 관심의 부족이나 예산의 부족의 문제로 인하여 지역 간에 편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에 일어난 클림비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성립되고 유지되어온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대적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측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아동 학대 예방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청(Jugendamt)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과는 달리 독일의 청소년청은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1차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고 긴밀하게 법원과 협조하고 있다. 부모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청소년청이 법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행사하며 법적인 권한이 있다. 특히 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등과 같은 아동 관련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하게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청에 도움을 청하면 잘못될 경우 자신의 자녀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모들도 많아서 부모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각 지역마다 아동을 전담한 관청이 있어 체계적인 접근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나 단점으로 지적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한 부모들이 쉽게 도움 얻기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아동학대 관련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고, 또 주요한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가정 내, 시설내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 대응을 위한 기존 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정책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V. 학부모와 교사의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학부모와 교사의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을 기술하였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이루어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학대는 5% 정도이나, 교사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아동학대 관련 교육 정도,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영유아 학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가. 조사 대상자의 특성

총 조사 가구는 1,139명이었으며 조사의 응답자 중 63.2%는 어머니, 36.8%는 아버지였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48.5%, 중소도시 34.9%, 읍면지역 16.7%였다. 응답한 가구의 51.6%는 어머니가 취업을 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2.7%는 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구는 2.2%였다. 가정형태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0.1%가 일반적인 가구였으며, 한부모 가정이 8.3%, 다문화 가정이 1.1%, 재혼 가정이 0.6%였다. 응답한 가구 중 유아가 있는 경우는 62.5%, 영아가 있는 경우는 37.5%였으며, 조사 응답 가구 자녀의 77.5%가 어린이집, 22.5%가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48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37.1%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65~370만원 미만 26.7%, 370~480만원 미만 22.1%, 265만원 미만 14.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0%가 대졸이었으며, 전문대졸이 19.5%, 대학원졸 이상이 14.0% 고졸 이하가 6.5%였다. 보조양육자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34.3%였다.

〈표 IV-1-1〉 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139)	100.0	전체	(1,139)	100.0
응답자			영유아 구분		
어머니	(720)	63.2	영아	(427)	37.5
아버지	(419)	36.8	유아	(712)	62.5
지역규모			재원기관		
대도시	(552)	48.5	어린이집	(883)	77.5
중소도시	(397)	34.9	유치원	(256)	22.5
읍면지역	(190)	16.7	가구소득		
모 취업여부			265만원 미만	(160)	14.0
모 취업	(588)	51.6	265~370만원 미만	(304)	26.7
모 미취업	(486)	42.7	370~480만원 미만	(252)	22.1
해당없음(편부 등)	(65)	5.7	480만원 이상	(423)	37.1
장애 및 질병여부			학력		
있음	(25)	2.2	고졸이하	(74)	6.5
없음	(1,114)	97.8	전문대졸	(222)	19.5
가정 형태			대졸	(683)	60.0
한부모가정	(94)	8.3	대학원졸 이상	(160)	14.0
다문화가정	(12)	1.1	보조양육자 유무		
재혼가정	(7)	0.6	있음	(391)	34.3
해당없음	(1,026)	90.1	없음	(748)	65.7

나.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정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정도는 7점 척도 중 3.8점으로 보통에서 조금 더 심각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은 4.5점, 유치원은 4.2점, 가정은 3.8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에서의 학대 심각성 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부모의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다. 고졸이하가 4.2점으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졸 3.9점, 대졸 3.8점, 대학원졸 이상이 3.5점 순이었다.

영유아에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장소 모두 영아 부모가 유아 부모보다 아동학대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재원기관별로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소에 대한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이 학력이 낮을수록 영유아 대상학대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해당없음의 경우 어머니가 있는 경

우보다 상대적으로 모든 아동학대 장소에 대한 학대 심각성의 인식이 낮았다.

〈표 IV-1-2〉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단위: 점(명)

구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	1.72	4.5	1.58	4.2	1.50	(1,139)
영유아							
영아	3.8	1.74	4.6	1.58	4.4	1.50	(427)
유아	3.7	1.70	4.4	1.58	4.1	1.48	(712)
t	0.72		1.99*		3.92***		
재원 기관							
어린이집	3.8	1.71	4.6	1.56	4.4	1.46	(883)
유치원	3.6	1.72	4.2	1.66	3.7	1.53	(256)
t	-1.72		-2.72**		-5.85***		
지역규모							
대도시	3.8	1.67	4.6	1.54	4.3	1.45	(552)
중소도시	3.7	1.77	4.5	1.61	4.2	1.53	(397)
읍면	3.8	1.70	4.4	1.60	4.2	1.52	(190)
F	0.26		1.06		0.38		
모취업							
취업	3.8	1.71	4.5 ^a	1.58	4.2	1.50	(588)
미취업	3.8	1.71	4.6 ^a	1.54	4.3	1.47	(486)
해당없음(편부 등)	3.2	1.69	3.8 ^b	1.73	3.8	1.66	(65)
F	3.01		5.10**		1.80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3.9	1.70	4.6	1.54	4.4	1.51	(160)
265~370만원 미만	3.9	1.70	4.6	1.54	4.3	1.45	(304)
370~480만원 미만	3.8	1.67	4.4	1.56	4.2	1.48	(252)
480만원 이상	3.7	1.76	4.4	1.64	4.1	1.53	(423)
F	1.23		1.31		0.88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4.2 ^a	1.78	4.7 ^a	1.60	4.5 ^a	1.51	(74)
전문대졸	3.9	1.69	4.6	1.73	4.4	1.64	(222)
대졸	3.8	1.71	4.5	1.54	4.2	1.45	(683)
대학원졸 이상	3.5 ^b	1.71	4.2 ^b	1.50	4.0 ^b	1.44	(160)
F	3.72*		3.32*		3.55*		
보조양육자							
있음	3.8	1.72	4.5	1.58	4.3	1.48	(391)
없음	3.8	1.72	4.5	1.59	4.2	1.51	(748)
t	-0.32		0.46		0.21		

* $p < .05$, ** $p < .01$, *** $p < .001$

주: 1)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냄.

2) Scheffe 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사항을 살펴보면 믿고 맡기지만 학대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비율이 72.4%로 가장 높았으며, 신뢰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다는 비율이 17.2%, 기관에서 학대 당할까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응답이 10.4%이었다.

전반적으로 부모 배경에 따라 경향성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다소 비율의 차이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영유아에서는 기관에서 학대를 당할까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가 영아가 13.1%인데 반해 유아에서는 8.6%였다. 재원기관별로는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의 경우 기관에서 학대당할까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7.3%,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는 11.2%로 나타나 기관 학대에 대한 우려는 어린이집, 영아에게서 더 높았다.

〈표 IV-1-3〉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사항

구분	기관에서 학대 당할까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믿고 맡기지만 학대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음	신뢰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음	계(수)
전체	10.4	72.4	17.2	100.0(1,139)
영유아				
영아	13.1	74.4	12.5	100.0(427)
유아	8.6	71.1	20.3	100.0(712)
$X^2(df)$		13.04(2)**		
재원 기관				
어린이집	11.2	73.0	15.8	100.0(883)
유치원	7.3	70.0	22.7	100.0(256)
$X^2(df)$		7.09(2)*		
지역규모				
대도시	13.2	70.8	16.0	100.0(552)
중소도시	9.6	74.1	16.2	100.0(397)
읍면	6.9	72.1	21.0	100.0(190)
$X^2(df)$		8.44(4)		
모취업 여부				
취업	9.4	71.0	19.5	100.0(588)
미취업	11.3	74.1	14.6	100.0(486)
해당없음(편부 등)	13.0	72.1	14.8	100.0(65)
$X^2(df)$		5.60(4)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8.6	72.7	18.8	100.0(160)
265~370만원 미만	11.3	72.3	16.4	100.0(304)
370~480만원 미만	6.0	77.6	16.4	100.0(252)
480만원 이상	13.2	69.2	17.5	100.0(423)
$X^2(df)$		10.03(6)		

(표 IV-1-3 계속)

구분	기관에서 확대 당할까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믿고 맡기지만 확대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음	신뢰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음	계(수)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7.4	64.7	27.9	100.0(74)
전문대졸	10.1	74.7	15.2	100.0(222)
대졸	10.7	72.3	17.1	100.0(683)
대학원졸 이상	11.3	73.2	15.5	100.0(160)
X ² (df)		6.09(6)		
보조양육자				
있음	10.8	72.9	16.3	100.0(391)
없음	10.2	72.1	17.6	100.0(748)
X ² (df)		0.11(2)		

* $p < .05$, ** $p < .01$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관련 행동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하원 이후 아이 몸을 탐색한다가 7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원 이후 아이표정 살핌 61.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일을 질문 60.8%, 상황에 따라 CCTV 열람 16.1% 순이었다.

하원 이후 아이 몸을 탐색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지역규모별로 읍면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92.7%,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80.2%, 중소도시에서는 64.6%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 부모의 경우에는 79.0%,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69.6%로 차이가 있었으며,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100.0%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구 소득별로 480만원 이상이 84.1%, 265만원 미만 77.0%, 265~370만원 69.9%, 370~480만원 60.6% 순이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100.0%, 전문대졸 82.6%, 대학원 졸 74.5%, 대졸 72.7% 순이었다.

하원 이후 아이표정 살핀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유아 부모는 71.6%로 영아 부모 51.3%에 비해 높았으며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도 69.9%로 나타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보다 비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69.9%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67%, 중소도시 50.4% 순이었다.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은 가구는 68.0%로, 취업을 한 경우인 54.8%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면 265만원 미만 부모가 42.2%로 다른 소득이 많은 가구보다 응답비율이 낮았고, 고졸 이하가 84.1%, 대학원졸 이상 62.7%, 대졸 59.4% 순으로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일을 질문한다는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아 부모가 71.9%로 유아 부모 49.4%에 비해 높았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63.2%,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46.4%로 영유아의 재원 기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의 비율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65.3%, 중소도시 51.3%였다. 가구 소득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265만원 미만과 48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각각 68.8%, 68.9%로 높았으며 265~370만원 55.4%, 370~480만원 35.8%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상황에 따라 CCTV를 열람하는 경우는 영아 부모가 22.4%로 나타나 유아 부모 9.7%에 비해 관련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가 17.2%로,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9.5%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24.5%로 중소도시 11.0% 비해 비율이 높았다.

〈표 IV-1-4〉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관련 행동

구분	하원 이후			상황에 따라 CCTV 열람	단위: %(명) (수)
	아이 몸 탐색	하원 이후 표정 살핌	아이 유치원/어린이집 일을 질문		
전체	76.2	61.3	60.8	16.1	(121)
영유아					
영아	72.9	51.3	71.9	22.4	(57)
유아	79.5	71.6	49.4	9.7	(64)
재원 기관					
어린이집	75.9	59.9	63.2	17.2	(102)
유치원	77.7	69.9	46.4	9.5	(19)
지역규모					
대도시	80.2	67.0	65.3	24.5	(71)
중소도시	64.6	50.4	51.3	11.0	(37)
읍면	92.7	69.9	70.0	-	(13)
모취업					
취업	79.0	54.8	65.2	16.4	(57)
미취업	69.6	68.0	57.8	16.9	(55)
해당없음(편부 등)	100.0	59.6	51.8	9.8	(9)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77.0	42.2	68.8	15.4	(13)
265~370만원 미만	69.9	66.5	55.4	14.4	(34)
370~480만원 미만	60.6	61.6	35.8	13.9	(17)
480만원 이상	84.1	62.9	68.9	18.0	(57)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100.0	84.1	87.2	12.8	(6)
전문대졸	82.6	60.6	62.5	9.1	(22)
대졸	72.7	59.4	57.8	19.1	(75)
대학원졸 이상	74.5	62.7	62.5	14.4	(18)

(표 IV-1-4 계속)

구분	하원 이후 아이 몸 탐색	하원 이후 표정 살핌	아이 유치원/어린이집 일을 질문	상황에 따라 CCTV 열람	(수)
보조양육자					
있음	78.2	64.6	71.0	10.9	(42)
없음	75.1	59.5	55.3	19.0	(79)

주: 중복응답 결과임.

다.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동 유무와 빈도, 지속성에 대한 질문 결과, 신체적 학대에서는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한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리는 행위 26.7%,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11.5%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에서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른 행위가 59.7%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25.7%,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가 21.6% 순이었다.

성학대에서는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가 5.6%로 경험을 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행위 1.2%,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1.0% 순이었다. 방임에서는 아이를 혼자 집 혹은 고립된 장소에 있게 한 행위 3.4%, 술, 약물, 컴퓨터, 핸드폰에 중독되어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있는 행위 1.6%,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은 행위 1.2% 순이었다.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는 경험 비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은 월 1회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대체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에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으나 대체로 지속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행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1-5〉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행동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	빈도				지속성		계(수)
	있음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대체로 지속적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62.7	65.7	18.6	12.2	3.5	4.7	95.3	100.0(711)

(표 IV-1-5 계속)

구분	경험 있음	빈도				지속성		계(수)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대체로 지속적 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 에서만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리는 행위	26.7	59.9	23.7	11.4	4.9	7.9	92.1	100.0(308)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11.5	68.4	17.8	10.0	3.8	8.4	91.6	100.0(130)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외의 곳을 때린 행위	7.8	61.0	27.2	4.9	6.9	11.6	88.4	100.0(90)
아이를 잡고 흔든 행위	7.4	80.9	15.3	2.0	1.9	6.7	93.3	100.0(85)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린 행위	5.3	81.4	4.7	7.7	6.1	7.7	92.3	100.0(58)
아이를 꼬집은 행위	5.1	69.5	17.6	9.3	3.6	14.8	85.2	100.0(59)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힌 행위	1.2	94.1	-	5.9	-	7.2	92.8	100.0(14)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	0.7	83.8	-	16.2	-	28.3	71.7	100.0(8)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향을 지른 행위	59.7	38.6	22.9	23.9	14.6	25.4	74.6	100.0(687)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25.7	47.9	25.5	18.6	8.0	18.3	81.7	100.0(296)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하는 행위	21.6	63.6	21.9	11.2	3.2	9.8	90.2	100.0(248)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위	10.4	55.6	27.5	10.6	6.3	12.5	87.5	100.0(78)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행위	10.4	71.5	20.6	4.8	3.1	10.5	89.5	100.0(428)
아이에게 애정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행위	1.4	43.5	6.5	17.2	32.8	41.2	58.8	100.0(15)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	5.6	34.3	25.1	21.6	19.0	45.9	54.1	100.0(62)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행위	1.2	54.0	35.8	10.2	-	23.9	76.1	100.0(13)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1.0	55.7	28.8	15.5	-	24.1	75.9	100.0(12)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행위	0.1	100.0	-	-	-	-	100.0	100.0(1)
아이를 혼자 집 혹은 고립된 장소에 있게 한 행위	3.4	71.6	15.8	6.4	6.2	5.3	94.7	100.0(40)
술, 약물, 컴퓨터, 핸드폰에 중독되어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있는 행위	1.6	37.3	27.4	24.9	10.4	37.6	62.4	100.0(19)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행위	1.2	48.8	35.1	8.3	7.8	15.2	84.8	100.0(15)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0.3	34.0	66.0	-	-	-	100.0	100.0(3)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학대 행위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1%가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짜증이 날 때 13.4%, 아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못할 때 9.0%, 기타 7.6%, 내 기분이 우울할 때 7.2%순이었다.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는 유아 부모가 87.6%로 영아 부모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해당없음인 경우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90.7%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해야 할 일이 많아 짜증날 때의 경우는 보조 양육자가 없는 경우가 15.6%로 있는 경우 9.0%보다 높았다. 아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의 경우도 유사하게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는 10.7%였지만 있는 경우 5.7%로 줄어들었다.

〈표 IV-1-6〉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주로 하는 경우 상황

단위: %(명)

구분	내 기분이 우울할 때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	해야 할 일이 짜증이 날 때	아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못할 때	술을 마셨을 때	훈육 하기 위해서	기타 (수)
전체	7.2	84.1	1.6	13.4	9.0	0.5	2.4	7.6 (975)
영유아								
영아	8.9	77.8	0.8	11.0	7.6	1.0	2.5	9.3 (323)
유아	6.3	87.6	2.0	14.7	9.7	0.3	2.4	6.6 (652)
재원 기관								
어린이집	7.0	83.6	1.5	12.8	9.6	0.6	2.3	7.4 (744)
유치원	8.1	85.9	2.1	15.6	6.8	-	3.0	8.1 (231)
지역규모								
대도시	8.1	83.0	1.7	10.6	10.8	0.7	2.6	8.0 (468)
중소도시	6.5	84.1	1.1	13.5	7.2	0.6	2.4	6.9 (339)
읍면	6.8	85.9	2.3	18.1	8.9	-	2.3	8.2 (168)
모취업								
취업	7.3	83.6	1.5	12.3	7.2	1.0	2.1	7.4 (496)
미취업	7.8	83.9	1.9	15.2	11.1	-	3.1	7.9 (429)
해당없음(편부 등)	1.4	90.7	-	8.2	8.3	-	-	6.8 (50)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8.2	81.1	0.8	11.8	10.2	-	3.5	11.7 (142)
265~370만원 미만	9.3	83.9	1.5	17.0	9.7	-	2.7	7.0 (266)
370~480만원 미만	5.3	86.3	1.8	12.1	9.3	0.4	1.9	8.0 (220)
480만원 이상	6.3	84.1	1.9	12.0	7.6	1.2	2.1	6.0 (347)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10.2	85.5	1.1	11.2	11.3	-	1.7	11.5 (73)
전문대졸	3.2	88.0	0.3	14.8	8.9	-	2.0	7.6 (197)
대졸	7.8	82.6	2.1	13.3	8.1	0.5	2.4	7.8 (579)
대학원졸 이상	9.3	83.6	1.8	12.8	12.0	1.6	3.7	4.2 (126)
보조양육자								
있음	6.0	87.0	2.3	9.0	5.7	0.5	2.7	7.4 (334)
없음	7.8	82.6	1.2	15.6	10.7	0.5	2.3	7.7 (641)

주: 중복응답 결과임.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학대 행위 상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가장 많이 하

는 것은 전체 응답자의 78.8%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평상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한다가 55.6%,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한다가 50.4%, 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가 6.1%였다.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은 부모 배경에 따른 차이 없이 모두 77%이상으로 비율이 높았다. 평상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에서는 가구소득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이 265~370만원인 경우에는 62.6%, 4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5.1%, 26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4.4%, 370~480만원인 경우에는 48.5%였다. 응답자 학력별로도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는 62.7%, 전문대졸 57.4%, 대졸 54.2%, 대학원 졸 55.0%로 학력이 낮을수록 평상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한다는 응답에는 유아부모가 54.0%가 응답하여 영아부모 43.8%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에는 가구소득별로 다소 응답 비율의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26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9%, 480만원 이상 6.6%, 370~480만원 5.6%, 265~370만원이 4.3%였다.

모 취업여부가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한다는 비율이 다른 응답자에 비해 낮은 반면,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한 비율이 4.1%로 상대적으로 다른 조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1-7〉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주로 하는 경우 이 상황을 줄이기 위한 노력

구분	단위: %(명)								(수)
	평상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함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함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중독을 예방/치료 하기 위해 노력함	술을 자제하려고 노력함	기타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함/안함	
전체	55.6	50.4	78.8	6.1	0.9	0.9	3.4	1.5	(975)
영유아									
영아	54.8	43.8	76.0	6.6	0.8	0.9	4.2	1.6	(323)
유아	56.0	54.0	80.4	5.8	0.9	0.9	2.9	1.5	(652)
재원 기관									
어린이집	55.0	50.0	78.0	6.2	1.0	0.8	3.6	1.6	(744)
유치원	57.9	51.9	81.9	5.8	0.5	1.1	2.7	1.0	(231)
지역규모									
대도시	55.0	52.0	79.1	6.6	0.6	1.7	2.5	1.3	(468)
중소도시	58.9	49.0	80.1	5.3	1.0	0.6	4.8	1.5	(339)
읍면	50.6	50.0	76.2	6.7	1.2	-	2.4	2.0	(168)
모취업									
취업	52.5	49.6	77.0	5.9	0.6	0.9	4.3	1.4	(496)

(표 IV-1-7 계속)

구분	평상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함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함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증독을 예방/치료 하기 위해 노력함	술을 자제하려고 노력함	기타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함/안함	(수)
미취업	58.9	53.0	81.3	6.7	0.9	0.8	2.7	1.8	(429)
해당없음(편부 등)	57.5	35.4	75.7	2.9	4.1	1.7	-	-	(50)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54.4	50.7	78.5	8.9	3.1	1.1	3.0	3.2	(142)
265~370만원 미만	62.6	47.0	81.9	4.3	0.4	0.7	2.9	1.1	(266)
370~480만원 미만	48.5	51.5	77.3	5.6	0.8	0.3	4.0	1.0	(220)
480만원 이상	55.1	52.2	77.5	6.6	0.3	1.3	3.5	1.3	(347)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62.7	53.0	83.4	7.7	1.6	2.2	4.6	5.0	(73)
전문대졸	57.4	48.9	81.2	4.4	1.3	0.6	2.8	0.7	(197)
대졸	54.2	49.5	77.3	6.3	0.5	0.7	3.4	1.3	(579)
대학원졸 이상	55.0	55.2	79.4	7.4	1.5	1.6	3.4	1.8	(126)
보조양육자									
있음	51.7	50.2	77.2	3.7	0.6	1.4	3.0	1.2	(334)
없음	57.5	50.5	79.6	7.3	1.0	0.7	3.5	1.7	(641)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해당 기관의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5%가 제출했다고 응답하여 50%미만이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 37.1%, 제출하지 않았다는 응답 20.4%였다.

보호자 동의서 제출 여부 질문에는 영유아, 재원기관,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에 따라 각 응답비율이 차이가 있었다. 유아 부모의 경우에는 제출했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았으나 영아 부모의 경우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0.9%로 가장 높았다. 재원 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61.9%였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37.6%로 비율이 낮았다. 지역규모 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제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5%, 중소도시는 43.5%, 대도시는 38.2%였으며, 읍면지역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28.4%로 중소도시 40.0% 대도시 38.8%에 비하여 낮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모가 취업한 경우에는 제출 43.7%, 모름 33.6%, 제출하지 않음 22.7% 순이었으나, 모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름 42.0%, 제출 40.2%, 제출하지 않음 17.8% 순이었다. 모 취업이 해당 없는 경우에는 제출 49.1%, 제출하지 않음 19.6%, 모름 31.3% 순이었다.

〈표 IV-1-8〉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해당 기관의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여부

구분	단위: %(명)			
	예	아니오	모르겠음	계(수)
전체	42.5	20.4	37.1	100.0(1,139)
영유아				
영아	36.8	22.3	40.9	100.0(427)
유아	46.4	19.1	34.5	100.0(712)
X ² (df)		10.14(2)**		
제원 기관				
어린이집	37.6	23.5	38.9	100.0(883)
유치원	61.9	8.3	29.8	100.0(256)
X ² (df)		53.8(2)***		
지역규모				
대도시	38.2	23.0	38.8	100.0(552)
중소도시	43.5	16.5	40.0	100.0(397)
읍면	48.5	23.1	28.4	100.0(190)
X ² (df)		13.68(4)**		
모취업 여부				
취업	43.7	22.7	33.6	100.0(588)
미취업	40.2	17.8	42.0	100.0(486)
해당없음(편부 등)	49.1	19.6	31.3	100.0(65)
X ² (df)		9.56(4)*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42.5	24.9	32.6	100.0(160)
265~370만원 미만	39.1	18.0	42.9	100.0(304)
370~480만원 미만	41.5	20.8	37.8	100.0(252)
480만원 이상	45.6	20.1	34.2	100.0(423)
X ² (df)		11.01(6)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45.5	21.7	32.8	100.0(74)
전문대졸	45.9	21.1	33.0	100.0(222)
대졸	41.1	19.8	39.1	100.0(683)
대학원졸 이상	41.9	21.6	36.6	100.0(160)
X ² (df)		3.66(6)		
보조양육자				
있음	44.4	19.1	36.5	100.0(391)
없음	41.5	21.1	37.4	100.0(748)
X ² (df)		1.23(2)		

* $p < .05$, ** $p < .01$, *** $p < .00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학대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지 여부와 각 행동의 학대 인식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신체학대의 모든 행

동이 4점 척도에 평균 3.8점 이상으로 나와 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목격된 비율은 영유아의 머리카락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이 6.6%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정서적 학대 중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이 3.9점,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이 3.8로 학대 인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 여부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이 18.4%로 가장 높았다.

성 학대에서는 모든 행동의 학대 인식이 평균 3.9점 이상으로 나타나 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가 영유아에게 또래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은 4.0점으로 확실하게 성학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학대 관련 행동은 목격 비율은 0.9~1.6%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낮았다.

방임 행동 중 학대인식 중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두는 행동이 평균 3.6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나머지 행동은 학대 인식이 3.4점이하였다. 방임은 정서적 학대와 더불어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목격 비율이 높았다. 가장 높은 목격 비율을 보인 행동은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으로 14.1%의 부모가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에 대한 인식 및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지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학대 인식					평균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음	계(수)
	전혀 학대가 아님	별로 학대가 아닌 것 같음	대체로 학대인 것 같음	확실한 학대임	평균			
영유아의 머리카락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혼드는 행동	0.1	0.8	6.8	92.4	3.9	4.4	100.0(1,139)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0.1	0.4	5.5	94.0	3.9	4.3	100.0(1,139)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0.2	0.8	5.5	93.5	3.9	3.9	100.0(1,139)	
영유아의 머리카락이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	0.2	1.9	19.6	78.3	3.8	6.6	100.0(1,139)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	0.1	0.6	10.2	89.2	3.9	7.0	100.0(1,139)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	-	2.5	19.3	78.2	3.8	8.0	100.0(1,139)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0.2	5.2	38.1	56.5	3.5	18.4	100.0(1,139)	

(표 IV-1-9 계속)

구분	학대 인식					목적 하거나 들은 적 있음	계(수)
	전혀 학대가 아님	별로 학대가 아닌 것 같음	대체로 학대인 것 같음	확실한 학대임	평균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고의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	0.4	10.8	41.0	47.8	3.4	10.5	100.0(1,139)
교사가 영유아에게 포레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	0.1	0.7	3.0	96.1	4.0	0.9	100.0(1,139)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	0.2	0.8	5.3	93.8	3.9	1.6	100.0(1,139)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	0.4	0.3	3.1	96.1	3.9	1.4	100.0(1,139)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그냥 두는 행동	0.1	5.1	31.6	63.3	3.6	11.5	100.0(1,139)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0.4	6.9	40.5	52.3	3.4	14.1	100.0(1,139)
특정 공간에 장시간(10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행동	0.6	11.4	48.4	39.7	3.3	9.8	100.0(1,139)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주지 않는 행동	0.4	11.6	53.3	34.7	3.2	11.9	100.0(1,139)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인식도가 높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학대의심 행위의 대상 아동에 대한 질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아동에 대한 목격 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내 자녀 20.8%, 둘 다 해당하는 비율은 17.9%였다. 배경에 따라서는 영유아별로 유일하게 목격 비율의 차이가 있었다. 내 자녀에 대한 비율은 영아와 유아 각각 20.9%, 20.7%로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아동에 대해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영아의 경우에는 67.8%로 57.6%인 유아에 비해 높았다. 또한 둘 다 해당한다가 유아의 경우에는 21.6%, 영아의 경우에는 11.3%였다.

〈표 IV-1-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학대 의심 행위의 대상 아동

구분	단위: %(명)			계(수)
	내 자녀	다른 아동	둘 다 해당	
전체	20.8	61.3	17.9	100.0(390)
영유아				
영아	20.9	67.8	11.3	100.0(126)
유아	20.7	57.6	21.6	100.0(264)
$\chi^2(df)$		6.95(2)*		

(표 IV-1-10 계속)

구분	내 자녀	다른 아동	둘 다 해당	계(수)
재원 기관				
어린이집	20.7	63.5	15.8	100.0(287)
유치원	21.0	54.2	24.8	100.0(103)
$X^2(df)$		4.67(2)		
지역규모				
대도시	21.0	59.9	19.1	100.0(184)
중소도시	22.3	64.4	13.3	100.0(130)
읍면	18.1	58.6	23.3	100.0(76)
$X^2(df)$		3.47(4)		
모취업				
취업	24.8	59.0	16.2	100.0(185)
미취업	15.8	64.1	20.1	100.0(178)
해당없음(편부 등)	25.9	58.7	15.4	100.0(27)
$X^2(df)$		5.69(4)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18.6	66.7	14.7	100.0(51)
265~370만원 미만	12.6	66.2	21.2	100.0(115)
370~480만원 미만	21.1	63.4	15.4	100.0(76)
480만원 이상	28.0	54.3	17.7	100.0(148)
$X^2(df)$		9.69(6)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33.8	47.6	18.6	100.0(18)
전문대졸	10.2	68.4	21.4	100.0(70)
대졸	22.2	59.5	18.3	100.0(242)
대학원졸 이상	24.7	63.6	11.7	100.0(60)
$X^2(df)$		7.02(6)		
보조양육자				
있음	27.3	53.7	19.0	100.0(128)
없음	17.6	65.0	17.4	100.0(262)
$X^2(df)$		6.07(2)*		

* $p < .0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28.6%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내 자녀나 피해아동 위로 28.5%,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 27.6%,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한다가 16.3%,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가 8.0%, 기타 4.9%,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다가 4.3% 순이었다.

배경별로 살펴보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영아 부모,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읍면지역인 경우, 취업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370~480만원인 경우, 고졸 이하의 경우,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읍면 지역인 경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265~370만원인 경우,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에 내 자녀나 피해 아동을 위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도시인 경우와, 모 취업여부가 해당없음인 경우, 응답자 학력이 고졸 이하의 경우에는 가해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는 대학원 졸업 이상이 16.4%로 다른 배경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사항

단위: %(명)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 이나 센터에 신고함	가해 교사나 원장에 게 항의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 게 도움을 청함	피해아 동의 부모에 게 알림	언론사 나 온라인 사이트 에 글을 게시함	전문기 관에 법률적 인 조언을 구함	내 자녀/피 해아동 을 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수)
전체	8.0	27.6	16.3	15.7	4.3	3.3	28.5	28.6	4.9	(390)
영유아 구분										
영아	10.5	27.2	16.0	19.0	5.8	5.9	27.0	29.4	2.6	(126)
유아	6.6	27.8	16.4	13.8	3.5	1.8	29.4	28.1	6.2	(264)
재원 기관										
어린이집	8.3	29.1	16.3	15.3	4.5	3.4	29.8	27.5	3.7	(287)
유치원	7.3	22.6	16.2	16.9	3.8	2.7	24.4	32.3	8.8	(103)
지역규모										
대도시	6.5	32.8	15.4	15.7	3.9	2.9	29.4	29.2	4.6	(184)
중소도시	11.2	24.8	20.7	14.7	4.6	3.9	25.5	25.9	7.4	(130)
읍면	5.4	23.9	10.7	17.3	4.5	2.9	32.0	31.9	1.4	(76)
모취업 여부										
취업	9.5	26.4	19.3	18.8	6.1	3.8	25.4	25.6	4.3	(185)
미취업	6.3	27.1	13.3	14.3	2.3	1.7	32.0	31.2	5.8	(178)
해당없음(편부 등)	9.5	38.6	14.6	3.1	4.7	9.7	27.2	31.8	2.8	(27)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8.5	24.5	15.7	11.1	5.0	-	29.6	28.8	3.7	(51)
265~370만원 미만	7.6	22.6	19.7	11.7	2.4	4.6	32.2	31.1	3.1	(115)
370~480만원 미만	6.8	21.0	15.6	16.6	5.5	3.6	26.8	32.1	3.5	(76)
480만원 이상	8.8	36.0	14.1	20.1	5.0	3.2	26.1	24.7	7.5	(148)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4.1	39.4	19.9	17.0	-	-	15.5	33.1	10.3	(18)
전문대졸	9.5	21.0	12.6	18.5	4.7	2.9	29.7	30.8	3.4	(70)
대졸	5.8	29.5	17.1	15.3	5.6	4.4	28.9	26.6	6.2	(242)
대학원졸 이상	16.4	24.7	16.3	13.1	-	-	29.2	32.5	-	(60)

(표 IV-1-11 계속)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 이나 센터에 신고함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피해아 동의 부모에게 알림	언론사 나 온라인 사이트 에 글을 게시함	전문기 관에 법률적 인 조언을 구함	내 자녀/피 해아동 을 위로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수)
보조양육자 여부										
있음	8.8	25.7	12.7	17.5	5.2	3.5	33.2	30.6	2.2	(128)
없음	7.7	28.5	18.0	14.8	3.9	3.1	26.3	27.6	6.2	(262)

주: 중복응답 결과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의 1순위는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가 48.1%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15.6%, 기타 15.3%, 해당 교사의 보복이나 비난 등 해당 아동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10.8%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가 32.4%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가 16.6%, 보육이나 교육은 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가 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보육/교육은 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해당 교사의 보복이나 비난 등 해당 아동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 를 알지 못해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1순위	48.1	1.7	10.8	2.3	1.1	15.6	15.3	100.0(112)
2순위	16.6	14.3	9.3	9.9	8.8	32.4	6.6	100.0(1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내 자녀가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1순위로는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가 55.7%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해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한다가 25.4%, 내 자녀 위로가 13.6%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한다가 35.0%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가 33.8%,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한다가 1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내 자녀 학대를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단위: %(명)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전문 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내 자녀 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계(수)
1순위	55.7	25.4	2.8	0.8	1.2	13.6	0.1	0.3	100.0(749)
2순위	33.8	35.0	4.2	7.3	11.6	7.9	-	0.2	100.0(60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의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1순위로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알린다가 51.2%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가 29.2%,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한다가 11.9% 순이었다. 2순위로는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가 34.3%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알린다가 24.1%,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한다가 1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단위: %(명)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알림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전문 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피해아동을 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수)
1순위	29.2	11.9	4.0	51.2	0.5	0.2	2.8	0.1	-	100.0(749)
2순위	34.3	18.9	9.3	24.1	5.9	3.0	3.9	-	0.4	100.0(748)

아동학대 관련 생각 동의정도에 대한 질문 결과, ‘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 ‘사람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한다는 동의 정도가 4점 척도에서 2.6점으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과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2.4점으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부모의 배경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의 경우 영아의 부모가 유아보다 높았다. 특히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있는 경우보다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체벌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5〉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단위: 점(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
전체	2.6	2.4	2.6	2.6	2.4	2.2	2.3	2.3	(1,139)
영유아									
영아	2.6	2.5	2.6	2.6	2.3	2.2	2.3	2.3	(427)
유아	2.6	2.4	2.6	2.6	2.4	2.2	2.3	2.3	(712)
t	0.70	3.46**	-0.33	-0.73	-0.62	-0.26	-0.69	-0.09	
재원 기관									
어린이집	2.6	2.5	2.6	2.6	2.3	2.1	2.3	2.3	(883)
유치원	2.6	2.4	2.7	2.6	2.4	2.2	2.3	2.3	(256)
t	0.28	-0.66	0.96	1.23	1.68	1.03	-0.44	-0.90	
지역규모									
대도시	2.6	2.5	2.6	2.6	2.4	2.2	2.3	2.3	(552)
중소도시	2.6	2.5	2.6	2.6	2.3	2.2	2.3	2.3	(397)
읍면	2.6	2.4	2.6	2.5	2.3	2.1	2.2	2.2	(190)
F	0.19	0.80	0.26	1.28	1.10	0.61	0.97	2.91	
모취업 여부									
취업	2.6	2.4 ^a	2.6 ^a	2.6 ^a	2.3 ^a	2.2 ^a	2.3 ^a	2.3 ^a	(588)
미취업	2.5 ^a	2.4 ^a	2.6 ^a	2.6 ^a	2.3 ^a	2.1 ^a	2.3 ^a	2.2 ^a	(486)
해당없음(편부 등)	2.8 ^b	2.7 ^b	3.0 ^b	2.9 ^b	2.7 ^b	2.6 ^b	2.6 ^b	2.5 ^b	(65)
F	3.52*	5.74**	9.29***	8.25***	7.08**	11.19***	6.80**	4.79**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2.5	2.4	2.6	2.6	2.4	2.1	2.2	2.2	(160)
265-370만원 미만	2.6	2.4	2.7	2.6	2.4	2.2	2.3	2.3	(304)
370-480만원 미만	2.6	2.4	2.6	2.6	2.3	2.1	2.2	2.3	(252)
480만원 이상	2.6	2.5	2.6	2.6	2.3	2.2	2.3	2.3	(423)
F	0.17	2.18	0.81	0.83	0.82	1.49	1.64	0.48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2.6	2.5	2.7	2.8	2.4	2.2	2.2	2.2	(74)
전문대졸	2.6	2.5	2.6	2.5	2.4	2.1	2.3	2.3	(222)
대졸	2.6	2.4	2.6	2.6	2.3	2.2	2.3	2.3	(683)
대학원졸 이상	2.5	2.5	2.6	2.5	2.3	2.1	2.2	2.2	(160)
F	1.24	0.54	0.21	1.74	0.27	0.28	0.71	0.40	
보조양육자 여부									
있음	2.5	2.5	2.7	2.6	2.4	2.2	2.2	2.3	(391)
없음	2.6	2.4	2.6	2.6	2.3	2.2	2.3	2.3	(748)
t	-1.22	0.26	1.29	1.47	0.64	-0.12	-0.86	-0.60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①'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 ②'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③'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④'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⑤'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⑥'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⑦'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 ⑧'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
-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
- 3) Scheffe 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라. 아동학대 관련 교육 정도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질문 결과, TV 등 언론을 통해서 얻는다가 9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77.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26.1%, 관련 책 17.7%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배경별로 유아 부모인 경우,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읍면지역인 경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가구소득이 370~480만원인 경우, 전문대졸인 경우, 보조 양육자가 없는 경우가 TV 등 언론 통해서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 높았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부모교육의 경우는 가구소득이 제일 많은 480만원 이상에서 30.1%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관련 책으로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480만원 이상에서 21.9%로 다른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1-16〉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정보 획득 경로

구분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92.4	77.9	17.7	26.1	5.7	2.7	3.5	4.3	5.4	2.3	1.9	(1,139)
영유아												
영아	89.9	73.7	19.0	21.0	6.9	3.2	4.4	5.6	4.8	2.0	3.1	(427)
유아	94.0	80.8	16.9	29.6	4.8	2.4	2.9	3.5	5.8	2.4	1.1	(712)
재원 기관												
어린이집	91.7	77.3	18.8	25.6	6.1	2.8	4.1	4.9	5.0	2.3	2.0	(883)
유치원	94.8	80.5	13.6	28.4	4.1	2.4	1.1	1.9	7.0	2.2	1.5	(256)
지역규모												
대도시	90.5	75.6	18.4	24.1	6.9	2.9	3.5	4.7	5.6	3.2	2.4	(552)
중소도시	92.9	79.1	17.9	25.0	5.4	2.8	3.1	3.1	3.4	2.3	1.3	(397)
읍면	94.7	79.9	16.1	32.0	3.8	2.2	4.2	5.9	8.6	0.5	2.1	(190)
모취업												
취업	92.9	77.4	19.1	29.0	6.5	3.7	4.7	4.5	6.6	2.0	1.8	(588)
미취업	91.8	79.2	16.3	22.8	3.8	0.9	1.7	3.0	3.6	2.8	2.1	(486)
해당없음(편부 등)	91.8	73.3	16.4	25.0	11.8	7.7	5.0	12.6	7.5	-	1.3	(65)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93.2	79.4	14.5	27.7	2.6	1.3	1.4	5.2	5.3	3.7	1.6	(160)
265~370만원 미만	90.3	75.0	14.9	22.4	4.8	1.2	1.5	3.3	5.8	1.7	3.6	(304)
370~480만원 미만	96.3	77.4	16.4	23.1	7.3	3.7	5.4	5.5	4.4	3.6	1.3	(252)
480만원 이상	91.2	79.8	21.9	30.1	6.6	3.8	4.6	4.0	5.7	1.3	1.2	(423)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91.5	73.4	10.9	38.0	4.4	0.9	-	2.5	1.5	3.6	5.4	(74)
전문대졸	94.6	76.9	12.0	21.9	2.8	1.0	2.4	4.5	4.2	1.3	2.8	(222)
대졸	91.9	78.5	20.0	26.8	6.8	3.7	4.2	4.9	6.4	2.2	1.4	(683)
대학원졸 이상	91.4	79.0	19.4	24.1	5.7	1.8	3.6	2.4	4.7	3.1	1.3	(160)

(표 IV-1-16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보조양육자												
있음	91.5	79.4	18.2	29.2	6.1	3.1	3.6	4.8	6.6	2.5	1.6	(391)
없음	92.8	77.2	17.5	24.6	5.4	2.5	3.4	4.1	4.7	2.2	2.0	(748)

주: 1) ① TV 등 언론, ② 인터넷, ③ 관련 책, ④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⑤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⑥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 ⑦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부모교육, ⑧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모교육, ⑨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부모교육, ⑩ 기타, ⑪ 특별한 관련 정보나 지식을 얻은 적이 없음

2) 중복응답 결과임.

육아기간 중 받은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횟수에 대한 질문 결과 1회가 58.2%, 2회가 18.9%, 4회 이상 16.4%, 3회 6.5% 순이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인 경우, 응답자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4회 이상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가 해당 없는 경우에는 4회 이상 부모교육을 받은 횟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표 IV-1-17〉 육아기간 중 받은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횟수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단위: %(명) 계(수)
전체	58.2	18.9	6.5	16.4	100.0(363)
영유아					
영아	64.4	15.2	5.6	14.7	100.0(120)
유아	54.7	21.0	7.0	17.3	100.0(243)
$X^2(df)$			3.11(3)		
재원 기관					
어린이집	59.8	20.3	6.2	13.7	100.0(278)
유치원	52.2	13.5	7.8	26.5	100.0(85)
$X^2(df)$			6.29(3)		
지역규모					
대도시	55.2	20.4	8.0	16.3	100.0(173)
중소도시	57.6	19.7	6.7	16.0	100.0(117)
읍면	63.4	15.6	4.0	17.1	100.0(73)
$X^2(df)$			2.75(6)		
모취업 여부					
취업	54.4	19.9	6.4	19.3	100.0(201)
미취업	65.0	15.2	5.7	14.1	100.0(140)
해당없음(편부 등)	51.2	32.5	12.7	3.7	100.0(22)
$X^2(df)$			na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69.6	14.9	4.7	10.8	100.0(54)

(표 IV-1-17 계속)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265~370만원 미만	55.8	18.0	3.3	22.8	100.0(86)
370~480만원 미만	58.0	25.2	5.8	11.1	100.0(77)
480만원 이상	55.2	17.8	9.5	17.5	100.0(146)
$X^2(df)$	12.11(9)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69.1	18.5	2.6	9.9	100.0(29)
전문대졸	56.9	20.6	7.0	15.5	100.0(59)
대졸	59.1	19.5	5.8	15.7	100.0(226)
대학원졸 이상	49.0	14.2	11.8	25.0	100.0(49)
$X^2(df)$	na				
보조양육자 여부					
있음	57.1	19.0	6.3	17.6	100.0(133)
없음	58.8	18.9	6.6	15.7	100.0(230)
$X^2(df)$	0.01(3)				

주: na는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아동학대 교육 1회당 교육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 1시간 미만이 49.5%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2시간이 45.3%, 2-3시간이 3.9%, 3시간 이상이 1.3%였다. 전체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대도시에 보내는 경우, 가구소득이 480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대졸인 경우는 1회당 1~2시간 강의에 참석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V-1-18〉 1회당 평균 교육시간

구분	단위: %(명)				계(수)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전체	49.5	45.3	3.9	1.3	100.0(363)
영유아					
영아	45.6	45.7	6.7	2.0	100.0(120)
유아	51.6	45.1	2.4	0.9	100.0(243)
제원 기관					
어린이집	50.5	43.9	4.3	1.3	100.0(278)
유치원	45.6	50.7	2.4	1.3	100.0(85)
지역규모					
대도시	44.9	49.2	4.1	1.8	100.0(173)
중소도시	51.9	43.8	3.6	0.8	100.0(117)
읍면	52.7	41.8	4.2	1.3	100.0(73)
모취업					
취업	49.1	45.2	4.7	1.0	100.0(201)
미취업	54.8	41.7	2.1	1.4	100.0(140)

(표 IV-1-18 계속)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계(수)
해당없음(편부 등)	20.9	68.0	7.4	3.7	100.0(22)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57.0	36.7	4.8	1.5	100.0(54)
265~370만원 미만	52.8	44.0	1.2	1.9	100.0(86)
370~480만원 미만	49.4	44.9	4.0	1.6	100.0(77)
480만원 이상	44.5	49.7	5.1	0.7	100.0(146)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62.6	37.4	-	-	100.0(29)
전문대졸	43.9	51.5	4.6	-	100.0(59)
대졸	49.6	44.5	3.8	2.1	100.0(226)
대학원졸 이상	48.0	46.1	5.9	0.0	100.0(49)
보조양육자					
있음	50.6	43.4	5.5	0.6	100.0(133)
없음	48.8	46.4	3.0	1.7	100.0(230)

주: 모든 구분에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χ^2 검정이 부적절함.

수강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 효과 정도에 대한 질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57.6%, 큰 효과가 있었음 25.0%, 별 다른 효과가 없었음 13.0%, 잘 모르겠음 3.5%, 전혀 효과가 없었음 0.9% 순이었다. 큰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의 합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대상은 영아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대도시인 경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와 해당없음인 경우, 가구소득이 480만원 이상인 경우, 대졸인 경우,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경우였다.

〈표 IV-1-19〉 수강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의 효과 정도

구분	큰 효과가 있었음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음	별 다른 효과가 없었음	전혀 효과가 없었음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25.0	57.6	13.0	0.9	3.5	100.0(363)
영유아						
영아	26.3	62.3	8.9	1.0	1.6	100.0(120)
유아	24.2	55.0	15.4	0.9	4.5	100.0(243)
재원 기관						
어린이집	26.2	57.9	12.4	0.7	2.8	100.0(278)
유치원	20.4	56.6	15.4	1.6	6.0	100.0(85)
지역규모						
대도시	23.8	61.6	12.4	0.6	1.7	100.0(173)
중소도시	24.0	55.0	14.1	0.9	5.9	100.0(117)
읍면	28.0	55.6	12.4	1.3	2.7	100.0(73)

단위: %(명)

(표 IV-1-19 계속)

구분	큰 효과가 있었음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음	별 다른 효과가 없었음	전혀 효과가 없었음	잘 모르겠음	계(수)
모취업 여부						
취업	29.2	56.8	11.5	0.6	1.9	100.0(201)
미취업	19.1	55.5	17.5	1.5	6.4	100.0(140)
해당없음(편부 등)	22.0	78.0	-	-	-	100.0(22)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20.8	59.9	12.9	2.1	4.3	100.0(54)
265~370만원 미만	23.2	59.3	12.9	1.0	3.6	100.0(86)
370~480만원 미만	31.8	44.1	19.9	-	4.2	100.0(77)
480만원 이상	24.1	62.7	9.6	0.9	2.7	100.0(146)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20.2	53.3	17.6	4.2	4.7	100.0(29)
전문대졸	24.5	49.4	20.5	-	5.5	100.0(59)
대졸	26.5	59.3	10.6	0.4	3.2	100.0(226)
대학원졸 이상	21.0	62.7	12.1	2.6	1.5	100.0(49)
보조양육자 여부						
있음	26.5	56.9	13.8	1.6	1.2	100.0(133)
없음	24.1	58.0	12.6	0.5	4.8	100.0(230)

주: 모든 구분에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X² 검정이 부적절함.

영유아 학대 관련 부모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의 1순위 는 영유아 기질에 따른 행동 특성이 18.8%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영유아 발달특성 29.7%, 아동인권 11.7%, 부모됨의 가치 10.1%, 영유아 양육방법이 10.0%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영유아 기질에 따른 행동특성이 21.6%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영유아 양육방법 15.6%, 화를 다루는 법 11.2% 순이었다. 3순위로는 영유아 양육방법 13.7%, 화를 다루는 법 11.9%, 피해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 11.5% 순이었다.

〈표 IV-1-20〉 영유아 학대 관련 부모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단위: %(명), N=1,139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계
1순위	18.8	29.7	11.7	10.1	10.0	2.9	5.1	4.1	2.5	3.3	0.4	0.8	0.4	0.1	100.0
2순위	6.7	21.6	6.7	9.0	15.6	6.7	11.2	7.1	4.9	7.1	1.2	1.4	0.7	0.1	100.0
3순위	5.5	9.9	6.2	8.0	13.7	6.4	11.9	9.1	11.5	9.6	2.8	2.1	3.4	-	100.0

주: ①영유아 발달 특성, ②영유아 기질에 따른 행동 특성, ③아동 인권, ④부모됨의 가치, ⑤ 영유아 양육방법, ⑥부모 우울증 해소 방법, ⑦화를 다루는 법, ⑧부부 및 가족 관계, ⑨ 피해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 ⑩아동학대의 영향 및 결과, ⑪아동학대 지원 기관 관련 정보 소개, ⑫아동학대 관련 법률, ⑬아동학대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 ⑭기타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 결과, 소집단 강의 및 강연이 40.9%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1 개별 교육 34.0%, 집단토론 8.0%,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를 통한 교육이 6.1%, 아동학대 예방 관련 책자 제공 4.6%, 대집단 강의 및 강연이 4.0% 순이었다. 전체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가구소득이 265-370만원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1:1 개별 교육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V-1-21〉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단위: %(명)

구분	대집단 강의 및 강연	소집단 강의 및 강연	1:1 개별 교육	집단 토론	온라인 교육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를 통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 관련 책자 제공	계(수)
전체	4.0	40.9	34.0	8.0	2.3	6.1	4.6	100.0(1,139)
영유아								
영아	4.7	37.3	36.8	8.1	2.8	5.2	5.1	100.0(427)
유아	3.6	43.4	32.0	8.0	2.0	6.7	4.3	100.0(712)
$X^2(df)$				7.82(6)				
재원 기관								
어린이집	4.1	39.9	35.1	8.7	2.3	5.6	4.3	100.0(883)
유치원	3.8	45.1	29.4	5.3	2.5	8.1	5.7	100.0(256)
$X^2(df)$				8.34(6)				
지역규모								
대도시	4.2	38.6	35.8	8.9	2.3	5.7	4.5	100.0(552)
중소도시	3.2	40.5	36.0	7.7	1.5	7.0	4.0	100.0(397)
읍면	5.2	45.9	26.6	7.1	4.1	5.0	6.0	100.0(190)
$X^2(df)$				14.34(12)				
모취업 여부								
취업	4.9	40.4	32.9	7.8	3.0	6.2	4.7	100.0(588)
미취업	3.6	43.3	33.3	7.6	1.6	5.8	4.7	100.0(486)
해당없음(편부 등)	-	27.4	48.2	13.0	1.5	6.8	3.1	100.0(65)
$X^2(df)$				15.24(12)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4.3	39.6	35.5	9.6	2.9	4.9	3.3	100.0(160)
265~370만원 미만	3.5	37.1	38.3	9.0	2.0	6.1	3.9	100.0(304)
370~480만원 미만	4.6	42.6	33.5	5.6	3.1	6.3	4.4	100.0(252)
480만원 이상	4.0	43.2	30.4	8.2	1.9	6.5	5.8	100.0(423)
$X^2(df)$				15.01(18)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7.9	33.6	40.5	4.6	2.5	5.8	5.0	100.0(74)
전문대졸	2.8	39.7	36.6	7.9	2.6	5.9	4.5	100.0(222)
대졸	3.9	42.2	33.0	8.7	1.9	6.3	4.0	100.0(683)
대학원졸 이상	4.8	40.5	31.3	7.0	3.9	5.5	7.0	100.0(160)
$X^2(df)$				14.00(18)				

(표 IV-1-21 계속)

구분	대집단 강의 및 강연	소집단 강의 및 강연	1:1 개별 교육	집단 토론	온라인 교육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를 통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책자 제공	계(수)
보조양육자 여부								
있음	4.6	40.3	35.9	7.7	2.6	4.8	4.2	100.0(391)
없음	3.8	41.3	33.0	8.2	2.2	6.8	4.8	100.0(748)
$\chi^2(df)$	2.40(6)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상담센터 전문가가 38.0%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 30.4%, 심리학전공 교수가 16.5%, 유아교육이나 보육 전공 교수 6.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 4.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 3.4%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가구소득이 265만원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를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2〉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

단위: %(명)

구분	유아교육이나 보육과 교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	심리학전공 교수	상담센터 전문가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기타	계(수)
전체	6.7	3.4	4.7	16.5	38.0	0.3	30.4	0.1	100.0(1,139)
영유아									
영아	6.5	4.0	6.8	17.3	35.6	0.2	29.3	0.3	100.0(427)
유아	6.8	2.9	3.2	16.0	39.6	0.3	31.1	-	100.0(712)
재원 기관									
어린이집	6.1	3.3	5.2	16.9	38.4	0.2	29.6	0.2	100.0(883)
유치원	9.0	3.4	2.5	14.9	36.5	0.3	33.4	-	100.0(256)
지역규모									
대도시	8.1	3.0	6.0	15.5	37.4	0.4	29.6	-	100.0(552)
중소도시	6.0	3.8	4.6	16.8	38.9	-	29.9	-	100.0(397)
읍면	5.5	3.0	2.3	17.9	37.4	0.6	32.7	0.6	100.0(190)
모취업									
취업	6.1	3.3	4.0	17.4	38.7	0.1	30.3	-	100.0(588)
미취업	7.1	2.8	3.9	16.2	38.8	0.5	30.5	0.3	100.0(486)
해당없음(편부 등)	9.3	8.0	16.5	10.9	25.5	-	29.8	-	100.0(65)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5.9	2.3	6.8	18.9	32.2	1.3	32.5	-	100.0(160)
265~370만원 미만	6.5	3.0	3.5	16.1	40.6	-	29.9	0.5	100.0(304)
370~480만원 미만	4.2	1.1	4.6	15.6	42.9	-	31.7	-	100.0(252)
480만원 이상	8.7	5.4	4.7	16.4	35.5	0.2	29.1	-	100.0(423)

(표 IV-1-22 계속)

구분	유아교육이나 보육과 교수	유치원 이나 어린이 집 원장	유치원 이나 어린이 집 교사	심리학 전공 교수	상담 센터 전문가	관련 공무원	아동보 호전문 기관 담당자	기타	계(수)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3.5	3.2	7.1	18.0	45.5	-	22.7	-	100.0(74)
전문대졸	5.1	1.9	5.3	21.2	35.4	-	31.1	-	100.0(222)
대졸	7.2	3.8	4.5	15.0	38.6	0.4	30.5	-	100.0(683)
대학원졸 이상	8.5	3.7	3.2	15.7	35.7	-	32.4	0.9	100.0(160)
보조양육자									
있음	7.5	3.5	4.5	15.9	35.7	0.3	32.6	-	100.0(391)
없음	6.3	3.3	4.8	16.8	39.1	0.2	29.3	0.2	100.0(748)

주: 모든 구분에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χ^2 검정이 부적절함.

마.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의 1순위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41.7%로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27.7%, 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16.0%, 영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이해부족 6% 순이었다. 2순위로는 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이 26.3%로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문제 19.9%, 영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 이해부족 14.3% 순이었다. 3순위로는 학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부족이 17.9%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이해부족 15.0%, 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문제 1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N=1,139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1순위	41.7	1.5	27.7	16.0	6.0	4.3	1.1	0.8	0.7	0.2	100.0
2순위	13.6	3.0	26.3	19.9	14.3	13.3	3.6	3.8	2.2	-	100.0
3순위	14.3	3.5	11.6	14.4	15.0	17.9	5.9	11.5	5.5	0.4	100.0

주: ①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②원장이나 교사들 간의 갈등, ③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④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⑤영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 ⑥학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⑦아동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⑧기관 차원의 관리 및 모니터링 부족, ⑨정책적 지원의 부족, ⑩기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는 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가 28.7%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

이나 어린이집 인력 확충 22.7%, 교사 처우개선 13.3%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 부모의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영아 부모의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 27.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사양성과정 강화가 24.1%인 반면, 유아의 경우에는 교사양성과정 강화가 31.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 19.3%로 차이를 보였다.

〈표 IV-1-2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계(수)
전체	22.7	28.7	13.3	4.3	4.5	0.7	7.6	2.0	7.6	1.3	2.5	0.7	3.8	0.2	100.0(1,139)
영아	27.7	24.1	14.0	5.4	3.5	0.4	6.7	3.1	8.9	1.1	1.9	0.4	3.0	-	100.0(427)
유아	19.3	31.9	12.8	3.6	5.2	1.0	8.2	1.3	6.8	1.5	2.9	0.9	4.3	0.3	100.0(712)
$\chi^2(df)$	28.93(13)**														

** $p < .01$

주: ①유치원/어린이집 인력 확충, ②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③교사 처우 개선, ④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⑤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실시, ⑥신고의무제 강화, ⑦기관 내 CCTV 설치, ⑧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⑨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⑩학대 원장 및 학대 교사 명단 공개, ⑪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⑫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평가 및 상담, ⑬교사의 인·적성 검사 강화, ⑭기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2~3순위에 대한 질문결과 2순위에서는 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이 15.6%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 처우개선 13.8%, 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13.2%였다. 3순위를 살펴보면, 학대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강화가 14.1%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관련 상담 강화 12.0%, 교사 처우개선 9.6% 순이었다.

〈표 IV-1-2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2~3순위

단위: %(명), N=1,139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계
2순위	9.7	15.6	13.8	5.1	8.5	2.8	7.8	4.9	13.2	5.4	7.9	2.0	3.1	0.2	100.0
3순위	7.9	6.6	9.6	4.6	6.7	3.1	9.5	6.6	14.1	7.1	12.0	4.7	7.5	0.1	100.0

주: ①유치원/어린이집 인력 확충, ②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③교사 처우 개선, ④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⑤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실시, ⑥신고의무제 강화, ⑦기관 내 CCTV 설치, ⑧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⑨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⑩학대 원장 및 학대 교사 명단 공개, ⑪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⑫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평가 및 상담, ⑬교사의 인·적성 검사 강화, ⑭기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에 대한 질문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부 및 가족 갈등 15.4%,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8.8%,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 8.4% 순이었다. 영아와 유아 부모에 따라, 자녀의 재원 기관에 따라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 1순위에 대한 응답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영아 부모의 경우는 양육스트레스가 47.7%, 부부 및 가족 갈등이 13.7%,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9.6%이었으나, 유아 부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39.1%, 부부 및 가족 갈등이 16.5%,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이 10.0% 순이었다. 양육스트레스와 부부 및 가족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하였지만 영아 부모는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에 대해, 유아 부모는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문제에 대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원기관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발생 원인으로 양육스트레스와 부부 및 가족갈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동일하였지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는 훈육과 학대에 대한 무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IV-1-26〉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

구분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42.6	7.0	15.4	8.8	1.7	3.5	8.4	6.5	5.4	0.6	0.1	100.0(1,139)
영유아												
영아	47.7	7.9	13.7	9.6	1.6	2.8	6.0	5.4	4.4	0.8	0.2	100.0(427)
유아	39.1	6.4	16.5	8.2	1.8	3.9	10.0	7.3	6.1	0.5	-	100.0(712)
$X^2(df)$	21.04(10)*											
재원 기관												
어린이집	44.5	7.5	15.4	8.4	1.4	3.2	8.2	5.8	4.8	0.8	0.1	100.0(883)
유치원	35.2	5.2	15.5	10.4	2.8	4.6	9.1	9.3	7.9	-	-	100.0(256)
$X^2(df)$	21.51(10)*											

* $p < .05$

주: ①양육스트레스, ②사회·경제적 스트레스, ③부부 및 가족갈등, ④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⑤중독(술, 도박, 게임 등) 문제, ⑥자녀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⑦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 ⑧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 ⑨부모 역할에 대한 무지, ⑩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⑪기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2순위의 응답으로는 부부 및 가족 갈등이라는 응답비율이 1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16.4%, 양육 지식 및 기술의 부족 13.8% 순이었다. 3순위로는 양육지

식 및 기술의 부족이라는 응답비율이 1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부부 및 가족갈등 15.6%, 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 13.0% 순이었다.

〈표 IV-1-27〉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2~3순위

단위: %(명), N=1,139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2순위	12.7	16.4	18.2	10.2	2.4	5.6	13.8	13.1	5.6	2.0	-	100.0
3순위	10.4	9.9	15.6	10.8	2.0	6.3	16.0	13.0	10.9	5.1	0.1	100.0

주: ①양육스트레스, ②사회·경제적 스트레스, ③부부 및 가족갈등, ④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⑤중독(술, 도박, 게임 등) 문제, ⑥자녀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⑦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 ⑧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 ⑨부모 역할에 대한 무지, ⑩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⑪기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에 대한 질문 결과, 양육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 25.9%,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홍보 16.4%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양육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지원 응답비율은 가구소득이 265~370만원 미만인 경우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 응답비율은 370~480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 문제(가족 갈등 등)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응답비율은 370만원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었지만 모 취업여부에서 해당없음인 경우 상대적으로 기타 문제(가족 갈등 등)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28〉 가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25.9	16.4	41.5	8.8	4.4	2.7	0.3	100.0(1,139)
영유아								
영아	26.6	13.8	42.4	9.8	3.7	3.2	0.4	100.0(427)
유아	25.4	18.2	40.9	8.2	4.8	2.3	0.2	100.0(712)
$X^2(df)$				7.22(6)				
재원 기관								
어린이집	25.1	16.9	41.4	9.4	4.2	2.6	0.3	100.0(883)
유치원	29.2	14.6	41.8	6.5	4.9	3.0	-	100.0(256)
$X^2(df)$				6.22(6)				
지역규모								
대도시	25.6	17.0	41.3	8.2	5.4	2.1	0.4	100.0(552)

(표 IV-1-28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중소도시	25.5	14.6	43.9	8.8	3.7	3.2	0.3	100.0(397)
읍면	27.2	18.7	37.4	10.1	3.7	2.8	-	100.0(190)
$X^2(df)$	7.07(12)							
모취업								
취업	28.2	17.1	37.0	9.0	5.5	3.0	0.3	100.0(588)
미취업	24.2	15.6	46.9	7.4	3.4	2.1	0.2	100.0(486)
해당없음(편부 등)	18.1	16.3	41.7	17.8	1.8	4.2	-	100.0(65)
$X^2(df)$	na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28.8	15.3	39.6	12.3	2.1	2.0	-	100.0(160)
265-370만원 미만	19.2	12.8	50.7	10.2	5.6	1.4	-	100.0(304)
370-480만원 미만	35.3	16.1	37.9	5.6	2.6	2.1	0.5	100.0(252)
480만원 이상	24.1	19.7	37.7	8.3	5.5	4.3	0.4	100.0(423)
$X^2(df)$	42.60(18)***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33.2	10.9	45.1	5.9	4.8	-	-	100.0(74)
전문대졸	22.8	17.3	45.4	8.1	3.9	2.2	0.4	100.0(222)
대졸	27.1	16.4	40.7	8.4	4.5	2.6	0.3	100.0(683)
대학원졸 이상	22.2	17.8	37.5	13.1	4.4	5.0	-	100.0(160)
$X^2(df)$	na							
보조양육자								
있음	30.3	15.4	37.7	9.2	3.6	3.7	0.2	100.0(391)
없음	23.7	16.9	43.5	8.7	4.8	2.2	0.3	100.0(748)
$X^2(df)$	8.22(6)							

*** $p < .001$

주: 1) ①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 ②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홍보, ③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④기타 문제(가족 갈등 등)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⑤아동학대 관련 법규 홍보, ⑥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⑦기타
2) na는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28.3%, 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16.6%, 신고 시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14.3% 순이었다. 통계적 검증은 할 수 없었으나 수치상으로 모 취업여부에서 해당없음인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아서, 모가 미취업일 경우와 응답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소득이 265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 시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서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1-29〉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1.8	28.3	4.3	14.3	34.2	16.6	0.5	100.0(1,139)
영유아								
영아	2.5	28.4	5.3	13.4	31.9	17.7	0.8	100.0(427)
유아	1.4	28.3	3.6	14.9	35.7	15.9	0.3	100.0(712)
X ² (df)	8.02(6)							
재원 기관								
어린이집	1.9	28.8	4.5	13.8	33.2	17.1	0.6	100.0(883)
유치원	1.4	26.3	3.3	16.1	37.9	15.0	-	100.0(256)
X ² (df)	na							
지역규모								
대도시	2.0	28.1	4.2	15.6	33.3	16.1	0.8	100.0(552)
중소도시	2.4	28.8	5.2	11.7	35.8	15.6	0.5	100.0(397)
읍면	0.5	27.9	2.7	16.7	32.6	19.6	-	100.0(190)
X ² (df)	9.81(12)							
모취업								
취업	1.6	29.4	3.3	14.5	37.1	13.5	0.5	100.0(588)
미취업	1.7	27.1	4.8	14.4	30.8	20.8	0.4	100.0(486)
해당없음(편부 등)	4.8	27.7	9.0	10.6	32.5	14.0	1.5	100.0(65)
X ² (df)	na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2.2	25.0	3.7	24.2	25.3	18.9	0.6	100.0(160)
265~370만원 미만	1.8	29.8	4.6	10.0	35.0	18.8	-	100.0(304)
370~480만원 미만	0.6	24.9	4.1	11.7	40.4	17.9	0.4	100.0(252)
480만원 이상	2.5	30.7	4.4	14.9	33.4	13.4	0.9	100.0(423)
X ² (df)	na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	22.8	3.5	11.6	31.1	29.6	1.5	100.0(74)
전문대졸	1.1	22.3	1.9	16.6	32.9	24.4	0.8	100.0(222)
대졸	2.2	28.8	5.2	14.4	35.1	14.0	0.3	100.0(683)
대학원졸 이상	2.3	37.5	4.1	11.6	33.3	10.5	0.7	100.0(160)
X ² (df)	na							
보조양육자								
있음	2.4	30.4	3.4	15.5	34.2	13.7	0.5	100.0(391)
없음	1.6	27.3	4.7	13.7	34.1	18.1	0.5	100.0(748)
X ² (df)	5.42(6)							

주: 1) ①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아서, ②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③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서, ④신고 시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⑤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⑥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⑦기타

2) na는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바.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한 질문 결과, 아동학대 발생 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 4점 척도 중 2.5점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정도가 2.3점 이었고,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2.2점 순이었다. 반면 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1.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유치원원장이나 어린이집원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로 기준에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지정도가 모두 1.9점으로 그 다음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배경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아동학대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한 인지정도는 영아 부모의 인지정도가 더 높았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2일 이상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해야한다는 읍면지역 거주 부모의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모 취업여부가 해당없음인 경우에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IV-1-30〉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구분	단위: 점(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2.1	2.5	1.9	1.7	2.1	1.9	2.3	2.2	2.1	2.2	2.2	(1,139)
영유아												
영아	2.2	2.5	1.9	1.8	2.1	1.9	2.3	2.2	2.2	2.2	2.2	(427)
유아	2.1	2.4	1.8	1.7	2.1	1.8	2.3	2.2	2.1	2.2	2.2	(712)
t	1.03	0.49	1.13	2.37	0.45	1.93	0.60	1.34	0.99	0.50	-0.55	
재원 기관												
어린이집	2.1	2.4	1.8	1.7	2.1	1.8	2.3	2.2	2.1	2.2	2.2	(883)
유치원	2.2	2.5	1.9	1.7	2.1	1.9	2.3	2.3	2.2	2.3	2.5	(256)
t	1.27	1.09	0.83	0.26	0.66	0.14	0.30	0.81	1.26	1.59	4.98	
지역규모												
대도시	2.1	2.5	1.9	1.7	2.1	1.9	2.2	2.2	2.1	2.1	2.2	(552)
중소도시	2.2	2.4	1.8	1.7	2.0	1.9	2.3	2.2	2.1	2.2	2.2	(397)
읍면	2.1	2.5	1.9	1.7	2.2	1.8	2.4	2.3	2.2	2.3	2.4	(190)
F	0.21	0.04	0.24	0.66	2.04	0.05	1.53	1.09	1.90	3.22	3.32	

(표 IV-1-30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모취업 여부												
취업	2.1	2.5	1.9	1.7 ^a	2.1	1.9	2.3	2.2	2.2	2.2	2.2	(588)
미취업	2.1	2.4	1.8 ^a	1.6 ^a	2.1	1.8 ^a	2.2	2.2	2.1	2.1	2.2	(486)
해당없음(편부 등)	2.3	2.5	2.1 ^b	2.1 ^b	2.3	2.1 ^b	2.4	2.3	2.2	2.3	2.3	(65)
F	1.20	0.12	5.70**	9.05***	1.76	4.45*	0.77	1.16	1.35	1.58	0.38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2.1	2.4	1.8	1.7	2.1	1.8	2.2	2.3	2.1	2.2	2.3	(160)
265~370만원 미만	2.1	2.5	1.8	1.7	2.1	1.8	2.2	2.1	2.1	2.2	2.2	(304)
370~480만원 미만	2.2	2.4	1.8	1.6	2.0	1.8	2.3	2.2	2.1	2.3	2.2	(252)
480만원 이상	2.2	2.5	1.9	1.8	2.2	1.9	2.3	2.3	2.2	2.2	2.2	(423)
F	2.20	0.20	1.41	2.31	1.12	0.38	1.19	1.72	1.08	0.64	0.57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1.9	2.5	1.6 ^a	1.4 ^a	2.0	1.6 ^a	2.2	2.1	1.9	1.9	2.2	(74)
전문대졸	2.0	2.4	1.7 ^a	1.6 ^a	2.0	1.7 ^a	2.1	2.1	2.0	2.1	2.3	(222)
대졸	2.2	2.5	1.9 ^b	1.8 ^b	2.1	1.9 ^b	2.3	2.2	2.2	2.2	2.2	(683)
대학원졸 이상	2.2	2.5	2.0 ^b	1.8	2.1	1.9	2.3	2.2	2.1	2.3	2.2	(160)
F	3.49*	0.29	7.17**	5.40**	1.36	6.47**	2.29	1.03	2.96*	2.73*	0.15	
보조양육자 여부												
있음	2.1	2.5	1.9	1.7	2.1	1.9	2.3	2.2	2.1	2.2	2.2	(391)
없음	2.2	2.4	1.8	1.7	2.1	1.8	2.3	2.2	2.1	2.2	2.3	(748)
t	-1.21	0.52	0.16	-0.27	-1.04	-0.07	-0.28	-1.42	-0.66	-0.38	-1.14	

* $p < .05$, ** $p < .01$, *** $p < .001$

주: 1) ①유아 대상 체벌을 금지함, ②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유치원을 폐쇄함, ③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④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⑤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취업을 제한함, ⑥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로 기존에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됨, ⑦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음, ⑧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함, ⑨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⑩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⑪2일 이상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함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정도가 높음.

아동학대 발생 시 현재 신고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5.2%에 불과하였으며, 모르는 경우가 93.7%로 대부분이었고, 과거 번호로 알고 있는 경우가 1.1%였다. 통계적인 검증을 할 수는 없었으나 수치상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가구소득이 265~37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학 졸업인 경우가 지금 번호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모 취업여부가 해당없음인 경우에 지금 번호로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이 15.2%로 다른 집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1-31〉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구분	지금 번호로		과거 번호로		계(수)
	정확히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전체		5.2		1.1	93.7
영유아					100.0(1,139)
영아		6.1		1.5	92.4
유아		4.6		0.9	94.5
X ² (df)				1.93(2)	
재원 기관					
어린이집		5.4		1.1	93.5
유치원		4.3		1.3	94.3
X ² (df)				0.89(2)	
지역규모					
대도시		3.4		1.4	95.3
중소도시		5.9		0.9	93.2
읍면		7.5		1.2	91.3
X ² (df)				na	
모취업 여부					
취업		5.6		1.2	93.2
미취업		3.3		1.0	95.7
해당없음(편부 등)		15.2		1.5	83.3
X ² (df)				na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1.8		1.2	97.0
265~370만원 미만		6.5		1.3	92.2
370~480만원 미만		5.6		0.8	93.6
480만원 이상		5.3		1.4	93.3
X ² (df)				na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		-	100.0
전문대졸		3.9		-	96.1
대졸		6.8		1.6	91.6
대학원졸 이상		2.5		1.9	95.6
X ² (df)				na	
보조양육자					
있음		5.2		1.6	93.2
없음		5.2		1.1	93.8
X ² (df)				0.58(2)	

주: na는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4점

척도 중 평균 2.6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는 것과 신고 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모두 2.5점으로 높았다. 반면 학대행위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 배경과 상관없이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과 가능한 증거사진을 확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아 부모가 인식 정도가 높았는데, 읍면 지역에서는 이 2가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내용에 대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인지 정도가 높았다.

〈표 IV-1-32〉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

구분								단위: 점(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2.1	2.4	2.4	2.5	2.3	2.6	2.5	(1,139)
영유아								
영아	2.2	2.5	2.4	2.5	2.2	2.6	2.5	(427)
유아	2.1	2.4	2.5	2.5	2.3	2.6	2.5	(712)
t	2.70**	2.20*	-0.46	-0.09	-0.65	-0.21	0.78	
재원 기관								
어린이집	2.1	2.5	2.4	2.5	2.2	2.6	2.5	(883)
유치원	2.1	2.4	2.5	2.5	2.4	2.6	2.5	(256)
t	0.05	-0.65	0.61	0.80	1.72	0.89	0.60	
지역규모								
대도시	2.1	2.4	2.4 ^a	2.4 ^a	2.2 ^a	2.5 ^a	2.4 ^a	(552)
중소도시	2.1	2.5	2.4 ^a	2.5	2.2	2.6	2.5 ^a	(397)
읍면	2.2	2.5	2.6 ^b	2.6 ^b	2.4 ^b	2.7 ^b	2.7 ^b	(190)
F	1.85	2.34	4.13 [†]	3.48 [†]	3.50 [†]	4.17 [†]	4.93 ^{**}	
모취업								
취업	2.2	2.5	2.5	2.5	2.3	2.6	2.5	(588)
미취업	2.1	2.4	2.4	2.5	2.3	2.5	2.5	(486)
해당없음	2.2	2.6	2.6	2.3	2.2	2.5	2.5	(65)
F	2.32	3.73 [*]	3.79 [*]	1.19	0.08	0.51	0.67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2.1	2.5	2.5	2.7	2.3	2.6	2.6	(160)
265~370만원 미만	2.1	2.5	2.5	2.4	2.2	2.5	2.5	(304)
370~480만원 미만	2.1	2.4	2.4	2.4	2.2	2.6	2.4	(252)
480만원 이상	2.2	2.5	2.5	2.5	2.3	2.6	2.5	(423)
F	0.50	0.52	0.66	3.55 [†]	0.51	0.23	0.58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2.2	2.6	2.5	2.7	2.3	2.6	2.5	(74)

(표 IV-1-32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문대졸	2.1	2.5	2.4	2.4	2.2	2.6	2.5	(222)
대졸	2.1	2.4	2.4	2.5	2.3	2.6	2.5	(683)
대학원졸 이상	2.1	2.4	2.4	2.4	2.3	2.6	2.6	(160)
F	0.26	1.23	0.21	1.89	0.69	0.37	1.42	
보조양육자								
있음	2.1	2.4	2.4	2.4	2.2	2.5	2.5	(391)
없음	2.1	2.5	2.5	2.5	2.3	2.6	2.5	(748)
t	-0.33	-1.79	-1.46	-1.59	-1.32	-1.39	-0.27	

* $p < .05$, ** $p < .01$

- 주: 1) ①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②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함, ③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④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⑤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⑥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⑦신고 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함
-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
- 3) Scheffe 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에 대한 질문 결과,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과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90.6%로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CCTV설치하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인 응답 비율의 경향성은 유사하였으나 부모 배경에 따라 영아 부모인 경우,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IV-1-3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 설치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도움이 될 것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도움이 안 될 것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평균	계(수)
전체	24.3	66.3	8.5	0.9	3.1	100.0(1,139)
영유아						
영아	28.2	61.9	8.9	1.0	3.2	100.0(427)
유아	21.6	69.3	8.2	0.9	3.1	100.0(712)
$X^2(df)/t$		7.95(3)*			1.64	
재원 기관						
어린이집	25.0	65.1	9.1	0.8	3.1	100.0(883)
유치원	21.2	71.3	6.3	1.2	3.1	100.0(256)
$X^2(df)/F$		3.45(3)			-0.12	

(표 IV-1-33 계속)

구분	매우 도움이 될 것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도움이 안 될 것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평균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25.4	65.5	8.5	0.6	3.2	100.0(552)
중소도시	24.8	65.4	8.1	1.7	3.1	100.0(397)
읍면	21.1	69.5	9.4	0.0	3.1	100.0(190)
$X^2(df)/F$	na				0.41	
모취업 여부						
취업	24.3	66.0	8.7	0.9	3.1	100.0(588)
미취업	23.4	67.9	8.2	0.4	3.1	100.0(486)
해당없음(편부 등)	29.7	57.1	8.8	4.4	3.1	100.0(65)
$X^2(df)/F$	14.73(6)*				0.03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19.0	68.2	10.0	2.9	3.0	100.0(160)
265~370만원 미만	21.6	68.4	9.7	0.3	3.1	100.0(304)
370~480만원 미만	24.0	66.7	9.4	0.0	3.1	100.0(252)
480만원 이상	28.5	63.9	6.5	1.1	3.2	100.0(423)
$X^2(df)/F$	na				3.63*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21.5	62.4	14.7	1.5	3.0	100.0(74)
전문대졸	22.0	67.7	9.4	0.9	3.1	100.0(222)
대졸	24.6	66.8	7.4	1.1	3.2	100.0(683)
대학원졸 이상	27.1	64.1	8.8	0.0	3.2	100.0(160)
$X^2(df)/F$	8.40(9)				1.53	
보조양육자 여부						
있음	28.5	61.8	7.8	1.9	3.2	100.0(391)
없음	22.1	68.6	8.8	0.4	3.1	100.0(748)
$X^2(df)/F$	11.94(3)**				1.13	

* $p < .05$, ** $p < .01$

주: 1)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

2) na는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 결과,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CCTV를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 31.9%,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녹화내용이 지워져서 제대로 확인 못하므로 11.6%, CCTV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 5.7% 순이었다.

전반적인 경향성은 부모 배경과 상관없이 유사하였지만,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은 유아 부모인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370~480만원인 경우,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응답 경향과는 다르게, 모 취업여부가 해당없음인 경우, 가구소득이 265만원 미만인 경우, 학력이 전문대졸인 경우에는 실제로 CCTV를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34〉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CCTV를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녹화내용이 지워져서 제대로 확인 못하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기타	계(수)
전체	47.5	31.9	11.6	5.7	3.3	100.0(106)
영유아						
영아	40.9	36.8	10.1	6.9	5.3	100.0(42)
유아	52.4	28.3	12.6	4.8	1.8	100.0(64)
재원 기관						
어린이집	45.7	36.8	8.8	6.0	2.7	100.0(87)
유치원	56.9	6.6	25.8	4.1	6.6	100.0(19)
지역규모						
대도시	42.8	31.6	19.5	6.1	-	100.0(50)
중소도시	53.4	28.0	5.0	8.2	5.4	100.0(38)
읍면	44.3	40.3	10.4	-	5.0	100.0(18)
모취업						
취업	49.0	34.7	10.3	4.0	2.0	100.0(56)
미취업	49.7	23.8	11.6	9.1	5.7	100.0(42)
해당없음(원부 등)	26.9	53.3	19.8	-	-	100.0(8)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39.0	48.2	8.8	4.0	-	100.0(21)
265~370만원 미만	45.4	19.8	16.1	10.8	7.9	100.0(29)
370~480만원 미만	53.2	39.0	3.2	4.6	-	100.0(24)
480만원 이상	51.2	27.2	15.2	2.8	3.6	100.0(32)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44.4	38.1	10.1	7.3	-	100.0(12)
전문대졸	43.7	45.2	3.1	8.0	-	100.0(23)
대졸	47.0	25.9	15.2	5.8	6.2	100.0(57)
대학원졸 이상	58.8	29.1	12.1	-	-	100.0(14)
보조양육자						
있음	52.6	25.1	16.9	2.3	3.0	100.0(38)
없음	44.8	35.6	8.7	7.5	3.4	100.0(68)

주: 모든 구분에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χ^2 검정이 부적절함.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는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라는 응답비율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은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20.8%,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14.9%, 영유아 학대 위협아동 조기 발견 노력 14.0% 순이었다. 자녀를 보내는 기관에 따라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의 경우 어린이집 부모가 21.6%로 유치원 17.8%에 비해 높았다.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과정 강화의 경우 유치원 부모가 12.4%로 어린이집 부모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1-35〉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20.8	14.0	4.7	4.8	26.5	3.7	14.9	2.3	8.0	0.2	100.0(1,139)
어린이집	21.6	14.0	5.2	5.0	26.9	3.4	14.8	2.2	6.9	-	100.0(883)
유치원	17.8	14.2	2.9	4.1	25.1	4.7	15.4	2.6	12.4	0.8	100.0(256)
$\chi^2(df)$	18.43(9) [*]										

* $p < .05$

주: ①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②영유아 학대 위협아동 조기 발견 노력,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④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⑤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⑥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⑦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⑧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⑨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⑩기타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2-3 순위에 대한 질문 결과, 2순위에서는 영유아 학대 시 처벌강화가 20.8%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17.6%,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과정 강화가 14.3%, 영유아 학대 위협아동 조기발견 노력이 11.9% 순이었다. 3순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이 18.1%로 제일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가 15.4%, 영유아 학대 시 처벌강화가 14.5% 순이었다.

〈표 IV-1-36〉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2~3순위

단위: %(명), N=1,139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2순위	9.2	11.9	6.8	6.8	20.8	5.9	17.6	6.4	14.3	0.3	100.0
3순위	11.6	12.4	5.1	6.9	14.5	5.7	18.1	10.4	15.4	-	100.0

주: ①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②영유아 학대 위협아동 조기 발견 노력,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④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⑤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⑥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⑦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⑧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⑨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⑩기타

2. 영유아 확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가. 조사 대상자의 특성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IV-2-1>과 같다. 기관별로는 유치원 교사 395명, 어린이집 교사 852명이 응답하였고, 담당 영유아별로 영아반 교사 543명, 유아반 교사 70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 학력은 전문대졸과 대졸이 각각 42.6%, 42.8%로 85% 이상이었으며, 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년 이상 28.9%, 2년 이상 5년 미만 23.4% 순이었다.

<표 IV-2-1> 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247)	100.0	전체	(1,247)	100.0
기관 구분			학력		
유치원	(395)	31.7	고졸이하	(78)	6.3
어린이집	(852)	68.3	전문대졸	(531)	42.6
지역규모			대졸	(534)	42.8
대도시	(468)	37.5	대학원졸 이상	(104)	8.3
중소도시	(447)	35.8	연령		
읍면지역	(332)	26.6	29세 이하	(384)	30.8
기관 상세 구분			30-39세	(433)	34.7
국공립단설유치원	(24)	1.9	40세 이상	(430)	34.5
공립병설유치원	(104)	8.3	경력		
사립사인유치원	(242)	19.4	2년 미만	(120)	9.6
사립법인유치원	(25)	2.0	2년 이상 5년 미만	(292)	23.4
국공립어린이집	(144)	11.5	5년 이상 10년 미만	(474)	38.0
민간어린이집	(278)	22.3	10년 이상	(361)	28.9
가정어린이집	(221)	17.7	교사 직위		
직장어린이집	(87)	7.0	유치원 교사	(270)	21.7
법인단체어린이집	(39)	3.1	유치원 부장(주임)교사	(108)	8.7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83)	6.7	유치원 기타	(17)	1.4
소속 기관 규모			어린이집 교사	(550)	44.1
20인 이하	(283)	22.7	어린이집 주임교사	(257)	20.6
21-39인	(157)	12.6	어린이집 기타	(45)	3.6
40-79인	(345)	27.7	담당 영유아 수		
80-99인	(138)	11.1	1-3명	(149)	12.0
100-199인	(254)	20.4	4-6명	(233)	18.7
200인 이상	(70)	5.6	7-10명	(248)	19.9
교사 성별			11-15명	(195)	15.6
남성	(3)	0.2	16-20명	(209)	16.8
여성	(1,244)	99.8	21명 이상	(213)	17.1

(표 IV-2-1 계속)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혼합연령반 여부			교사 자격(최상 자격증)		
단일연령반	(985)	79.0	유치원 정교사 2급	(185)	14.8
혼합연령반	(262)	21.0	유치원 정교사 1급	(187)	15.0
담당 영유아			유치원 원감	(16)	1.3
영아(만0~2세)	(543)	43.5	유치원 원장	(7)	0.6
유아(만3~5세)	(704)	56.5	3급 보육교사	(12)	1.0
			2급 보육교사	(140)	11.2
			1급 보육교사	(478)	38.3
			어린이집 원장	(222)	17.8

나.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정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정도는 7점 척도 중 4.0점으로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은 3.5점, 유치원은 3.2점으로 보통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학대 심각성 정도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의 학대 심각성 정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담당 영유아에 따라서 어린이집 학대의 심각성은 유아담당 교사가, 유치원 학대의 심각성은 영아담당 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유치원에 대한 인식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 교사가 중소도시 교사에 비해 유치원 학대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가정과 유치원의 학대 심각성 정도는 40세 미만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어린이집 학대 심각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교사 학력에 따라서는 유치원에서만 학력이 높아질수록 학대의 심각성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2〉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단위: 점(명)

구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0	1.67	3.5	1.72	3.2	1.56	(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4.0	1.70	3.1	1.67	3.4	1.60	(852)
유치원	3.9	1.59	4.2	1.60	2.8	1.39	(395)
t	-0.77		11.15***		-6.45***		

(표 IV-2-2 계속)

구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담당 영유아							
영아	3.9	1.75	3.0	1.69	3.3	1.62	(543)
유아	4.1	1.60	3.9	1.66	3.1	1.51	(704)
t	-1.27		-8.88***		2.26*		
지역규모							
대도시	4.1	1.65	3.6	1.73	3.3 ^a	1.54	(468)
중소도시	3.9	1.70	3.5	1.72	3.1 ^b	1.52	(447)
읍면	4.0	1.64	3.3	1.72	3.1	1.63	(332)
F	2.05		2.13		3.60*		
교사 연령							
20-29세	4.2 ^a	1.55	4.0 ^a	1.70	3.4 ^a	1.55	(384)
30-39세	4.2 ^a	1.62	3.5 ^b	1.68	3.2 ^a	1.56	(433)
40세 이상	3.7 ^b	1.77	3.0 ^c	1.65	2.9 ^b	1.54	(430)
F	13.19***		36.83***		10.82**		
교사 경력							
2년 미만	3.9	1.61	3.7	1.69	3.1	1.54	(120)
2-5년 미만	4.0	1.59	3.6	1.78	3.2	1.54	(292)
5-10년 미만	4.0	1.70	3.4	1.74	3.2	1.58	(474)
10년 이상	4.0	1.70	3.4	1.67	3.1	1.55	(361)
F	0.09		1.10		1.17		
교사 학력							
고졸 이하	3.9	1.76	2.9 ^a	1.63	3.2 ^a	1.52	(78)
전문대졸	4.1	1.70	3.5 ^b	1.74	3.4 ^a	1.61	(531)
대졸	3.9	1.62	3.5	1.74	3.1 ^b	1.51	(534)
대학원졸 이상	3.8	1.63	3.4	1.63	2.4 ^c	1.33	(104)
F	1.63		2.79*		11.54***		

* $p < .05$, *** $p < .001$

주: 1)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냄.

2) Scheffe 검증 결과로 a, b, c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다.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 중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모든 행동이 4점 척도에 3.2점 이상으로 대체로 학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체학대 중에서는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힌 행위,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가 모두 4.0점으로 확실히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리는 행위나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각각 3.4점, 3.0점으로 상대적으로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았다.

정서학대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위가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향을 지른 행위는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성학대에 있어서는 4가지 행위 모두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3.8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방임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애정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행위 3.2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3.8점 이상으로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다.

〈표 IV-2-3〉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 중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명), 점, N=1,247

구분	전혀 학대가 아님	별로 학대가 아닌 것 같음	대체로 학대인 것 같음	확실한 학대임	평균	계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놓힌 행위	-	-	4.1	95.9	4.0	100.0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	-	-	2.7	97.3	4.0	100.0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린 행위	-	0.2	12.6	87.2	3.9	100.0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외의 곳을 때린 행위	-	0.8	11.6	87.6	3.9	100.0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0.3	4.3	24.0	71.5	3.7	100.0
아이를 꼬집은 행위	0.1	2.3	22.1	75.5	3.7	100.0
아이를 잡고 흔든 행위	0.2	5.3	29.4	65.1	3.6	100.0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리는 행위	0.4	12.3	34.3	52.9	3.4	100.0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2.8	27.6	36.2	33.4	3.0	100.0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위	-	1.0	18.0	81.1	3.8	100.0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0.2	5.1	30.0	64.7	3.6	100.0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	0.1	5.7	34.6	59.6	3.5	100.0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행위	0.2	7.5	43.3	49.0	3.4	100.0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향을 지른 행위	1.0	11.5	44.1	43.5	3.3	100.0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행위	-	0.6	5.0	94.5	3.9	100.0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행위	0.1	0.6	7.3	92.0	3.9	100.0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0.2	1.8	15.7	82.3	3.8	100.0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	0.1	2.2	12.6	85.1	3.8	100.0
술, 약물, 컴퓨터, 핸드폰에 중독되어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있는 행위	0.1	0.1	9.6	90.2	3.9	100.0
아이를 혼자 집 혹은 고립된 장소에 있게 한 행위	0.1	2.1	16.8	81.0	3.8	100.0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행위	0.1	0.6	14.9	84.4	3.8	100.0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1.3	16.9	81.8	3.8	100.0
아이에게 애정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행위	0.8	19.2	39.4	40.7	3.2	100.0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인식이 높음을 나타냄.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게서 신체적·행동적 징후를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서적 학대로 인한 행동적 징후의 목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에 한 징후 중에는 알 수 없는 멍과 매를 맞은 자국이 있는 경우를 목격한 비율이 16.1%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상처로 자주 병원에 가는 경우를 목격한 비율은 0.6%로 가장 낮았다. 신체적 징후에 대한 학대 의심정도는 모두 3.5~3.7점으로 의심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행동적 징후 중에는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래들 간에 소외되어 혼자 서성일 때, 겁이 많고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할 때를 본적이 있는 경우가 각각 49.5%, 45.3%, 43.8%로 매우 높았으며, 학대 의심 정도는 3.0내외로 가끔 의심하는 정도였다.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거나 과도한 수면부족 증세를 보일 경우의 목격 비율은 각각 10.4%, 7.1%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학대의심 정도는 3.1점으로 가끔 의심하는 정도였다. 한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래들 간에 소외되어 혼자 서성일 때, 활동에서 호기심과 탐구심이 없을 때 학대를 의심하는 정도는 모두 2.8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성적학대 의심 징후 중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의 목격 비율이 12.8%로 가장 높았으며, 아픔을 호소하고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와 입천장의 손상이 있을 때의 목격 비율은 각각 2.9%와 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징후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정도는 각각 3.3점, 3.5점, 3.1점으로 아픔을 호소하고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아동학대 의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방임의 의심 징후 중에는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 때를 목격한 비율이 28.2%로 가장 높았으며,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할 때의 목격 비율이 4.4%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징후에 대한 학대 의심 정도는 3.4~3.5점으로 가끔 의심하는 정도였다.

〈표 IV-2-4〉 아동에게서 신체적·행동적 징후 목격 경험 및 아동학대 의심 정도

단위: %(명), 점, N=1,247

구분	본 적 있음	학대 의심 정도				평균	계
		전혀 의심하지 않음	별로 의심하지 않음	가끔 의심함	매우 의심함		
알 수 없는 멍과 매를 맞은 자국이 있을 때	16.1	0.5	1.6	44.9	53.0	3.5	100.0

(표 IV-2-4 계속)

구분	본 적 있음	학대 의심 정도				평균	계
		전혀 의심하지 않음	별로 의심하지 않음	가끔 의심함	매우 의심함		
다쳤거나 상처가 있어도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을 때	9.5	0.5	3.8	37.3	58.5	3.5	100.0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가 있을 때	4.6	0.6	5.9	39.1	54.4	3.5	100.0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있을 때	2.9	0.4	2.2	33.4	63.9	3.6	100.0
몸에 설명되지 않는 화상이나 골절상을 입은 흔적이 있을 때	1.3	0.4	1.4	24.5	73.7	3.7	100.0
신체적 상처로 자주 병원에 갈 때	0.6	0.5	6.9	38.5	54.1	3.5	100.0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때	49.5	1.6	22.5	52.6	23.3	3.0	100.0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또래들 간에 소외되어 혼자 서성일 때	45.3	2.2	31.6	54.3	11.9	2.8	100.0
겉이 많고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할 때	43.8	0.8	15.1	53.5	30.6	3.1	100.0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극단적 행동을 할 때	33.5	0.6	10.3	50.1	38.9	3.3	100.0
활동에서 호기심과 탐구심이 없을 때	31.7	2.6	32.9	46.5	18.0	2.8	100.0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을 때	29.4	1.0	21.0	51.5	26.5	3.0	100.0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순종적일 때	23.5	1.8	22.5	49.6	26.1	3.0	100.0
강박증이나 공포를 보일 때	11.7	0.5	8.1	46.8	44.6	3.4	100.0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할 때	10.4	1.5	19.8	49.5	29.2	3.1	100.0
과도한 수면부족 증세를 보일 때	7.1	1.5	16.5	50.4	31.5	3.1	100.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할 때	12.8	0.8	10.4	44.7	44.0	3.3	100.0
이유 없이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6.8	0.6	8.1	46.4	44.8	3.4	100.0
나이에 맞지 않는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일 때	4.4	0.7	7.4	41.4	50.5	3.4	100.0
신체적으로 접촉을 할 때 갑작 놀랄 때	3.4	0.5	6.8	41.1	51.6	3.4	100.0
아픔을 호소하고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2.9	0.5	5.8	34.9	58.9	3.5	100.0
입천장의 손상이 있을 때	2.6	1.3	21.5	46.4	30.8	3.1	100.0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 때	28.2	0.3	5.5	47.2	47.0	3.4	100.0
날씨나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당한 옷을 지속적으로 입고 다닐 때	17.2	0.3	5.9	46.8	47.0	3.4	100.0
어린이집/유치원이 끝난 후 늦은시간까지 집에서 혼자 있다고 할 때	8.1	0.5	4.2	44.9	50.4	3.5	100.0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을 때	8.0	0.9	5.7	43.9	49.6	3.4	100.0
항상 배고파하고 영양결핍으로 보일 때	6.7	0.6	6.2	40.6	52.7	3.5	100.0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할 때	4.4	0.6	3.8	37.7	58.0	3.5	100.0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인식이 높음을 나타냄.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전체적으로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하는 경우가 8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다른 교사나 원장에서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82.0%, 피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경우가

79.7%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결과로 차이검증을 할 수는 없으나, 배경과 상관없이 대부분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위로 배경에 따라 유치원 교사, 유아 교사, 29세 이하 교사, 대졸 이상 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경우가, 어린이집 교사, 영아 교사, 40세 미만 교사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전체적인 경향과 다르게 경력 2년 미만 교사와 고졸 이하 교사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행한 조치

단위: %(명)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부모와 의 개별 면담	전문 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피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수)
전체	8.0	82.0	86.4	6.8	79.7	0.4	1.5	(910)
소속 기관								
어린이집	8.6	83.3	84.9	7.6	78.6	0.5	1.8	(603)
유치원	6.8	79.5	89.3	5.2	81.8	0.3	1.0	(307)
담당 영유아								
영아	8.2	82.5	83.3	7.9	75.9	0.8	1.6	(365)
유아	7.9	81.7	88.4	6.1	82.2	0.2	1.5	(545)
지역규모								
대도시	7.8	81.4	86.7	7.2	77.4	0.6	1.7	(345)
중소도시	8.0	82.9	87.2	4.3	82.3	0.6	0.9	(327)
읍면	8.4	81.5	84.9	9.7	79.4	0.0	2.1	(238)
교사 연령								
20~29세	5.0	84.9	85.3	3.7	80.6	0.3	1.7	(299)
30~39세	10.4	83.1	89.6	9.2	79.4	0.6	0.9	(326)
40세 이상	8.4	77.5	83.9	7.4	78.9	0.4	2.1	(285)
교사 경력								
2년 미만	5.0	82.5	81.3	2.5	80.0	1.3	2.5	(80)
2~5년 미만	4.6	84.3	85.2	7.4	80.6	-	2.3	(216)
5~10년 미만	8.9	80.1	87.3	5.5	77.6	0.3	1.7	(361)
10년 이상	10.7	82.6	87.7	9.5	81.8	0.8	0.4	(253)
교사 학력								
고졸 이하	12.0	86.0	82.0	18.0	82.0	2.0	2.0	(50)
전문대졸	5.0	83.7	84.4	5.3	76.6	0.3	1.3	(398)
대졸	10.1	80.4	88.6	6.3	82.5	0.5	1.6	(378)
대학원졸 이상	10.7	78.6	88.1	9.5	79.8	-	2.4	(84)

주: 중복응답 결과임.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응답자

는 4사례에 불과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의 1순위는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이고, 2순위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수)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기타	
전체	100.0	75.0	25.0	(4)
소속 기관				
어린이집	100.0	66.7	33.3	(3)
유치원	100.0	100.0	-	(1)
담당 영유아				
영아	100.0	66.7	33.3	(3)
유아	100.0	100.0	-	(1)
지역규모				
대도시	100.0	50.0	50.0	(2)
중소도시	100.0	100.0	-	(2)
교사 연령				
20~29세	100.0	-	100.0	(1)
30~39세	100.0	100.0	-	(2)
40세 이상	100.0	100.0	-	(1)
교사 경력				
2년 미만	100.0	-	100.0	(1)
5~10년 미만	100.0	100.0	-	(1)
10년 이상	100.0	100.0	-	(2)
교사 학력				
고졸 이하	100.0	100.0	-	(1)
전문대졸	100.0	-	100.0	(1)
대졸	100.0	100.0	-	(2)

주: ①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②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을 간섭할 수 없어서, ③해당 부모의 보복이나 비난 등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④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⑤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⑥학대 판정 시 기관이 폐쇄되는 것이 두려워서, ⑦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⑧기타

향후 아동에게서 징후 발견 시 취할 행동의 1순위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응답이 6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찰, 아동학대 신고 기관이나 센터에 신고 14.8%, 부모와의 개별 면담 13.1% 순이었다. 2순위 응답으로는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모와의 개별 면담 29.4%,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

합 17.8% 순이었다.

〈표 IV-2-7〉 향후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취할 행동

단위: %(명)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부모와의 개별 면담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피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핌	기타	(수)
1순위	14.8	66.2	13.1	1.2	4.7	-	(337)
2순위	37.7	17.8	29.4	5.3	9.5	0.3	(337)

주: 중복응답 결과임.

아동이 기관에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비율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아니오 24.3%, 모르겠음 13.6% 순이었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가 87.1%로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보호자 동의서를 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담당 영유아에 따라서 유아담당교사가 영아담당교사보다 동의서를 더 많이 받았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가 65.1%로 동의서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사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29세의 교사들이 동의서를 받을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가장 높았다. 교사경력에 따라서는 2년 미만의 교사들이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2-8〉 아동이 기관에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음	계(수)
전체	62.1	24.3	13.6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50.6	32.6	16.8	100.0(852)
유치원	87.1	6.3	6.6	100.0(395)
$X^2(df)$		155.41(2) ^{***}		
담당 영유아				
영아	49.0	35.2	15.8	100.0(543)
유아	72.3	15.9	11.8	100.0(704)
$X^2(df)$		77.35(2) ^{***}		

(표 IV-2-8 계속)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음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60.9	22.0	17.1	100.0(468)
중소도시	65.1	22.4	12.5	100.0(447)
읍면	59.9	30.1	9.9	100.0(332)
$X^2(df)$		15.21(3)**		
교사 연령				
20~29세	67.7	14.6	17.7	100.0(384)
30~39세	60.7	27.7	11.5	100.0(433)
40세 이상	58.6	29.5	11.9	100.0(430)
$X^2(df)$		31.85(4)***		
교사 경력				
2년 미만	68.3	13.3	18.3	100.0(120)
2~5년 미만	61.3	17.8	20.9	100.0(292)
5~10년 미만	60.8	25.3	13.9	100.0(474)
10년 이상	62.6	31.9	5.5	100.0(361)
$X^2(df)$		51.39(6)**		
교사 학력				
고졸 이하	38.5	39.7	21.8	100.0(78)
전문대졸	60.8	24.7	14.5	100.0(531)
대졸	64.0	23.2	12.7	100.0(534)
대학원졸 이상	76.9	16.3	6.7	100.0(104)
$X^2(df)$		29.90(6)***		

** $p < .01$, *** $p < .001$

이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2.0~2.6점으로 동의하지 않는 쪽에 가까운 점수가 더 많았으며, '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에 동의정도가 가장 높았다. '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고, 유아담당교사가 영아담당교사보다 동의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연령에 따라서는 20~29세 교사가 40세 이상의 교사보다 더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교사경력에 따라서는 2년 미만의 교사들의 동의정도가 가장 낮았다.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지역규모별로 대도시의 교사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고, 교사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의 교사보다 20~29세의 교사들의 동의 정도가 더 낮았고, 교사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의 교사가 고졸이하의 교사보다 동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40세 이상보다 20~29세의 교사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고, 대학원 졸 이상의 교사가 전문대 출신 교사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영아담당교사가 유아담당 교사보다 동의 정도가 낮았고, 교사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이상 교사의 동의 정도가 40세 미만 교사들보다 더 낮았다.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보다 어린이집 교사의 동의 정도가 낮았고, 영아담당교사가 유아담당교사보다 더 낮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에 대해 20~29세의 교사의 동의 정도는 40세 이상 교사보다 더 낮았다.

〈표 IV-2-9〉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구분	단위: 점(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
전체	2.6	2.2	2.3	2.3	2.1	2.0	2.3	2.3	(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2.6	2.2	2.3	2.3	2.1	2.0	2.3	2.3	(852)
유치원	2.5	2.1	2.3	2.4	2.2	2.1	2.3	2.3	(395)
t	-3.39*	-1.27	0.63	1.59	2.35*	1.37	0.29	-0.04	
담당 영유아									
영아	2.7	2.2	2.3	2.3	2.0	2.0	2.3	2.3	(543)
유아	2.5	2.2	2.4	2.4	2.2	2.1	2.3	2.3	(704)
t	2.57*	1.57	-1.87	-2.29*	-2.61**	-1.86	-0.44	0.56	
지역규모									
대도시	2.6	2.1	2.4	2.3	2.1	2.0	2.3	2.3	(468)
중소도시	2.6	2.2	2.3	2.3	2.1	2.0	2.3	2.3	(447)
읍면	2.6	2.2	2.3	2.4	2.2	2.0	2.3	2.3	(332)
F	0.53	3.21*	0.93	0.23	0.67	0.04	0.90	0.01	
교사 연령									
20~29세	2.5 ^a	2.1 ^a	2.4 ^a	2.4 ^a	2.2	2.1	2.3	2.2 ^a	(384)
30~39세	2.6	2.2	2.4 ^a	2.4 ^a	2.1	2.0	2.3	2.3	(433)
40세 이상	2.7 ^b	2.3 ^b	2.2 ^b	2.2 ^b	2.1	2.0	2.3	2.4 ^b	(430)
F	4.19*	8.75***	6.97**	9.15***	2.05	0.70	1.25	3.93*	
교사 경력									
2년 미만	2.4	2.0	2.2	2.3	2.1	2.0	2.1	2.2	(120)
2~5년 미만	2.6	2.1	2.3	2.3	2.1	2.0	2.3	2.3	(292)
5~10년 미만	2.6	2.2	2.4	2.4	2.1	2.1	2.3	2.3	(474)
10년 이상	2.6	2.2	2.3	2.3	2.1	2.0	2.4	2.4	(361)
F	2.70*	2.23	2.45	1.49	0.71	1.00	2.18	1.38	
교사 학력									
고졸 이하	2.7	2.4 ^a	2.2	2.2	2.1	2.0	2.4	2.5	(78)
전문대졸	2.6	2.2	2.4 ^a	2.4	2.1	2.0	2.3	2.3	(531)

(표 IV-2-9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
대졸	2.6	2.1 ^b	2.4	2.3	2.1	2.0	2.3	2.3	(534)
대학원졸 이상	2.5	2.2	2.1 ^b	2.2	2.1	2.1	2.3	2.3	(104)
F	1.60	2.99*	3.90**	2.03	0.21	0.05	0.15	1.71	

* $p < .05$, ** $p < .01$, *** $p < .001$

주: 1) ①'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 ②'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③'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④'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⑤'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⑥'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⑦'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 ⑧'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
 3) Scheffe 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유치원/어린이집 생활시 목격 혹은 본인이 행한 적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신체적 학대 행동 중 영유아의 머리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을 목격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본인이 한 적이 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 행동을 했을 경우 빈도는 월 1회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 행동 중에서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을 목격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본인이 한 적이 있는 행동은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이었다. 본인이 한 적이 있는 경우 두 행동 모두 월 1회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교사의 비율은 2.4%에 불과했지만, 빈도는 월 1회 정도 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성학대 행동과 방임행동에 대한 목격한 비율은 각각 0.2%, 1.8%로 다른 범주의 행동 목격 비율보다 낮았으며, 성 학대 행동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목격 혹은 본인이 행한 적 있는 행동
 단위: %(명)

구분	목격한 적 있음	본인이 한 적 있음	빈도				지속성		계(수)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대체로 지속적 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 에서만	
영유아의 머리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	7.5	0.9	72.7	27.3	-	-	-	100.0	100.0(11)

(표 IV-2-10 계속)

구분	목적 적 있음	본인이 한 적 있음	빈도				지속성		계(수)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대체로 지속적 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 에서만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	1.7	0.1	100.0	-	-	-	-	100.0	100.0(1)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1.3	-	-	-	-	-	-	-	-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0.8	-	-	-	-	-	-	-	-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31.8	17.6	56.8	26.8	11.8	4.5	3.6	96.4	100.0(220)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26.4	19.0	79.7	15.2	4.2	0.8	1.3	98.7	100.0(237)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행동	20.0	9.9	68.5	20.2	9.7	1.6	3.2	96.8	100.0(124)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고의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	19.1	10.2	65.4	22.8	7.9	3.9	3.1	96.9	100.0(127)
특정 공간에 장시간(10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행동	6.8	2.9	83.3	8.3	5.6	2.8	2.8	97.2	100.0(36)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	2.7	0.3	75.0	25.0	-	-	-	100.0	100.0(4)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	2.4	0.6	57.1	42.9	-	-	-	100.0	100.0(7)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	0.2	-	-	-	-	-	-	-	-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	0.2	-	-	-	-	-	-	-	-
교사가 영유아에게 포래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	0.2	-	-	-	-	-	-	-	-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그냥 두는 행동	1.8	0.1	100.0	-	-	-	-	100.0	100.0(1)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에 행한 조치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한 경우가 6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피해아동을 위로하는 경우 47.4%,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하는 경우 26.7% 순이었다. 중 응답답 결과로 차이검증을 할 수는 없으나, 배경에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다만 2년 미만의 교사는 전반적인 경향과 달리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피해아동을 위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행한 조치

단위: %(명)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알림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피해아동을 위로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수)
전체	3.2	26.7	60.2	13.7	0.2	1.8	47.4	10.5	2.0	(561)
소속 기관										
어린이집	3.9	26.2	65.0	12.1	0.3	1.7	48.5	10.2	0.6	(363)
유치원	2.0	27.8	51.5	16.7	0.0	2.0	45.5	11.1	4.5	(198)
담당 영유아										
영아	3.7	23.7	65.3	12.3	-	1.4	48.9	11.0	0.5	(219)
유아	2.9	28.7	57.0	14.6	0.3	2.0	46.5	10.2	2.9	(342)
지역규모										
대도시	2.3	25.8	61.5	12.2	-	1.8	48.9	9.0	2.3	(221)
중소도시	5.2	26.8	58.2	14.9	0.5	1.0	51.5	12.4	1.5	(194)
읍면	2.1	28.1	61.0	14.4	-	2.7	39.7	10.3	2.1	(146)
교사 연령										
20~29세	2.1	22.2	59.3	12.2	-	1.6	50.3	9.5	2.6	(189)
30~39세	3.5	30.7	59.4	14.4	0.5	1.5	42.6	11.9	1.5	(202)
40세 이상	4.1	27.1	62.4	14.7	-	2.4	50.0	10.0	1.8	(170)
교사 경력										
2년 미만	2.6	20.5	51.3	7.7	-	-	53.8	12.8	0.0	(39)
2~5년 미만	3.2	23.0	57.9	10.3	-	0.8	43.7	12.7	4.8	(126)
5~10년 미만	3.1	23.6	62.0	16.2	0.4	3.1	52.4	10.5	0.9	(229)
10년 이상	3.6	35.3	61.7	14.4	-	1.2	41.9	8.4	1.8	(167)
교사 학력										
고졸 이하	2.9	11.8	61.8	14.7	-	-	50.0	17.6	2.9	(34)
전문대졸	3.5	30.5	63.3	14.2	0.4	1.3	48.7	7.5	2.2	(226)
대졸	3.2	26.2	58.1	11.7	-	2.8	45.2	12.9	1.2	(248)
대학원졸 이상	1.9	22.6	56.6	20.8	-	-	50.9	7.5	3.8	(53)

주: 중복응답 결과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목격 혹은 들었을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는 이유가 71.2%로 가장 많았다. 배경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수치상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교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와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비율이, 유치원 교사는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비율이, 읍면지역은 보육이나 교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어린 연령의 교사들이 보육이나 교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였다.

〈표 IV-2-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목격 혹은 들었을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

구분	단위: %(명)					(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71.2	11.9	1.7	5.1	10.2	(59)
소속 기관						
어린이집	67.6	13.5	2.7	8.1	8.1	(37)
유치원	77.3	9.1	-	-	13.6	(22)
담당 영유아						
영아	70.8	12.5	4.2	12.5	-	(24)
유아	71.4	11.4	-	-	17.1	(35)
지역규모						
대도시	65.0	5.0	-	10.0	20.0	(20)
중소도시	75.0	8.3	4.2	4.2	8.3	(24)
읍면	73.3	26.7	-	-	-	(15)
교사 연령						
20~29세	55.6	27.8	-	-	16.7	(18)
30~39세	79.2	4.2	4.2	-	12.5	(24)
40세 이상	76.5	5.9	-	17.6	-	(17)
교사 경력						
2년 미만	40.0	20.0	-	-	40.0	(5)
2~5년 미만	62.5	12.5	-	6.3	18.8	(16)
5~10년 미만	83.3	8.3	-	4.2	4.2	(24)
10년 이상	71.4	14.3	7.1	7.1	-	(14)
교사 학력						
고졸 이하	66.7	-	0.0	33.3	-	(6)
전문대졸	58.8	23.5	5.9	-	11.8	(17)
대졸	75.0	9.4	-	3.1	12.5	(32)
대학원졸 이상	100.0	-	-	-	-	(4)

주: ①개입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②보육/교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③해당 부모의 보복이나 비난 등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④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⑤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⑥피해 영유아 및 부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⑦학대 판정 시 기관이 폐쇄되는 것이 두려워서, ⑧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⑨ 기타

향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취할 행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응답이 8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 71.9%, 가해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하겠다는 응답 57.1% 순이었다. 중복응답 결과로 차이검증을 할 수 없으나, 배경에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실제로 취한 행동보다는 향후에는 신고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표 IV-2-13〉 향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취할 행동

단위: %(명)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 이나 센터에 신고함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피해아 동의 부모에 게 알림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전문기관 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피해아 동을 위로함	기타	(수)
전체	71.9	57.1	87.0	41.3	3.1	29.6	47.4	0.1	(686)
소속 기관									
어린이집	74.6	56.2	86.7	41.1	3.1	28.8	46.8	0.2	(489)
유치원	65.0	59.4	87.8	41.6	3.0	31.5	48.7	-	(197)
담당 영유아									
영아	75.6	56.2	85.8	42.9	3.1	31.2	47.5	0.3	(324)
유아	68.5	58.0	88.1	39.8	3.0	28.2	47.2	-	(362)
지역규모									
대도시	69.2	53.4	88.3	40.1	2.0	28.3	48.2	-	(247)
중소도시	76.3	60.9	85.4	44.7	3.6	30.4	49.4	-	(253)
읍면	69.4	57.0	87.6	38.2	3.8	30.1	43.5	0.5	(186)
교사 연령									
20~29세	65.1	58.5	90.3	41.0	3.1	22.1	53.8	-	(195)
30~39세	74.9	58.9	88.7	41.6	2.2	27.7	44.2	0.4	(231)
40세 이상	74.2	54.6	83.1	41.2	3.8	36.9	45.4	-	(260)
교사 경력									
2년 미만	64.2	48.1	87.7	38.3	2.5	24.7	51.9	-	(81)
2~5년 미만	66.9	58.4	88.0	37.3	2.4	28.3	48.2	0.6	(166)
5~10년 미만	73.9	54.7	85.3	42.4	4.1	26.1	47.8	-	(245)
10년 이상	76.8	62.9	88.1	44.3	2.6	37.1	44.3	-	(194)

주: 중복응답 결과임.

기관에서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하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5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결과로 차이분석을 할 수 없으나, 배경에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2년 미만 경력의 교사와 고졸 이하의 교사는 무언가 해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하는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2-14〉 기관에서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하는 상황

단위: %(명)

구분	내 기분이 우울할 때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	해야 할 일이 짜증이 날 때	무언가 하는데 때문에 아이 해야 할 아이 못할 때	기타	(수)
전체	1.9	59.4	0.5	6.8	9.2	1.9	(411)
소속 기관							
어린이집	1.5	59.3	0.7	7.4	8.5	1.1	(270)
유치원	2.8	59.6	-	5.7	10.6	3.5	(141)
담당 영유아							
영아	1.2	56.7	0.6	7.3	8.5	1.2	(164)
유아	2.4	61.1	0.4	6.5	9.7	2.4	(247)
지역규모							
대도시	1.8	64.2	-	7.9	8.5	0.6	(165)
중소도시	1.4	57.6	0.7	6.5	10.1	1.4	(139)
읍면	2.8	54.2	0.9	5.6	9.3	4.7	(107)
교사 연령							
20~29세	3.5	58.5	0.7	8.5	9.2	2.8	(142)
30~39세	0.7	55.6	-	5.6	8.3	1.4	(144)
40세 이상	1.6	64.8	0.8	6.4	10.4	1.6	(125)
교사 경력							
2년 미만	3.8	38.5	-	7.7	23.1	3.8	(26)
2~5년 미만	2.0	55.6	-	6.1	7.1	4.0	(99)
5~10년 미만	3.0	63.6	1.2	7.9	10.3	1.8	(165)
10년 이상	-	61.2	-	5.8	6.6	-	(121)
교사 학력							
고졸 이하	-	52.4	-	4.8	19.0	4.8	(21)
전문대졸	2.9	62.0	1.2	9.4	8.2	-	(171)
대졸	1.7	57.5	-	5.5	9.4	2.8	(181)
대학원졸 이상	-	60.5	-	2.6	7.9	5.3	(38)

주: 중복응답 결과임.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80.5%로 가장 많았다. 중복응답 결과로 차이분석은 할 수 없으나, 배경에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2년 미만 경력의 교사와 대학원 졸 이상 교사들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9세 교사는 평상 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15〉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단위: %(명)

구분	평상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함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심호흡을 조절함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아이들과 있는 동안은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노력함	기타	(수)
전체	40.9	40.6	80.5	47.0	7.5	(411)
소속 기관						
어린이집	39.6	41.9	80.4	51.9	7.4	(270)
유치원	43.3	38.3	80.9	37.6	7.8	(141)
담당 영유아						
영아	34.1	40.9	76.2	53.0	7.3	(164)
유아	45.3	40.5	83.4	42.9	7.7	(247)
지역규모						
대도시	38.2	40.0	81.2	48.5	6.7	(165)
중소도시	44.6	39.6	81.3	45.3	8.6	(139)
읍면	40.2	43.0	78.5	46.7	7.5	(107)
교사 연령						
20~29세	52.1	40.1	84.5	45.1	9.2	(142)
30~39세	34.0	41.7	80.6	43.1	6.9	(144)
40세 이상	36.0	40.0	76.0	53.6	6.4	(125)
교사 경력						
2년 미만	46.2	34.6	88.5	50.0	7.7	(26)
2~5년 미만	41.4	39.4	78.8	44.4	7.1	(99)
5~10년 미만	44.8	38.8	82.4	49.7	7.9	(165)
10년 이상	33.9	45.5	77.7	44.6	7.4	(121)
교사 학력						
고졸 이하	57.1	57.1	81.0	66.7	9.5	(21)
전문대졸	43.3	38.6	79.5	44.4	5.8	(171)
대졸	37.6	42.0	79.0	49.2	9.4	(181)
대학원졸 이상	36.8	34.2	92.1	36.8	5.3	(38)

주: 중복응답 결과임.

라. 아동학대 관련 교육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교육 수강 여부에 대하여,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8.7%로 대부분이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교육을 받은 비율이 더 높았으며, 담당 영유아에 따라서는 영아담당교사가 유아교사보다 교육 받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6〉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교육 수강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98.7	1.3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99.4	0.6	100.0(852)
유치원	97.2	2.8	100.0(395)
X ² (df)	10.29(1)**		
담당 영유아			
영아	99.4	0.6	100.0(543)
유아	98.2	1.8	100.0(704)
X ² (df)	4.05(1)*		
지역규모			
대도시	99.1	0.9	100.0(468)
중소도시	98.7	1.3	100.0(447)
읍면	98.2	1.8	100.0(332)
X ² (df)	1.41(2)		
교사 연령			
20~29세	98.2	1.8	100.0(384)
30~39세	99.3	0.7	100.0(433)
40세 이상	98.6	1.4	100.0(430)
X ² (df)	2.12(2)		
교사 경력			
2년 미만	97.5	2.5	100.0(120)
2~5년 미만	97.9	2.1	100.0(292)
5~10년 미만	98.7	1.3	100.0(474)
10년 이상	99.7	0.3	100.0(361)
X ² (df)	na		
교사 학력			
고졸 이하	100.0	-	100.0(78)
전문대졸	98.7	1.3	100.0(531)
대졸	98.5	1.5	100.0(534)
대학원졸 이상	99.0	1.0	100.0(104)
X ² (df)	na		

* $p < .05$, ** $p < .01$ 주: na는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교육을 받은 경우 어떤 방식의 교육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을 모두 받은 비율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경력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온라인교육의 여부는 경력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을 모두 받는 비율은 경력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7〉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방식

구분	단위: %(명)			계(수)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 모두 받음	
전체	10.0	29.1	60.9	100.0(1,231)
소속 기관				
어린이집	9.6	29.4	61.0	100.0(847)
유치원	10.9	28.4	60.7	100.0(384)
X ² (df)		0.60(2)		
담당 영유아				
영아	9.8	29.6	60.6	100.0(540)
유아	10.1	28.7	61.2	100.0(691)
X ² (df)		0.15(2)		
지역규모				
대도시	8.4	30.0	61.6	100.0(464)
중소도시	11.3	28.1	60.5	100.0(441)
읍면	10.4	29.1	60.4	100.0(326)
X ² (df)		2.36(4)		
교사 연령				
20-29세	11.1	33.7	55.2	100.0(377)
30-39세	9.3	26.3	64.4	100.0(430)
40세 이상	9.7	27.8	62.5	100.0(424)
X ² (df)		7.97(4)		
교사 경력				
2년 미만	12.0	42.7	45.3	100.0(117)
2-5년 미만	12.6	32.5	54.9	100.0(286)
5-10년 미만	10.0	28.2	61.8	100.0(468)
10년 이상	7.2	23.1	69.7	100.0(360)
X ² (df)		29.45(6) ^{***}		
교사 학력				
고졸 이하	12.8	29.5	57.7	100.0(78)
전문대졸	9.5	31.9	58.6	100.0(524)
대졸	9.9	28.1	62.0	100.0(526)
대학원졸 이상	10.7	19.4	69.9	100.0(103)
X ² (df)		7.72(6)		

*** $p < .001$

지난 1년간 받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는 전반적으로 2회인 경우가 47.8%로 가장 많았으며, 4회 이상 받은 비율도 21.2%나 되었다. 교사경력에 따라서 교사 경력이 많을수록 교육 횟수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18〉 지난 1년간 받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전체	15.8	47.8	15.2	21.2	100.0(1,231)
소속 기관					
어린이집	15.7	46.9	15.2	22.2	100.0(847)
유치원	15.9	50.0	15.1	19.0	100.0(384)
$X^2(df)$		1.81(3)			
담당 영유아					
영아	14.6	48.7	15.4	21.3	100.0(540)
유아	16.6	47.2	15.1	21.1	100.0(691)
$X^2(df)$		0.95(3)			
지역규모					
대도시	16.2	45.3	16.6	22.0	100.0(464)
중소도시	15.0	48.8	13.6	22.7	100.0(441)
읍면	16.3	50.3	15.3	18.1	100.0(326)
$X^2(df)$		4.82(6)			
교사 연령					
20~29세	19.9	45.9	13.5	20.7	100.0(377)
30~39세	14.4	48.4	16.7	20.5	100.0(430)
40세 이상	13.4	49.1	15.1	22.4	100.0(424)
$X^2(df)$		8.30(6)			
교사 경력					
2년 미만	27.4	43.6	12.8	16.2	100.0(117)
2~5년 미만	17.1	50.0	12.2	20.6	100.0(286)
5~10년 미만	15.2	48.3	17.3	19.2	100.0(468)
10년 이상	11.7	46.9	15.6	25.8	100.0(360)
$X^2(df)$		24.44(9)**			
교사 학력					
고졸 이하	17.9	39.7	15.4	26.9	100.0(78)
전문대졸	16.4	49.6	14.7	19.3	100.0(524)
대졸	14.8	48.1	15.4	21.7	100.0(526)
대학원졸 이상	15.5	43.7	16.5	24.3	100.0(103)
$X^2(df)$		5.32(9)			

** $p < .01$

1회당 평균 교육시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1~2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3시간, 3시간 이상, 1시간 미만 순이었다. 소속기관별로 유치원 교사가 1회당 평균 1~2시간 교육을 받는 비율이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았고, 어린이집 교사는 2~3시간 교육을 받는 비율이 유치원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19〉 1회당 평균 교육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계(수)
전체	10.0	52.4	22.9	14.7	100.0(1,231)
소속 기관					
어린이집	9.2	51.6	25.0	14.2	100.0(847)
유치원	11.7	54.2	18.2	15.9	100.0(384)
$X^2(df)$		7.86(3)*			
담당 영유아					
영아	9.3	51.1	25.2	14.4	100.0(540)
유아	10.6	53.4	21.1	14.9	100.0(691)
$X^2(df)$		3.04(3)			
지역규모					
대도시	9.5	57.3	21.8	11.4	100.0(464)
중소도시	10.2	49.9	23.8	16.1	100.0(441)
읍면	10.4	48.8	23.3	17.5	100.0(326)
$X^2(df)$		9.84(6)			
교사 연령					
20~29세	9.0	50.1	26.8	14.1	100.0(377)
30~39세	8.8	54.0	22.3	14.9	100.0(430)
40세 이상	12.0	52.8	20.0	15.1	100.0(424)
$X^2(df)$		7.49(6)			
교사 경력					
2년 미만	12.8	48.7	23.1	15.4	100.0(117)
2~5년 미만	12.6	48.6	25.5	13.3	100.0(286)
5~10년 미만	9.0	51.5	25.0	14.5	100.0(468)
10년 이상	8.3	57.8	18.1	15.8	100.0(360)
$X^2(df)$		13.69(9)			
교사 학력					
고졸 이하	11.5	50.0	20.5	17.9	100.0(78)
전문대졸	9.9	52.3	24.4	13.4	100.0(524)
대졸	9.5	51.9	23.2	15.4	100.0(526)
대학원졸 이상	11.7	57.3	15.5	15.5	100.0(103)
$X^2(df)$		5.79(9)			

* $p < .05$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주최 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45.9%, 아동보호전문기관 36.1% 순이었다. 중복응답 결과로 차이분석을 할 수 없으나,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74.0%)와 어린이집(65.9%)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았고,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69.5%)과 시·도 교육청(55.2%)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담당영유아에 따라 살펴보면 영아담당교사는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 주최한 교육을 받았고, 유아담당교사가 받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35.7%)과 육아종합지원센터(35.5%)에서 각각 비슷하게 주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 교사연령, 교사경력에 상관없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대졸 학력의 교사들이 받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주최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원 졸업 이상의 교사의 경우 시·도 교육청(50.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0〉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주최 기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보호 전문 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 교육 진흥원	건강 가정 지원센터	시·도 청	시·도 교육 청	기타	(수)
전체	45.9	22.4	36.1	52.7	14.4	3.1	14.8	22.0	13.0	100.0(1,231)
소속 기관										
어린이집	65.9	1.1	37.4	74.0	10.9	3.7	19.6	7.0	13.3	100.0(847)
유치원	1.8	69.5	33.3	5.7	22.1	1.8	4.2	55.2	12.2	100.0(384)
담당 영유아										
영아	66.1	1.1	36.7	74.8	10.0	3.5	19.6	7.8	14.4	100.0(540)
유아	30.1	39.1	35.7	35.5	17.8	2.7	11.0	33.1	11.9	100.0(691)
지역규모										
대도시	47.2	22.8	35.8	53.7	15.3	3.7	11.0	20.3	13.4	100.0(464)
중소도시	44.7	23.8	38.5	50.8	13.8	3.4	17.2	23.8	12.5	100.0(441)
읍면	45.7	19.9	33.4	54.0	13.8	1.8	16.9	22.1	13.2	100.0(326)
교사 연령										
20~29세	39.3	36.6	32.9	40.3	19.1	4.8	11.4	26.8	8.5	100.0(377)
30~39세	47.9	20.0	37.0	57.2	10.9	2.3	17.2	20.0	14.9	100.0(430)
40세 이상	49.8	12.3	38.2	59.2	13.7	2.4	15.3	19.8	15.1	100.0(424)
교사 경력										
2년 미만	35.0	30.8	28.2	40.2	18.8	5.1	10.3	17.9	11.1	100.0(117)
2~5년 미만	45.1	24.8	30.8	55.6	18.5	3.5	12.6	20.6	8.7	100.0(286)
5~10년 미만	48.9	19.4	38.5	54.7	11.5	3.4	15.4	21.6	12.0	100.0(468)
10년 이상	46.1	21.7	40.0	51.9	13.3	1.7	17.2	25.0	18.3	100.0(360)
교사 학력										
고졸 이하	62.8	1.3	32.1	79.5	11.5	-	17.9	10.3	15.4	100.0(78)
전문대졸	50.2	17.6	37.0	56.7	13.5	3.6	15.8	17.4	13.2	100.0(524)
대졸	43.9	26.2	36.1	50.6	14.4	3.6	14.3	22.8	10.8	100.0(526)
대학원졸 이상	21.4	43.7	35.0	23.3	20.4	-	9.7	50.5	21.4	100.0(103)

주: 중복응답 결과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 여부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4점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효과가 있었다고 인식한 비율이 94.5%로 대부분이었다. 영아담당교사는 유아담당교사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 연령이 높을수록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고, 교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표 IV-2-21〉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별 다른 효과가 없었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	큰 효과가 있었음	잘 모르겠음	평균	계(수)
전체	3.5	52.7	41.8	2.0	3.4	100.0(1,231)
소속 기관						
어린이집	3.2	51.9	43.1	1.8	3.4	100.0(847)
유치원	4.2	54.4	38.8	2.6	3.4	100.0(384)
X ² (df)	3.10(3)				-1.46	
담당 영유아						
영아	3.3	48.3	47.2	1.1	3.4	100.0(540)
유아	3.6	56.2	37.5	2.7	3.3	100.0(691)
X ² (df)	14.48(3)**				2.97**	
지역규모						
대도시	3.2	55.6	38.8	2.4	3.4	100.0(464)
중소도시	3.6	51.5	42.6	2.3	3.4	100.0(441)
읍면	3.7	50.3	44.8	1.2	3.4	100.0(326)
X ² (df)	4.56(6)				0.90	
교사 연령						
20~29세	5.8	61.5	28.6	4.0	3.2	100.0(377)
30~39세	4.0	55.6	38.6	1.9	3.4	100.0(430)
40세 이상	0.9	42.0	56.6	0.5	3.6	100.0(424)
X ² (df)	80.68(6)***				36.01***	
교사 경력						
2년 미만	6.0	59.0	28.2	6.8	3.2	100.0(117)
2~5년 미만	4.2	55.6	37.4	2.8	3.3	100.0(286)
5~10년 미만	3.0	54.9	40.6	1.5	3.4	100.0(468)
10년 이상	2.8	45.6	51.1	0.6	3.5	100.0(360)
X ² (df)	41.38(9)***				7.08***	
교사 학력						
고졸 이하	2.6	46.2	50.0	1.3	3.5	100.0(78)
전문대졸	3.6	51.1	42.7	2.5	3.4	100.0(524)
대졸	3.2	55.5	39.4	1.9	3.4	100.0(526)
대학원졸 이상	4.9	51.5	42.7	1.0	3.4	100.0(103)
X ² (df)	na				1.02	

** $p < .01$, *** $p < .001$

주: 1)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 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2) na는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관련 교육 일정 등을 알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50.0%로 가장 많았다.

〈표 IV-2-22〉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관련 교육 일정 등을 알지 못해서	학대 관련 연수가 없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원장이나 학부모가 교육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을 싫어해서	기타	계(수)
전체	50.0	6.3	12.5	6.3	25.0	100.0(16)
소속 기관						
어린이집	40.0	-	20.0	-	40.0	100.0(5)
유치원	54.5	9.1	9.1	9.1	18.2	100.0(11)
담당 영유아						
영아	-	-	33.3	-	66.7	100.0(3)
유아	61.5	7.7	7.7	7.7	15.4	100.0(13)
지역규모						
대도시	50.0	-	25.0	25.0	-	100.0(4)
중소도시	50.0	16.7	-	-	33.3	100.0(6)
읍면	50.0	-	16.7	-	33.3	100.0(6)
교사 연령						
20~29세	57.1	-	14.3	14.3	14.3	100.0(7)
30~39세	66.7	-	33.3	-	-	100.0(3)
40세 이상	33.3	16.7	-	-	50.0	100.0(6)
교사 경력						
2년 미만	33.3	-	33.3	-	33.3	100.0(3)
2~5년 미만	33.3	16.7	16.7	16.7	16.7	100.0(6)
5~10년 미만	66.7	-	-	-	33.3	100.0(6)
10년 이상	100.0	-	-	-	-	100.0(1)
교사 학력						
전문대졸	42.9	-	14.3	-	42.9	100.0(7)
대졸	50.0	12.5	12.5	12.5	12.5	100.0(8)
대학원졸 이상	100.0	-	-	-	-	100.0(1)

주: 모든 구분에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χ^2 검정이 부적절함.

아동학대 관련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이 3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피해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 26.7%, 피해아동 발견 방법 18.0% 순이었다. 2순위 응답으로는 피해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이 2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학대 부모의 면담방법이나 부모 교육 23.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 16.7% 순이었다.

〈표 IV-2-23〉 아동학대 관련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단위: %(명), N=1,247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1순위	18.0	26.7	31.4	8.7	0.3	2.1	8.0	1.4	0.9	0.5	2.0	0.2	100.0
2순위	6.4	28.0	16.7	23.3	1.6	9.3	3.9	3.4	1.0	2.9	3.3	0.2	100.0
3순위	3.5	15.7	16.5	20.0	5.4	14.3	4.0	3.5	2.3	7.9	6.7	0.2	100.0

주: ①피해아동 발견 방법, ②피해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 ③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 ④학대 부모의 면담방법이나 부모 교육, ⑤아동학대 지원 기관 관련 정보 소개, ⑥피해유아에 대한 지도, ⑦아동 인권, ⑧아동학대의 영향 및 결과, ⑨아동학대 관련 법률, ⑩아동학대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 ⑪스트레스 관리 방안, ⑫기타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소집단 강의 및 강연이 50.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집단 강의 및 강연 15.7%,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를 통한 교육 14.1% 순이었다. 교사경력에 따라 살펴보면, 교사경력이 높을수록 소집단 강의 및 강연을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경력이 낮을수록 대집단 강의 및 강연이 효과적이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24〉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단위: %(명)

구분	대집단 강의 및 강연	소집단 강의 및 강연	1:1 개별교육	집단 토론	온라인 교육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를 통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 관련 책자 제공	계(수)
전체	15.7	50.8	4.4	8.7	3.8	14.1	2.4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16.3	50.5	4.1	8.2	3.5	15.4	2.0	100.0(852)
유치원	14.4	51.6	5.1	9.9	4.3	11.4	3.3	100.0(395)
$\chi^2(df)$				7.45(6)				
담당 영유아								
영아	16.9	51.2	3.9	7.9	3.1	15.5	1.5	100.0(543)
유아	14.8	50.6	4.8	9.4	4.3	13.1	3.1	100.0(704)
$\chi^2(df)$				8.10(6)				
지역규모								
대도시	17.7	50.6	4.5	7.7	2.6	14.1	2.8	100.0(468)
중소도시	15.2	49.7	4.0	9.6	4.0	15.2	2.2	100.0(447)
읍면	13.6	52.7	4.8	9.0	5.1	12.7	2.1	100.0(332)
$\chi^2(df)$				8.75(12)				
교사 연령								
20~29세	16.1	44.5	6.3	9.4	3.9	16.4	3.4	100.0(384)
30~39세	15.0	53.3	5.3	9.0	3.5	12.0	1.8	100.0(433)
40세 이상	16.0	54.0	1.9	7.9	4.0	14.2	2.1	100.0(430)
$\chi^2(df)$				20.43(12)				

(표 IV-2-24 계속)

구분	대집단 강의 및 강연	소집단 강의 및 강연	1:1 개별교육	집단 토론	온라인 교육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를 통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 관련 책자 제공	계(수)
교사 경력								
2년 미만	18.3	39.2	5.8	10.8	3.3	16.7	5.8	100.0(120)
2~5년 미만	17.8	49.3	5.5	8.6	2.1	13.0	3.8	100.0(292)
5~10년 미만	14.6	49.6	4.9	8.2	4.6	16.7	1.5	100.0(474)
10년 이상	14.7	57.6	2.5	8.9	4.2	10.8	1.4	100.0(361)
X ² (df)	34.64(18)							
교사 학력								
고졸 이하	17.9	43.6	7.7	9.0	1.3	19.2	1.3	100.0(78)
전문대졸	15.6	51.2	4.1	8.3	4.0	14.3	2.4	100.0(531)
대졸	15.2	50.7	4.7	9.6	3.7	13.7	2.4	100.0(534)
대학원졸 이상	17.3	54.8	1.9	6.7	4.8	11.5	2.9	100.0(104)
X ² (df)	na							

* $p < .05$

주: na는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담당자가 4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담센터전문가 35.4%, 심리학전공 교수 7.6% 순이었다. 배경에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고졸이하의 교사는 상담센터전문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7%로 아동보호전문기관담당자 34.6%보다 많았다.

〈표 IV-2-25〉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

단위: %(명)

구분	유아교육이나 보육과 교수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원장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교사	심리학 전공 교수	상담 센터 전문가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기타	계(수)
전체	2.6	3.0	3.8	7.6	35.4	0.2	47.3	0.1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2.9	2.9	3.6	8.5	35.4	0.1	46.4	0.1	100.0(852)
유치원	2.0	3.0	4.3	5.8	35.2	0.3	49.4	-	100.0(395)
담당 영유아									
영아	2.8	2.4	2.8	8.8	34.6	0.2	48.3	0.2	100.0(543)
유아	2.6	3.4	4.7	6.7	35.9	0.1	46.6	-	100.0(704)
지역규모									
대도시	1.9	3.2	4.1	6.0	35.7	0.2	48.9	-	100.0(468)
중소도시	3.4	2.9	3.8	8.1	34.5	0.2	47.2	-	100.0(447)
읍면	2.7	2.7	3.6	9.3	36.1	-	45.2	0.3	100.0(332)

(표 IV-2-25 계속)

구분	유아교육이나 보육과 교수	유치원 이나 어린이 집 원장 집	유치원 이나 어린이 집 교사	심리학 전공 교수	상담 센터 전문가	관련 공무원	아동보 호전문 기관 담당자	기타	계(수)
교사 연령									
20-29세	3.1	2.9	4.4	8.6	30.5	0.3	50.0	0.3	100.0(384)
30-39세	2.5	4.2	4.8	6.9	34.9	-	46.7	-	100.0(433)
40세 이상	2.3	1.9	2.3	7.4	40.2	0.2	45.6	-	100.0(430)
교사 경력									
2년 미만	4.2	4.2	3.3	8.3	30.0	-	50.0	-	100.0(120)
2-5년 미만	3.8	3.1	3.4	8.2	36.0	-	45.5	-	100.0(292)
5-10년 미만	2.1	3.0	4.4	8.6	34.0	0.2	47.5	0.2	100.0(474)
10년 이상	1.9	2.5	3.6	5.5	38.5	0.3	47.6	-	100.0(361)
교사 학력									
고졸 이하	2.6	5.1	1.3	7.7	48.7	-	34.6	-	100.0(78)
전문대졸	3.4	2.3	3.8	9.8	34.5	0.2	46.0	0.2	100.0(531)
대졸	2.1	3.0	4.9	5.8	33.5	0.2	50.6	-	100.0(534)
대학원졸 이상	1.9	4.8	1.0	5.8	39.4	-	47.1	-	100.0(104)

주: 모든 구분에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X² 검정이 부적절함.

마.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의 1순위 응답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4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15.6%,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13.5% 순이었다. 2순위 응답으로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이 1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18.0%,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15.6% 순이었다.

〈표 IV-2-26〉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N=1,247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1순위	47.2	0.3	13.5	15.6	9.1	5.2	7.9	0.2	0.8	0.3	100.0
2순위	13.1	2.8	15.6	18.0	18.6	13.7	12.9	0.3	4.7	0.3	100.0
3순위	14.7	1.8	10.7	13.0	16.8	18.1	15.1	1.3	7.7	0.7	100.0

주: ①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②원장이나 교사들 간의 갈등, ③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④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⑤영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 ⑥학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⑦아동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⑧기관 차원의 관리 및 모니터링 부족, ⑨정책적 지원의 부족, ⑩기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의 1순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 2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사의 처우 개선 23.7%, 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17.1% 순이었다. 2순위 응답으로는 교사 처우 개선이 2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17.2%, 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14.8% 순이었다.

〈표 IV-2-2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단위: %(명), N=1,247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계
1순위	27.7	17.1	23.7	1.2	6.7	0.5	1.0	0.1	1.4	0.2	7.9	6.4	6.1	0.1	100.0
2순위	12.3	14.8	20.7	3.8	10.3	1.8	1.3	0.4	2.5	0.8	17.2	8.6	5.3	0.2	100.0
3순위	9.9	9.5	12.5	3.0	14.1	2.3	0.8	0.2	3.4	1.5	19.4	15.0	7.9	0.4	100.0

주: ①유치원/어린이집 인력 확충, ②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③교사 처우 개선, ④ 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⑤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실시, ⑥신고의무제 강화, ⑦기관 내 CCTV 설치, ⑧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⑨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⑩학대 원장 및 학대 교사 명단 공개, ⑪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⑫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평가 및 상담, ⑬교사의 인·적성 검사 강화, ⑭기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의 1순위는 양육스트레스가 3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부 및 가족갈등 16.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13.8% 순이었다. 2순위 응답으로는 부부 및 가족갈등이 2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18.6%, 양육지식의 부족 11.3% 순이었다.

〈표 IV-2-28〉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N=1,247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1순위	35.5	13.8	16.2	8.4	1.0	1.9	7.0	7.6	7.9	0.6	100.0
2순위	10.2	18.6	22.3	9.1	3.6	5.2	11.3	9.2	8.0	2.4	100.0
3순위	11.1	8.5	14.9	9.9	2.4	7.6	11.9	16.7	12.8	4.3	100.0

주: ①양육스트레스, ②사회·경제적 스트레스, ③부부 및 가족갈등, ④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⑤중독(술, 도박, 게임 등) 문제, ⑥자녀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⑦양육지식의 부족, ⑧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 ⑨부모 역할에 대한 무지, ⑩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⑪ 기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가 4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한 홍보 20.3%,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18.7% 순이었다. 교사연령에 따라, 30~39세 교사가 다른 연령의 교사보다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와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40세 이상의 교사는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홍보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29〉 가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단위: %(명)

구분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홍보	양육스트레 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기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아동학 대 관련 법규 홍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기타	계(수)
전체	48.0	20.3	18.7	7.6	1.6	3.5	0.2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48.9	20.0	19.0	6.7	1.5	3.8	0.1	100.0(852)
유치원	46.1	21.0	18.0	9.6	1.8	3.0	0.5	100.0(395)
$X^2(df)$				6.00(6)				
담당 영유아								
영아	49.7	21.9	16.8	6.6	1.3	3.5	0.2	100.0(543)
유아	46.7	19.0	20.2	8.4	1.8	3.6	0.3	100.0(704)
$X^2(df)$				5.69(2)				
지역규모								
대도시	49.4	20.9	15.4	9.6	1.9	2.8	-	100.0(468)
중소도시	46.8	21.3	21.3	4.9	1.6	3.8	0.4	100.0(447)
읍면	47.9	18.1	19.9	8.4	1.2	4.2	0.3	100.0(332)
$X^2(df)$				16.89(12)				
교사 연령								
20~29세	47.4	17.7	19.0	9.1	2.3	3.6	0.8	100.0(384)
30~39세	48.7	18.2	21.9	7.2	1.8	2.1	-	100.0(433)
40세 이상	47.9	24.7	15.1	6.7	0.7	4.9	-	100.0(430)
$X^2(df)$				28.60(12)**				
교사 경력								
2년 미만	43.3	19.2	18.3	13.3	3.3	1.7	0.8	100.0(120)
2~5년 미만	49.0	15.8	20.5	7.5	1.4	5.8	-	100.0(292)
5~10년 미만	49.6	20.0	18.6	7.4	1.3	2.7	0.4	100.0(474)
10년 이상	46.8	24.7	17.5	6.1	1.7	3.3	-	100.0(361)
$X^2(df)$				na				
교사 학력								
고졸 이하	47.4	23.1	14.1	7.7	1.3	6.4	-	100.0(78)
전문대졸	47.6	20.7	19.2	6.2	1.7	4.3	0.2	100.0(531)
대졸	46.6	18.7	20.4	9.7	1.7	2.4	0.4	100.0(534)
대학원졸 이상	57.7	24.0	10.6	3.8	1.0	2.9	-	100.0(104)
$X^2(df)$				na				

** $p < .01$

주: na는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

체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22.1%, 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가 19.3%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과 상관없이 대부분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대도시 교사, 20~29세 교사, 5년 미만 경력의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응답이 2번째로 많아 전체적인 경향과 차이를 보였다.

〈표 IV-2-30〉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구분	단위: %(명)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0.7	43.6	1.4	12.4	22.1	19.3	0.4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0.7	46.8	1.3	12.6	20.7	17.4	0.6	100.0(852)
유치원	0.8	36.7	1.5	12.2	25.3	23.5	-	100.0(395)
담당 영유아								
영아	0.9	48.3	1.7	11.6	19.7	17.5	0.4	100.0(543)
유아	0.6	40.1	1.1	13.1	24.0	20.7	0.4	100.0(704)
지역규모								
대도시	0.6	42.5	0.6	12.0	21.8	22.0	0.4	100.0(468)
중소도시	0.2	47.4	1.8	11.2	21.0	17.9	0.4	100.0(447)
읍면	1.5	40.1	1.8	14.8	24.1	17.5	0.3	100.0(332)
교사 연령								
20~29세	0.8	40.1	1.3	14.6	19.8	23.2	0.3	100.0(384)
30~39세	0.7	42.0	2.3	10.6	26.3	17.1	0.9	100.0(433)
40세 이상	0.7	48.4	0.5	12.3	20.0	18.1	-	100.0(430)
교사 경력								
2년 미만	0.8	35.8	3.3	12.5	22.5	25.0	-	100.0(120)
2~5년 미만	0.7	42.5	1.0	14.0	19.5	21.6	0.7	100.0(292)
5~10년 미만	0.6	46.2	1.1	12.7	21.3	18.1	-	100.0(474)
10년 이상	0.8	43.8	1.4	10.8	25.2	17.2	0.8	100.0(361)
교사 학력								
고졸 이하	-	43.6	1.3	17.9	21.8	15.4	-	100.0(78)
전문대졸	0.9	44.1	1.5	10.9	22.2	19.8	0.6	100.0(531)
대졸	0.6	43.8	1.3	13.1	21.9	18.9	0.4	100.0(534)
대학원졸 이상	1.0	40.4	1.0	12.5	23.1	22.1	-	100.0(104)

주: ①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아서, ②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③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서. ④신고 시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⑤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⑥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⑦기타

바.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4점 척도에 3.1~3.6점으로 대체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함, 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취업을 제한함에 대한 인지도가 모두 3.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유아 대상 체벌을 금지함(3.2점)이나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음(3.2점), 그리고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기준이 강화(3.1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인지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르고 있었음	들은 적은 있으나 잘 모르고 있었음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	평균	계(수)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함	0.6	4.2	26.5	68.7	3.6	100.0(1,247)
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취업을 제한함	2.2	4.6	27.2	66.0	3.6	100.0(1,247)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유치원을 폐쇄함	0.8	4.7	33.8	60.7	3.5	100.0(1,247)
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1.8	6.9	32.4	58.9	3.5	100.0(1,247)
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2.1	5.6	32.2	60.1	3.5	100.0(1,247)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1.3	8.0	37.3	53.4	3.4	100.0(1,247)
2일 이상 무단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함	6.0	13.0	30.4	50.6	3.3	100.0(1,247)
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2.8	11.1	39.1	47.0	3.3	100.0(1,247)
유아 대상 체벌을 금지함	2.6	12.9	43.7	40.8	3.2	100.0(1,247)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음	5.1	12.8	39.6	42.6	3.2	100.0(1,247)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기준이 강화	5.9	15.2	41.4	37.4	3.1	100.0(1,247)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나타냄.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금 번호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71.8%로 가장 많았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지금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

다. 담당영유아에 따라서는 영아담당교사가 유아담당교사보다 지금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가, 교사 학력이 낮을수록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2〉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여부

단위: %(명)

구분	지금 번호로 정확히 알고 있음	과거 번호로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수)
전체	71.8	10.4	17.8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83.6	6.3	10.1	100.0(852)
유치원	46.3	19.2	34.4	100.0(395)
X ² (df)		185.03(2) ^{***}		
담당 영유아				
영아	85.1	5.5	9.4	100.0(543)
유아	61.5	14.2	24.3	100.0(704)
X ² (df)		84.11(2) ^{***}		
지역규모				
대도시	73.3	9.0	17.7	100.0(468)
중소도시	69.6	11.6	18.8	100.0(447)
읍면	72.6	10.8	16.6	100.0(332)
X ² (df)		2.64(4)		
교사 연령				
20~29세	61.2	15.1	23.7	100.0(384)
30~39세	73.9	9.2	16.9	100.0(433)
40세 이상	79.1	7.4	13.5	100.0(430)
X ² (df)		33.98(4) ^{***}		
교사 경력				
2년 미만	60.0	18.3	21.7	100.0(120)
2~5년 미만	71.6	8.2	20.2	100.0(292)
5~10년 미만	71.1	10.1	18.8	100.0(474)
10년 이상	76.7	10.0	13.3	100.0(361)
X ² (df)		18.58(6) ^{**}		
교사 학력				
고졸 이하	82.1	7.7	10.3	100.0(78)
전문대졸	75.0	9.6	15.4	100.0(531)
대졸	69.3	11.0	19.7	100.0(534)
대학원졸 이상	60.6	13.5	26.0	100.0(104)
X ² (df)		15.28(6) [*]		

* $p < .05$, ** $p < .01$, *** $p < .001$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모든 주의

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4점 척도에 평균 3.3~3.7점으로 인지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에 대해서 평균 3.7점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았고, 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 대해서는 평균 3.3점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표 IV-2-33〉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르고 있었음	들은 적은 있으나 잘 모르고 있었음	대략적 으로 알고 있었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	평균	계(수)
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	3.2	28.3	68.5	3.7	100.0(1,247)
신고 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함	0.5	3.2	30.8	65.5	3.6	100.0(1,247)
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함	0.8	4.3	32.4	62.5	3.6	100.0(1,247)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0.3	2.4	30.5	66.8	3.6	100.0(1,247)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1.1	5.8	27.8	65.3	3.6	100.0(1,247)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0.9	6.0	35.9	57.2	3.5	100.0(1,247)
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8	10.7	42.8	43.7	3.3	100.0(1,247)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나타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4점 척도에 평균 2.7점으로 도움 정도를 보통에서 약간 도움이 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도움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경력에 따라서는 2~5년 교사와 10년 이상 교사는 2년 미만 교사와 5~10년 미만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도움 정도를 낮게 인식하였다. 교사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의 교사가 가장 도움 정도를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도움이 안 될 것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매우 도움이 될 것	평균	계(수)
전체	10.7	19.2	57.8	12.2	2.7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7.5	19.2	61.0	12.2	2.8	100.0(852)
유치원	17.7	19.2	50.9	12.2	2.6	100.0(395)
$X^2(df)/t$	30.99(3)**				-3.87**	
담당 영유아						
영아	9.6	18.4	60.6	11.4	2.7	100.0(543)
유아	11.6	19.9	55.7	12.8	2.7	100.0(704)
$X^2(df)/t$	3.31(3)				0.92	
지역규모						
대도시	10.5	18.6	57.5	13.5	2.7	100.0(468)
중소도시	11.6	20.1	56.8	11.4	2.7	100.0(447)
읍면	9.9	19.0	59.6	11.4	2.7	100.0(332)
$X^2(df)/F$	2.13(6)				0.65	
교사 연령						
20~29세	9.9	21.4	58.9	9.9	2.7	100.0(384)
30~39세	10.9	17.1	58.7	13.4	2.7	100.0(433)
40세 이상	11.4	19.5	56.0	13.0	2.7	100.0(430)
$X^2(df)/F$	5.16(6)				0.55	
교사 경력						
2년 미만	5.8	20.0	61.7	12.5	2.8	100.0(120)
2~5년 미만	11.3	21.6	58.2	8.9	2.6	100.0(292)
5~10년 미만	7.4	18.6	60.3	13.7	2.8	100.0(474)
10년 이상	16.3	18.0	52.9	12.7	2.6	100.0(361)
$X^2(df)/F$	25.48(9)**				4.74**	
교사 학력						
고졸 이하	2.6	15.4	69.2	12.8	2.9	100.0(78)
전문대졸	8.7	17.7	58.9	14.7	2.8	100.0(531)
대졸	10.7	19.7	58.8	10.9	2.7	100.0(534)
대학원졸 이상	27.9	27.9	38.5	5.8	2.2	100.0(104)
$X^2(df)/F$	56.52(9)**				16.92**	

** $p < .01$, *** $p < .001$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에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가 4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CCTV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CCTV를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인가 40.9%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은 할 수 없으나 배경에 따라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 영아담당교사, 읍면의 교사, 20~29세 교사, 2~10년 미만 경력의 교

사, 전문대 졸업 학력의 교사는 CCTV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CCTV를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치원 교사와 유아담당교사,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사, 40세 이상의 교사, 2년 미만과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 고졸이하 및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의 교사는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V-2-35〉 CCTV 설치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되어도 실제로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녹화내용이 지워져서 제대로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CCTV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CCTV를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기타	계(수)
전체	41.4	2.1	1.9	40.9	13.6	100.0(374)
소속 기관						
어린이집	30.7	0.9	1.8	52.2	14.5	100.0(228)
유치원	58.2	4.1	2.1	23.3	12.3	100.0(146)
담당 영유아						
영아	29.6	1.3	2.0	52.0	15.1	100.0(152)
유아	49.5	2.7	1.8	33.3	12.6	100.0(222)
지역규모						
대도시	43.4	1.5	1.5	40.4	13.2	100.0(136)
중소도시	44.4	2.1	2.1	39.4	12.0	100.0(142)
읍면	34.4	3.1	2.1	43.8	16.7	100.0(96)
교사 연령						
20-29세	43.3	2.5	-	45.0	9.2	100.0(120)
30-39세	37.2	2.5	4.1	38.8	17.4	100.0(121)
40세 이상	43.6	1.5	1.5	39.1	14.3	100.0(133)
교사 경력						
2년 미만	58.1	3.2	-	22.6	16.1	100.0(31)
2~5년 미만	36.5	3.1	2.1	42.7	15.6	100.0(96)
5~10년 미만	38.2	0.8	2.4	48.8	9.8	100.0(123)
10년 이상	44.4	2.4	1.6	36.3	15.3	100.0(124)
교사 학력						
고졸 이하	50.0	-	-	28.6	21.4	100.0(14)
전문대졸	35.0	1.4	2.1	50.0	11.4	100.0(140)
대졸	41.4	3.1	1.9	38.9	14.8	100.0(162)
대학원졸 이상	55.2	1.7	1.7	27.6	13.8	100.0(58)

주: 모든 구분에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χ^2 검정이 부적절함.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지여부에 대한 점수는 4점 척도에 평균 3점이

며 활용 여부에 대한 점수는 평균 2.2점으로 인지도는 대체로 있으나 활용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영유아별로 인지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영아담당교사가 유아담당교사보다 인지도가 높았다. 교사연령과 교사경력에 따라서는,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의 교사가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다른 교사보다 더 높았다.

〈표 IV-2-3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인지여부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음	대충 알았음	들어본 것 있음	모름	평균		자주 활용	가끔 활용	1~2번 활용	활용 경험 없음	평균	
전체	25.7	54.3	17.6	2.4	3.0	(1,247)	14.1	30.3	17.8	37.8	2.2	(1,217)
소속 기관												
어린이집	25.5	54.5	17.8	2.2	3.0	(852)	14.6	29.2	16.6	39.6	2.2	(833)
유치원	26.1	53.9	17.2	2.8	3.0	(395)	12.8	32.8	20.6	33.9	2.2	(384)
	$X^2(df)$				0.46(3)	-0.03		6.49(3)				6.49(3)
담당 영유아												
영아	27.1	56.2	15.5	1.3	3.1	(543)	14.4	30.4	16.8	38.4	2.2	(536)
유아	24.6	52.8	19.3	3.3	3.0	(704)	13.8	30.2	18.6	37.3	2.2	(681)
	$X^2(df)$				8.93(3)*	-2.49†		0.75(3)				0.75(3)
지역규모												
대도시	24.8	53.6	18.6	3.0	3.0	(468)	13.4	30.6	21.4	34.6	2.2	(454)
중소도시	27.5	53.7	16.8	2.0	3.1	(447)	15.1	29.2	15.8	40.0	2.2	(438)
읍면	24.4	56.0	17.5	2.1	3.0	(332)	13.5	31.4	15.7	39.4	2.2	(325)
	$X^2(df)$				2.71(6)	0.92		7.89(6)				7.89(6)
교사 연령												
20~29세	18.8	50.5	26.6	4.2	2.8	(384)	8.7	30.4	19.0	41.8	2.1	(368)
30~39세	24.2	58.2	15.2	2.3	3.0	(433)	13.9	27.9	18.7	39.5	2.2	(423)
40세 이상	33.3	53.7	12.1	0.9	3.2	(430)	18.8	32.6	16.0	32.6	2.4	(426)
	$X^2(df)$				54.49(6)**	25.13**		22.08(6)**				22.08(6)**
교사 경력												
2년 미만	16.7	50.8	29.2	3.3	2.8	(120)	11.2	31.9	17.2	39.7	2.1	(116)
2~5년 미만	20.2	54.1	22.6	3.1	2.9	(292)	9.2	29.0	17.3	44.5	2.0	(283)
5~10년 미만	25.7	53.4	18.1	2.7	3.0	(474)	12.8	29.9	17.8	39.5	2.2	(461)
10년 이상	33.0	56.8	9.1	1.1	3.2	(361)	20.4	31.4	18.5	29.7	2.4	(357)
	$X^2(df)$				47.12(9)**	14.54**		26.96(9)**				26.96(9)**
교사 학력												
고졸 이하	28.2	48.7	21.8	1.3	3.0	(78)	19.5	23.4	11.7	45.5	2.2	(77)
전문대졸	22.4	57.6	17.3	2.6	3.0	(531)	14.5	30.0	17.6	37.9	2.2	(517)
대졸	26.8	51.3	19.3	2.6	3.0	(534)	11.7	30.8	18.7	38.8	2.2	(520)

(표 IV-2-36 계속)

구분	인지여부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음	대충 압	들어 본 있음	적 모름	평균		자주 활용	가끔 활용	1~2번 활용	활용 없음	평균	
대학원졸 이상	34.6	56.7	7.7	1.0	3.3	(104)	19.4	35.0	19.4	26.2	2.5	(103)
$X^2(df)$	17.40(9)				3.56*		14.79(9)				14.79(9)	

* $p < .05$, ** $p < .01$, *** $p < .001$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4점 척도에 평균 3.2 또는 3.3점으로 만족하는 편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V-2-37〉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평균	계(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교육	-	3.6	66.2	30.3	3.3	100.0(757)
기본원칙 및 평상시 관리·대응	-	3.0	67.6	29.3	3.3	100.0(757)
아동학대 징후 발견 혹은 무단결석/퇴학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	4.0	65.9	30.1	3.3	100.0(757)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징후	0.1	2.9	73.8	23.1	3.2	100.0(757)
각종 안내문 및 양식	-	4.1	67.9	28.0	3.2	100.0(757)
관련 법령	0.1	5.5	67.5	26.8	3.2	100.0(757)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0.1	5.3	66.2	28.4	3.2	100.0(757)
피해아동보호절차(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0.4	4.5	65.9	29.2	3.2	100.0(757)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냄.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가 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22.3%,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보다 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

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교사보다 중소도시나 읍면의 교사가 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에 대한 응답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사항에 있어서는 대도시 교사의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교사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응답 비율은 높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응답비율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8〉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요구: 1순위

구분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33.8	11.1	3.6	6.3	8.1	5.6	22.3	2.9	5.9	0.3	100.0(1,247)
소속 기관											
어린이집	35.1	11.0	2.9	5.3	7.7	5.3	24.5	2.6	5.4	0.1	100.0(852)
유치원	31.1	11.1	5.1	8.6	8.9	6.3	17.5	3.5	7.1	0.8	100.0(395)
$X^2(df)$	21.96(9)**										
지역규모											
대도시	28.6	10.5	4.5	6.6	11.3	6.0	25.2	3.2	3.6	0.4	100.0(468)
중소도시	37.1	12.3	2.5	6.5	6.3	5.8	19.9	1.8	7.6	0.2	100.0(447)
읍면	36.7	10.2	3.9	5.7	6.0	4.8	21.4	3.9	6.9	0.3	100.0(332)
$X^2(df)$	33.57(18)*										
교사 연령											
20-29세	25.0	11.5	5.2	8.1	12.2	3.6	26.0	2.6	5.2	0.5	100.0(384)
30-39세	32.6	11.1	2.8	5.8	8.8	6.7	21.5	3.9	6.5	0.5	100.0(433)
40세 이상	43.0	10.7	3.0	5.3	3.7	6.3	19.8	2.1	6.0	-	100.0(430)
$X^2(df)$	58.15(1)***										

* $p < .05$, ** $p < .01$, *** $p < .001$

주: ①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②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④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⑤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⑥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⑦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⑧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⑨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⑩기타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의 2순위 응답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20.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13.8%,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12.8%로 나타났다.

〈표 IV-1-39〉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요구: 2~3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2순위	12.8	13.8	6.3	8.9	9.5	8.6	20.2	10.3	9.6	-	100.0(1,247)
3순위	14.8	9.3	5.2	7.3	8.8	8.2	19.2	15.6	11.5	0.1	100.0(1,247)

주: ①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②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④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⑤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⑥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⑦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⑧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⑨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⑩기타

3. 영유아 학대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인식 비교

가.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부모가 교사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는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심각성 정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유치원, 가정 순으로 상대적으로 기관에서의 학대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교사는 가정에서의 학대 심각성 정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였고, 그 다음은 어린이집, 유치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가정에서의 학대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여 부모의 인식과 차이를 보였다.

〈표 IV-3-1〉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단위: 점(명)
구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	3.8	1.72	4.5	1.58	4.2	1.50	(1,139)
교사	4.0	1.67	3.5	1.72	3.2	1.56	(1,247)

주: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냄.

나.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및 수령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부모는 제출했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37.1%였다. 교사는 제출받았다는 응답이 62.1%이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 정도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아 응답 분포의 차이는 있으나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20% 조금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3-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및 수령 여부

				단위: %(명)
구분	제출했음	제출하지 않았음	모르겠음	계(수)
부모	42.5	20.4	37.1	100.0(1,139)
구분	제출받았음	제출받지 않았음	모르겠음	계(수)
교사	62.1	24.3	13.6	100.0(1,24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0.2%에서 31.8%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율로 나타났다. 부모와 교사 모두 가장 많이 목격한 행동은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으로 각각 18.4%, 31.8%였으며, 그 다음은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으로 각각 14.1%, 26.4%,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행동' 각각 11.9%, 20.0%로 비율은 다르지만 순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이하게 부모의 경우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그냥 두는 행동'을 목격했다는 응답이 11.5%로 교사의 응답 1.8%와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V-3-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학대 의심 행동 목적 여부

구분	단위: %	
	부모	교사
영유아의 머리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	6.6	7.5
얼굴, 뺨, 등관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4.3	1.3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	4.4	1.7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3.9	0.8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	7.0	2.7
특정 공간에 장시간(10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행동	9.8	6.8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14.1	26.4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	8.0	2.4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행동	11.9	20.0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18.4	31.8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고의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	10.5	19.1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	1.6	0.2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	1.4	0.2
교사가 영유아에게 포레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	0.9	0.2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그냥 두는 행동	11.5	1.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교사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부모와 교사 모두 피해아동을 위로,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 순이었다.

〈표 IV-3-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사항
단위: %(명)

구분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함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알림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피해아동을 위로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수)
부모	8.0	27.6	16.3	15.7	4.3	3.3	28.5	28.6	4.9 (390)
교사	3.2	26.7	60.2	13.7	0.2	1.8	47.4	10.5	2.0 (561)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부모조사의 경우 아동에 자신의 자녀도 포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와 교사 모두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모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던 반면, 교사는 ‘보육과 교육은 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한편 ‘해당 교사의 보복이나 비난 등 해당 아동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라는 응답비율은 부모가 교사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IV-3-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보육/교육은 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해당 교사의 보복이나 해당 아동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부모	48.1	1.7	10.8	2.3	1.1	15.6	15.3	100.0(112)
교사	71.2	11.9	1.7	-	-	5.1	10.2	100.0(59)

주: 부모조사의 경우 1, 2순위를 응답받았고, 본 결과는 1순위 결과임.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2.6으로 동의하지 않는 편에서 보통 정도의 동의를 나타냈으며, 교사에 비해 부모의 동의정도가 다소 높았다. 부모의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은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었다.

〈표 IV-3-6〉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단위: 점(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
부모	2.6	2.4	2.6	2.6	2.4	2.2	2.3	2.3	(1,139)
교사	2.6	2.2	2.3	2.3	2.1	2.0	2.3	2.3	(1,247)

주: 1) ①'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 ②'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③'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④'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⑤'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⑥'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⑦'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 ⑧'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

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 정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는 상대적으로 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1회라는 응답이 58.2%로 과반수였던 반면, 교사는 2회라는 응답이 47.8%로 절반 가까이였다.

〈표 IV-3-7〉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부모	58.2	18.9	6.5	16.4	100.0(363)
교사	15.8	47.8	15.2	21.2	100.0(1,231)

주: 교사의 경우 최근 1년간 교육 횟수를, 부모의 경우 육아기간 전체 중 교육 횟수를 질문함.

1회당 평균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간 또한 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응답하였다. 부모는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9.5%로 절반인 반면, 교사는 1~2시간이라는 응답이 52.4%로 과반이었다.

〈표 IV-3-8〉 1회당 평균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계(수)
부모	49.5	45.3	3.9	1.3	100.0(363)
교사	10.0	52.4	22.9	14.7	100.0(1,231)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의 효과 여부에 대한 응답도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유사하게 과반이었으나, 큰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부모는 25.0%, 교사는 41.8%로 교사의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

〈표 IV-3-9〉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의 효과 여부

단위: %(명)

구분	큰 효과가 있었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	별 다른 효과가 없었음	전혀 효과가 없었음	잘 모르겠음	계(수)
부모	25.0	57.6	13.0	0.9	3.5	100.0(363)
교사	41.8	52.7	3.5	-	2.0	100.0(1,231)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모와 교사 모두 소집단 강의 및 강연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모는 1대1 개별교육을 꼽은 반면, 교사는 대집단 및 강연을 선호하여 차이를 보였다. 한편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를 통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교사가 더 선호하였다.

〈표 IV-3-10〉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단위: %(명)

구분	대집단 강의 및 강연	소집단 강의 및 강연	1:1 개별 교육	집단 토론	온라인 교육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를 통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 관련 책자 제공	계(수)
부모	4.0	40.9	34.0	8.0	2.3	6.1	4.6	100.0(1,139)
교사	15.7	50.8	4.4	8.7	3.8	14.1	2.4	100.0(1,247)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로 부모는 상담센터 전문가를 가장 선호한 반면, 교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아교육이나 보육과 교수, 심리학 전공 교수를 더 선호하였다.

〈표 IV-3-11〉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

단위: %(명)

구분	유아교육/보육과 교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심리학 전공 교수	상담센터 전문가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기타	계(수)
부모	6.7	3.4	4.7	16.5	38.0	0.3	30.4	0.1	100.0(1,139)
교사	2.6	3.0	3.8	7.6	35.4	0.2	47.3	0.1	100.0(1,247)

라.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와 교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모는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꼽았으며, 교사는 ‘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아동의 기질 및 행동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부모는 1.1%인 반면, 교사는 7.9%로 교사의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IV-3-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부모	41.7	1.5	27.7	16.0	6.0	4.3	1.1	0.8	0.7	0.2	100.0(1,139)
교사	47.2	0.3	13.5	15.6	9.1	5.2	7.9	0.2	0.8	0.3	100.0(1,247)

주: ①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②원장이나 교사들 간의 갈등, ③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④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⑤영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 ⑥학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⑦아동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⑧기관 차원의 관리 및 모니터링 부족, ⑨정책적 지원의 부족, ⑩기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로 부모는 ‘교사양성과정 강화’,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기관 내 CCTV 설치’, ‘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부모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평가 및 상담’에 대해서는 교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3-1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계(수)
부모	22.7	28.7	13.3	4.3	4.5	0.7	7.6	2.0	7.6	1.3	2.5	0.7	3.8	0.2	100.0(1,139)
교사	27.7	17.1	23.7	1.2	6.7	0.5	1.0	0.1	1.4	0.2	7.9	6.4	6.1	0.1	100.0(1,247)

주: ①유치원/어린이집 인력 확충, ②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③교사 처우 개선, ④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⑤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실시, ⑥신고의무제 강화, ⑦기관 내 CCTV 설치, ⑧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⑨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⑩학대 원장 및 학대 교사 명단 공개, ⑪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⑫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평가 및 상담, ⑬교사의 인·적성 검사 강화, ⑭기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는 부모와 교사 모두 양육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모는 부부 및 가족갈등,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을 꼽았으며, 교사는 부부 및 가족갈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꼽았다.

〈표 IV-3-14〉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부모	42.6	7.0	15.4	8.8	1.7	3.5	8.4	6.5	5.4	0.6	0.1	100.0(1,139)
교사	35.5	13.8	16.2	8.4	1.0	1.9	7.0	7.6	7.9	0.6	-	100.0(1,247)

주: 1) ①양육스트레스, ②사회·경제적 스트레스, ③부부 및 가족갈등, ④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⑤중독(술, 도박, 게임 등) 문제, ⑥자녀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⑦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 ⑧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 ⑨부모 역할에 대한 무지, ⑩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⑪기타
 2) 부모조사의 경우 1, 2순위를 응답받았고, 다음은 1순위 결과임.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로 부모는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의무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IV-3-15〉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단위: %(명)

구분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홍보	양육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기타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아동학대 관련 법규 홍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기타	계(수)
부모	25.9	16.4	41.5	8.8	4.4	2.7	0.3	100.0(1,139)
교사	48.0	20.3	18.7	7.6	1.6	3.5	0.2	100.0(1,247)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경우 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는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V-3-16〉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부모	1.8	28.3	4.3	14.3	34.2	16.6	0.5	100.0(1,139)
교사	0.7	43.6	1.4	12.4	22.1	19.3	0.4	100.0(1,247)

주: 1) ①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아서, ②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③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서, ④신고 시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⑤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⑥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⑦기타

마.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1.7~3.6점까지 분포가 넓게 나타났는데, 모든 항목에 대해 교사의 인지 정도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다. 교사는 모든 항목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잘 모르는 편이었다. 부모의 인지도가 특히 낮았던 항목은 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표 IV-3-17〉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단위: 점(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부모	2.1	2.5	1.9	1.7	2.1	1.9	2.3	2.2	2.1	2.2	2.2	(1,139)
교사	3.2	3.5	3.5	3.3	3.6	3.1	3.2	3.6	3.5	3.4	3.3	(1,247)

주: 1) ①유아 대상 체벌을 금지함, ②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유치원을 폐쇄함, ③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④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⑤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취업을 제한함, ⑥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로 기존에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됨, ⑦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음, ⑧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함, ⑨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⑩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⑪2일 이상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함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정도가 높음.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에 있어서도 교사는 70% 이상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반면, 부모의 경우는 5% 정도만 정확히 알고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V-3-18〉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지금 번호로 정확히 알고 있음	과거 번호로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수)
부모	5.2	1.1	93.7	100.0(1,139)
교사	71.8	10.4	17.8	100.0(1,247)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부모에 비해 교사의 인지 정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잘 모르는 편에 가까웠고, 교사는 모든 항목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표 IV-3-19〉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

단위: 점(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부모	2.1	2.4	2.4	2.5	2.3	2.6	2.5 (1,139)
교사	3.3	3.6	3.6	3.6	3.5	3.7	3.6 (1,247)

주: 1) ①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②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함, ③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어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④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⑤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⑥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⑦신고 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함
2)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나타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부모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0.6%로 대부분이었던 반면, 교사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70.0%로 완전히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다.

〈표 IV-3-2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도움이 될 것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도움이 안 될 것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평균	계(수)
부모	24.3	66.3	8.5	0.9	3.1	100.0(1,139)
교사	10.7	19.2	57.8	12.2	2.7	100.0(1,247)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와 교사 모두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부모는 실제적으로 CCTV를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던 반면, 교사는 CCTV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표 IV-3-21〉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CCTV를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녹화내용이 지워져서 제대로 확인 못하므로	CCTV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기타	계(수)
부모	47.5	31.9	11.6	5.7	3.3	100.0(106)
교사	41.4	2.1	1.9	40.9	13.6	100.0(374)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로 부모는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라는 응답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에 대해서는 부모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교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3-22〉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부모	20.8	14.0	4.7	4.8	26.5	3.7	14.9	2.3	8.0	0.2	100.0(1,139)
교사	33.8	11.1	3.6	6.3	8.1	5.6	22.3	2.9	5.9	0.3	100.0(1,247)

주: 1) ①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②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④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⑤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⑥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⑦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⑧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⑨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⑩기타

2) 부모조사의 경우 1, 2, 3순위를 응답받았고, 다음은 1순위 결과임.

4. 소결

가. 학부모의 인식

아동학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7.2%에 불과했다. 특히,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영아 부모, 어린이집 부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는 실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유아보다 적지만, 신체적, 언어적으로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더 취약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수준이 유치원보다 높았던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보도빈도가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모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경험 관련해서는 성적 학대에 비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했다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부모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훈육 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신체 학대와 정서학대와 관련된 행위보다 행위 경험 비율은 낮았지만 성학대나 방임 경우에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와 술, 약물, 컴퓨터, 핸드폰에 중독되어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있는 행위 등은 대체로 지속적이라는 응답비율이 30~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학대 관련 행동을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라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노가 조절되지 못할 때 학대 관련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부모들이 학대 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감정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무단결석했을 때 기관에서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다는 동의서는 아직 절반 이상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모르겠다든 응답이 37.1%가 넘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비

율이, 유아 부모에 비해 영아 부모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와 성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른 학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와 성학대는 4점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행위 3.8점 이상으로 나타나 인식 수준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나, 방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임 행위 대부분이 3.5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부모들이 방임이 아동학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28.6%였고, 위로에 그치는 비율이 28.5% 수준이었으며, 경찰이나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8.0%에 불과하였다.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이거나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신고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가 48.1%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내 자녀가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1순위로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가 55.7%로 가장 높은 반면, 다른 아동의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에는 조치사항 1순위로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알린다가 51.2%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정도(체벌지지도)가 아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이나,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한두 번 맞고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정보는 TV 등 언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인 92.4%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관련 지식을 얻는 비율은 낮았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특성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모일수록 상대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듣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영유아 발달특성이라고 응답하였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지적한 사항은 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 꼽은 것은 교사 양성과정 강화와 기관의

인력확충이었다.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은 양육스트레스였다. 다음으로 부부 및 가족갈등 비율 등이었다. 이러한 원인에 맞게 양육스트레스 경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이해, 주의사항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CCTV가 아동학대에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부분의 부모가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CCTV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나. 교사의 인식

교사들의 경우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는 가정에서의 학대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어린이집, 유치원 순이었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 행동 중 학대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모든 행동에서 4점 척도의 3.2 점 이상으로 대체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게서 신체적·행동적 징후를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서적 학대로 인한 행동적 징후의 목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실제로 행한 조치는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다른 교사나 원장으로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경우 순이었다. 향후 아동에게서 징후 발견 시 취할 행동의 1순위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 부모와의 개별 면담 순으로 실제로 행한 조치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향후에는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기관에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를 받은 비율이 62% 정도로 받지 않은 경우와 모르겠다는 비율도 38%에 달했다.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4점 척도에 2.0~2.6점으로 동의하지 않는 쪽에 가까운 점수가 더 많았으며, '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에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목격 혹은 본인이 행한 적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신체적 학대 행동 중 영유아의 머리카락이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을 목격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본인이 한 적이 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정서적 학대 행동 중에서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을 목격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본인이 한 적이 있는 행동은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이었다. 성학대 행동과 방임행동에 대한 목격한 비율은 각각 0.2%, 1.8%로 다른 범주의 행동 목격 비율보다 낮았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에 행한 조치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피해아동을 위로하는 경우,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하는 경우 순이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목격 혹은 들었을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향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취할 행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 가해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하겠다는 응답 순이었다. 가정에서의 학대 의심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에서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하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줄이기 위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 1년간 대부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1년간 받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는 2회, 시간은 평균 1~2시간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주최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어린이집,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이었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 여부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4점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관련 교육 일정 등을 알지 못해서가 절반이었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1순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피해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 피해아동 발견 방법

순이었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집단 강의 및 강연이라는 응답비율이 과반수였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담당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담센터전문가였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의 1순위 응답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순이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의 1순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사의 처우 개선, 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순이었다.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의 1순위는 양육스트레스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부 및 가족갈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순이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한 홍보,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순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 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순이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4점 척도에 3.1~3.6점으로 대체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모든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4점 척도에 평균 3.3~3.7점으로 인지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4점 척도에 평균 2.7점으로 보통에서 약간 도움이 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CCTV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CCTV를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있으나 활용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만족

하는 편 이상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은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순으로 나타났다.

다. 학부모와 교사 인식 비교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부모가 교사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교사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와 교사 모두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와 교육 시간은 상대적으로 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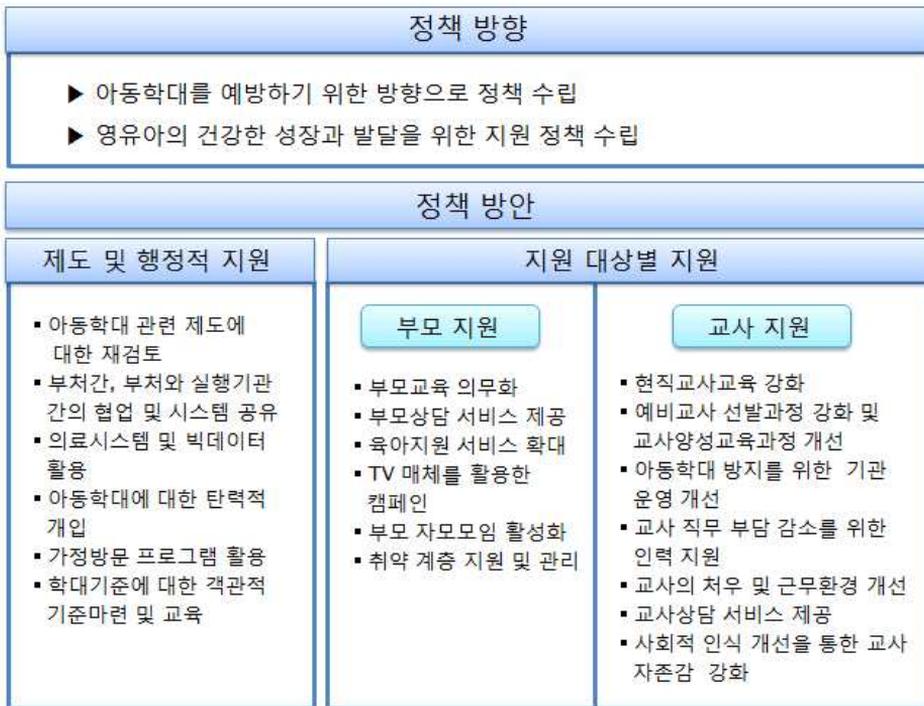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와 교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로 부모는 '교사양성과정 강화',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는 부모와 교사 모두 양육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로 부모는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의무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와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의 모든 항목에 대해 교사의 인지 정도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다.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로 부모는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라는 응답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V. 정책 제언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메타분석, 국내외 정책 분석,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최근 몇 년 간 관련법들이 신설되고 개정되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현존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과 정책 방안은 [그림 V-1-1]과 같다.



[그림 V-1-1]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

1. 정책 방향

최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은 사후처리에 비중을 둔 경향이 있다. 해외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해외 선진국은 사후처리에도 신경을 쓰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차원의 협력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이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는 영유아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동학대가 진행된 이후 사후조치보다는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먼저 찾아서 가능한 요인을 제거하고, 아동을 접하는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사전에 미리 교육시키고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정책에 비중을 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의 극단적인 면이 부각되는 것에 맞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영유아 사례나 현장에서의 다양한 예방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도 및 행정적 지원

가.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

1) 학대 발생 시 기관 폐쇄 조항 개정

학대 발생 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한 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아동학대 발생 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이 폐쇄될 경우 채용하고 있는 원아들은 당장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려우며, 기관에 근무했던 교직원들은 즉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채용하고 있는 원아들과 나머지 종사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 발생 시 기관을 폐쇄시키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인 원장과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한 당해 연도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후 원아와 교직원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을 폐쇄하거나 양도하거나 하는 절차는 그 이후에 진행하면 된다.

2)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진술조력인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지원기관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와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둬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부처 간, 부처와 실행기관 간의 협업 및 시스템 공유 필요

각 부처에서 많은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 센터들과 종사자들 간의 공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담당 부서 간의 협업, 전달체계 간의 공동사업, 종사자들 간의 상시 간담회 개최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독일 사례에서처럼 담당 부처와 실행 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취학관리 전담기구, 위기아동발굴 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확대하여 장기결석, 학업 중단 등 위기학생 정보를 복지부 및 교육부 등의 관련부처와 공유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부처와 민간 등이 보유한 요보호 위기아동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의료시스템 및 빅데이터의 활용

영유아 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가 노출되는 최초의 사회적 시스템은 병원이므로 보험공단의 예방접종기록을 통해 필수예방접종에서 누락된 아동을 추적하고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 하에서 접근 가능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유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집단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개인의 권리도 아동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데이터 공유와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양육수당 미신청 등 아동의 위기상태와 관련성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예측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등 조기지원을 하고 아동학대를 신고, 보호 조치하는 장치이다. 향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 아동학대에 대한 탄력적인 개입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 판정과 조치 시 학대사례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의 3가지로 판정하고, 일반사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사례 안에서도 잠재적 학대사례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후 학대의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교육이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영국 사례에서 학대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인 개입을 하고 긴급조치가 아닌 경우라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활용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위스타트, 포괄적 보육서비스, 다문화가정 양육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포함한 복지서비스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의 재학대를 예방하며, 재학대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바. 학대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및 교육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유아 학대에 대해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가 있다. 학대의심행위를 목격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였지만, 심하지 않다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를 포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원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학대 판별 매뉴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원 관계자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의 정확이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판별 시 훈육과 학대를 잘 구별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지원대상별 지원

가. 부모를 위한 지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는 가정에서의 학대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 의무화

가정에서 영유아 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부모가 영유아

의 특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학대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교육은 필수적이다.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역사회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TV 방송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러한 교육이 효과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경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모는 이러한 부모교육이나 매체를 접할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모에게 지원하고 있는 비용과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예비부모가 임신하여 국민행복카드(과거 고운맘 카드)를 받을 때 1차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부모가 아동수당이나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때 2차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부모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관련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대부분 부모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때 실시하는 부모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시간과 장소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받을 때는 임신 시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보육료·교육비 지원의 경우 처음 기관에 입학할 때 실시하는 부모교육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교육내용에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함께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상황이나 필요에 맞추어 추가적인 맞춤형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취약계층 등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존의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등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본 연구의 메타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원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성격 문제 및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발생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내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육아스트레스나 가족 갈등을 경험하였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담은 부모의 감정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우울감 극복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시 2016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224개소(기초 209개, 광역 15개)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 중 정신건강 상담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육아스트레스와 가족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서비스는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될 수도 있지만, 육아 중인 부모가 필요할 때 상담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육아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이를 상담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아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머니들은 대부분 육아를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과거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잠시라도 육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늘 옆에 존재했지만, 현재의 핵가족 하에서는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다. 따라서 남편이 육아를 하는데 동지로서 또 한 팀으로 적절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남편 또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아직 직장문화가 육아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지 못하고, 육아를 위한 배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이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쉬지 못하고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 한부모나 조손 가정에서 홀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가 절실하다. 현존하는 개인 육아지원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와 지역사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서비스의 규모가 부족하여 부모가 필요할 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육아지원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현존하는 서비스를 부모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4) TV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부모가 아동학대 신고 번호를 알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주로 TV나 신문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아동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이나 캠페인을 할 때 TV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2016년 초에 방영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출연자가 강남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장면이 방영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큰 홍보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젊은 부모들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모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부모 자조 모임 활성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원인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해소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적용할 수는 있으나,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부모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드물다. 따라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부모들의 자조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미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주변 부모들과의 모임이나 온라인 사이트의 카페 등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모임이나 활동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통해 장소를 제공하고, 정부 차원에서 상담사나 강사를 파견하는 등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어머니가 부재할 경우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다. 어머니가 부재할 경우 체벌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적이어서 아동학대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나 메타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취약할 경우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전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생계형 맞벌이나 고소득 전문직 부모들의 경우는 방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정책에도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현재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방향은 제시되었으나, 향후 이러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촘촘한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빅데이터를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센터를 두어 사전 예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관리센터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받은 지역사회 인프라 담당자는 대상 영유아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나. 교사를 위한 지원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비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서 아동학대에 교사의 요인이 크게 나타나 교사 지원을 통한 아동학대 사전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현직교사교육 강화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학대는 현직교사와 관련이 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관련 교육이 필수적이다. 최근 아동학대가 이슈화되면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관련 연수를 받았으며, 4회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도 꽤 높은 편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교사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시행할 때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소집단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행동 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든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화가 날 때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 방안을 다루어야 한다.

2) 예비교사 선발과정 강화 및 교사양성교육과정 개선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양성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교사양성교육과정 개선 이전에 예비교사 선발과정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 변화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본성은 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선별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비교사 선발 시 인성검사를 필수로 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면접 시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치원 교사양성 및 신규 진입 시에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육교사에게도 동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대학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와 활용방안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검증된 예비교사를 선발한 후에는 이들이 영유아 교사로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양성교육과정에 인성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인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과목을 통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교사양성을 위한 모든 교과목에서 예비교사의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교사양성교육과정 중에 예비교사의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했다고 하여 누구나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교사의 인성을 여러 번 검증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었을 때만 교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운영 개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학대는 주로 교사와 영유아가 1대1로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독일 유치원의 경우에서처럼 한 공간에 최소 2명

이상의 성인이 서로를 지켜볼 수 있는 운영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 학급에 여러 명의 교사가 함께 일할 수도 있으나, 성인 2명이 모두 교사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원장, 원감, 보조교사, 교생, 자원봉사자 등 늘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 서로의 행동을 조심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서로 논의하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기관에서 아동학대는 발표회 등 집단 행사를 준비하거나 밥 먹이거나 낮잠 자기 등의 생활지도 시간에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집단으로 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일상생활 관련 시간에 보조교사 등 지원인력을 투입하여 교사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함으로써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교사 직무 부담 감소를 위한 인력 지원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꼽았다.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작은 효과이긴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시설 수준이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의 근무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교사의 직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교사의 직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교사가 보육과 교육이라는 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교사가 효율적으로 영유아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시간 영유아들과 함께 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오전 오후 2교대제를 통해 영유아를 돌보는 시간을 조정하고 전반적인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도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5) 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의 원인 중 일부는 교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있다. 몇 년 전부터 언론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보도와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아동학대가 일정 부분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강도가

높은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고 있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대부분의 공간이 영유아의 보육이나 교육을 위해 구성되어 있고, 교사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다. 교사를 위한 휴게실이나 성인 화장실이 없는 기관이 많고, 심지어는 교사업무를 위한 공간이 없는 어린이집도 많다.

근무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근무환경이 일정부분 아동학대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면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교사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교사상담 서비스 제공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부모와 교사 모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사는 두 번째 원인으로 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꼽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는 감정노동을 하는 직무에 종사하므로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반면 이러한 감정을 풀 기회가 별로 없다. 따라서 교사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사상담 서비스는 일반적인 정신상담 서비스와는 차별화하여 교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상담은 개인상담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교사 개인의 소진을 막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같은 처지에 있는 교사들과 집단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사상담은 교사의 감정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7)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교사의 자존감 강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는 5% 정도이며 80% 정도의 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설문결과를 보면 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

이집의 학대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아동 학대를 걱정하지 않는 비율은 17.2%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영향도 크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보도나 부모의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와 행동은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모에게 친근한 방송매체 등을 통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의 하루일과를 보여주며 교사의 전문성과 아동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거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보육과 교육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교사의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 *강성애(2003). 유아기 부모의 생활사적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및 방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영·김희균(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 관계부처 합동(2014. 2. 2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 관계부처 합동(2015. 5. 12).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안).
- 김광혁(2006). 가족배경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빈곤과 가족소득,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45, 53-74.
- 김광혁(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6.
- 김미숙(2014). 일본의 아동보호체계간 연계성 고찰: 동경도 아동가정지원센터와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4(7), 125-135
- *김미예·박동영(2009).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아동간호학회지, 15(4), 375-382.
- 김미정·염동문(2012). 아동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09-430.
- *김미희(200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상미·남진열(2014). 지역사회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학대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아동학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 표시된 논문은 메타분석에 활용된 논문임.

49, 211-231.

- 김소연·전중설(2015). 아동학대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7(4), 387-410.
- 김수정·정익중(2013). 아동학대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중단 연구(2013).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순희(2002).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아림·탁영란(2016).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1), 81-94.
- *김영미·강지연(2015). 보육교사가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1(단일호), 133-161.
- 김유경(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2018(143), 30-43.
- *김윤희(2016). 영아반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영아학대 인식이 영아학대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563-583.
- 김은정(2016).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보건복지포럼, 2016(3), 31-43.
- 김은주(2012). 기초연구: 국내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중재를 위한 연구의 메타분석. 놀이치료연구, 16(3), 1-13.
- 김잔디(2014).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서울법학, 22(2), 475-502.
- 김준호·김선애(1997).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97.9), 5-28.
- 김춘경·이주옥·송영주(2009). 국내 신문기사 및 연구논문을 통해 본 아동학대 동향 연구. 놀이치료연구, 13(3), 83-97.
- 김평화·윤혜미(201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1, 217-238.
- 나은숙·정익중(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35-49.
- *도현미(2014). 보육교사의 영유아인권인식이 영유아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현심·김민정·김상원·최미경·김재희(2011).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5), 85-101.
- *도현심·신나나·김민정·박보경·나지혜(2012).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5), 107-119.
- 민대기(2014). 환경적 요인이 아동 성장기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5(2), 203-304.
- *박동영(2012). 유아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 구조모형.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동영(2013). 유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언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9), 4368-4379.
- 박진아·이경숙(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요구도에 관한 연구-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5(3), 27-54.
- 배상균(2015).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의“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8(4), 59-96.
- *백경숙(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181-198.
- 백종립·정익중(2013). 부부폭력목격 경험과 학대경험이 아동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과학연구, 29(1), 121-142.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2015. 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법무부(2016. 2). 2016년 법무부 업무계획.
- 보건복지부(2016). 2016 아동분야 사업안내 II.
- 보건복지부(2015. 1.).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서동미·연선영(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영유아학대에 대한 인식과 영유아학대 실제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와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0(1),

193-216.

- *석현숙(2001). 유아가 경험하는 학대유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수진(2016).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선경·양지혜·정익중(201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8, 331-358.
- 안재진(2002).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시 학부모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영임(2016). 면담자료(2016년 8월 24일 면담).
- 여성가족부(2016).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 여진주(2008).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경상북도 동부권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28(1), 3-26.
- 여진주(2010). 빈곤과 부부불화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32, 99-127.
- 오미희(2015). 일본의 아동학대예방 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 414-417.
-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정부의 아동학대예방 대책 이대로 좋은가-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제도개선책 발표와 정부 대책 긴급 토론회 자료집.
- 원혜욱(2015).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18(4), 31-60.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n.d.). 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성연(2015). 유아교사의 직무환경 만족도와 자아개념의 아동학대경향에 대한 관계.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선(2012).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정아·정익중(2014). 방임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7, 157-183.

윤선오·박복숙(20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 연구. 복지행정논총, 21(2), 25-59.

이경숙·박진아·신의진(2015). 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 301-327.

이경숙·박진아·최명희(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27-252.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양미선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육아정책연구소·보건복지부.

이미화·최윤경·이정원·도남희·권미경·박진아·이혜민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육아정책연구소·보건복지부.

이복희(2007).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13(1), 99-121.

이재연·김지윤(2002).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발견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8, 1-18.

이재연·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24(2), 63-78.

*이주희·이양희(2000). 아동 및 부모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4(2), 113-123.

이현기(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77-108.

*이현순(2014).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동호(2008).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 고찰-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보호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6(4), 77-95.

장화정·윤은영·박은혜(2013). 영아대상 방임의 실태 및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1(3), 93-113.

전영실·노성훈(2011).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혜숙(2008). 아동학대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지원이 아동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55-77.
- 정수정·류방란(2012). 독일의 이주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비교교육연구* 22(2), 47-77.
- 정익중(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조숙현·윤혜미(2005). 어머니의 성격특성,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이 아동학대잠재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9, 15-31.
- 주소영·이양희(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9(3), 127-156.
-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허진년(2014). 보육교사의 인가사회학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에 폭력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성동(2015). R을 이용한 메타분석. 서울: 학지사.
- 황인옥(201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교육*, 24(3), 329-345.
- Arijali. (2016). 면담자료(2016년 8월 19일 면담).
- Becker, L. A.(2000). Effect size (ES).
- Belsky, J. (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developmental-e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3), 413.
- Black, D. A., Heyman, R. E., & Slep, A. M. S. (2001). Risk factors for child physical abus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2), 121-188.
- Butchart, A., Harvey, A. P., Mian, M., & Furniss, T. (2006).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a guide to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 Buchholz, E. S., & Korn-Bursztyn, C. (1993). Children of adolescent mothers: are they at risk for abuse?. *Adolescence*, 28(110), 361-382.
- Child Trends. (2016). Comprehensive Child Development Program, <http://www.childtrends.org/?programs=comprehensive-child-development-program>에서 2016년 7월 3일 인출.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1). About CAPTA : A Legislative History.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ermanency/legal-court/fedlaws/>에서 2016년 6월 15일 인출.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6). Federal Laws Related to Permanency,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ermanency/legal-court/fedlaws/>에서 2016년 6월 15일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9595/Working_Together_to_Safeguard_Children.pdf에서 2016년 11월 8일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United Kingdom. (2016). Children's Services in England.
- Dreber, Marie-Luise(2009).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Child and Youth Services in Germany http://www.cipcolumbus.org/uploads/7/0/3/3/7033486/child_and_youth_services_in_germany_0912.pdf에서 2016년 9월 20일 인출.
- Duggan, A., Caldera, D., Rodriguez, K., Burrell, L., Rohde, C., & Crowne, S. S. (2007). Impact of a statewide home visiting program to prevent child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31(8), 801 - 827. <http://doi.org/10.1016/j.chiabu.2006.06.011>에서 2016년 9월 20일 인출.
- 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What youth welfare office do: questions & answers. http://www.lwl.org/lja-download/unterstuetzung-die-ankommt/extern/pocketbroschuere/Jugendamt_English.pdf에서 2016년 8월 20일 인출.

- Giles-Sims, J. (1998). Current knowledge about child abuse in stepfamilies. *Marriage & Family Review*, 26(3-4), 215-230.
- Hazler, R. J., & Denham, S. A. (2002). Social isolation of youth at risk: Conceptualiza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JCD*, 80(4), 403.
- Healthy Families America. (2016a). History. <http://www.healthyfamiliesamerica.org/history>에서 2016년 7월 3일 인출.
- Healthy Families America. (2016b). The Healthy Families America Strategy, <http://www.healthyfamiliesamerica.org/the-hfa-strategy-1>에서 2016년 7월 3일 인출.
- Kathryn, L. H., & David, A. W. (2002). Child Nelect: Developmental issues a nd outcomes. *Child Abuse and Neglect*, 26, 679-695.
- Laming (2003). The Victoria Climbié Inquiry. Retrieved from <http://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cm57/5730/5730.pdf> 에서 2016년 9월 20일 인출.
- Lamont, A. (2010).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NCPC Resource Sheet). Retrieved from <http://www.aifs.gov.au/nch/pubs/sheets/rs17/rs17.html>
- Mills, C. (2004). Problems at home, problems at school: The effects of maltreatment in the home on children’s functioning at school. An overview of recent research.
- NAEYC(1996).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Early Childhood Professionals to Prevent Child Abuse.
-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2011). Good practice by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 Oshana, D., Harding, K., Friedman, L., & Holton, J. K. (2005). Rethinking healthy families: A continuous responsibility. *Child Abuse and Neglect*, 29(3), 219 - 228. <http://doi.org/10.1016/j.chiabu.2005.02.006>에서 2016년 7월 26일 인출.

- Ritchie, G. (2016). 면담자료(2016년 10월 19일 면담).
- Schumacher, J. A., Slep, A. M. S., & Heyman, R. E. (2001). Risk factors for child neglec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2), 231-254.
- Shonk, S. M., & Cicchetti, D. (2001). Maltreatment, competency deficits, and risk for academic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3-17.
- Springer K. W., Sheridan, J., Kuo, D., & Carnes, M. (2007). Long-term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Results from a large population-based sample of men and women. *Child Abuse and Neglect, 31*(5), 517-530.
- Stein, T. (2000).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Creating a false dichotom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right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81*(6), 586 - 592. <http://doi.org/10.1606/1044-3894.1070>에서 2016년 7월 26일 인출.
- Stith, S. M., Liu, T., Davies, L. C., Boykin, E. L., Alder, M. C., Harris, J. M., et al. (2009). Risk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1), 13-29.
- Stoltenborgh, M., van IJzendoorn, M. H., Euser, E. M., & Bakermans-Kranenburg, M. J. (2011). A global perspective on child sexual abuse: meta-analysis of prevalence around the world. *Child maltreatment, 16*(2), 79-101.
- Straus, M. A., S. L. Hamby, D. Finkelhor, D. W. Moore, & D. Runyan.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Task Force on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2003). New findings demonstrate early childhood home visitation prevents child maltreatment, part of the Guide to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http://www.thecommunityguide.org/violence/viol-int-homevisit.pdf>.
- United Nations. (1989).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Journal of Chemical Information and Modeling. http://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 에서 2016년 6월 15일 인출.

United States Advisory Board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91). Creating caring communities. Blueprint for an effective federal policy on child abuse and neglect. (Rep.No.9-199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hitener, E. M. (1990). Confusion of confidence intervals and credibility intervals in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3), 31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Yana. (2016). 면담자료(2016년 10월 21일 면담).

厚生労働省 『子ども虐待対応の手引き』 (2009年、改正版)

[법령 및 협약]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79호, 2015.2.3., 일부개정]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2556호, 2014.9.1., 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타법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172호, 2016.5.29., 개정, 2017.5.30.,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정]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001호, 2016.2.3.,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법률 제13574호, 2015.12.22., 일부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1989. 11. 20 채택, 국문)

[보도자료]

광주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6. 2.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발족 기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교육부 보도자료, 2015. 1. 27.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교육부 보도자료, 2016. 3. 14.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확정·발표-체험 중심 안전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 2016. 3. 18.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16. 5. 19. 19일, 교육부 소관 2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보도자료, 2016. 12. 14.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개발·보급.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4. 2. 28. 아동학대 신고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공동 대응.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6. 10. 13.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학대 예방 서명.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29. 정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다.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6. 11. 14.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 강화.

대구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6. 2. 24. 대구지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

법무부 보도자료, 2014. 9. 3. 아동학대 범죄 법무부 대책.

법무부 보도자료, 2015. 12. 29. 범죄피해자의 미소(Smile), 법무부가 찾아드립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2016. 5. 19. 아동학대 신고자, 강력범죄 신고자처럼 신변 보호.

법무부 보도자료, 2016. 12. 28. 법무부, 서울서부에 전국 10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법무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2. 31. 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28.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2. 25. 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한

영유아 대상 양육환경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5. 13.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 수립.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7. 31.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2. 22.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3.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설명자료, 2016. 3. 30. '아동학대 하는데 정부 예산증액 '멈칫'...용두사미로 끝나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8.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 본격 실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5. 2,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약속.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5. 19. 아동학대 신고 전년동기 대비 45.5% 증가-「아동학대 방지대책」추진실적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9. 29.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 반면교사 삼아 대책 보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0. 7. 학대 대응 강화 위해 학대아동 보호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0. 11. 복지부 차관, 아동학대 관련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0. 26.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고민을 돕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1. 9.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실시.

보건복지부·교육부·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6. 4. 1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도자료, 2016. 11. 18.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아동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교육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도자료, 2015.

11. 19.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6. 5. 12. '5월 가정의 달 특집'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방영-여성가족부·EBS 공동제작, 'EBS 평등채널e' 통해 방송-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6. 6. 15. 『가족행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본격 개시.

[인터넷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PAGE=9&page=1. 2016년 10월 10일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PAGE=5&topTitle=아동인권 증진 지원. 2016년 6월 20일 인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child.seoul.go.kr/archives/288>. 2016년 10월 10일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p/cpe/cp_cpe_f001.do. 2016년 10월 20일 인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install. 2016년 12월 31일 인출.

후생노동성(일본) 홈페이지. <http://www.mhlw.go.jp/bunya/kodomo/dv12/03.html>. 2016년 12월 16일 인출.

[신문기사 및 TV 방송]

KTV 국민방송(2016. 3. 18). 무단결석 아동조사 유치원까지 확대.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19896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뉴스 1(2016. 3. 18). "아동학대 조기발견하자"...유치원·어린이집 대응매뉴얼개발" (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948345>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뉴스 1(2016. 4. 25).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학대 '35건'. <http://>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019546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연합뉴스(2016. 10. 14). 어린이집 무단결석하면 원장·선생님이 가정방문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155500017.HTML>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연합뉴스(2016. 3. 24). '아동학대 예방'...유치원 교실 CCTV 설치율 90%로 확대 <http://www.yonhapnews.co.kr>에서 2016년 4월 25일 인출.

연합뉴스(2016. 9. 26). 유성엽 “국공립 유치원교실 CCTV 설치율 3.9%…사립은 78.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708351>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헤럴드경제(2016. 5. 24). 경찰 “아동보호시설 내 학대혐의 없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055369>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기타]

교육부 고시(2016).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 2016-90호, 2016.3.15., 제정]

교육부 공문(유아교육정책과-4819, 2016. 9. 30).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 보완사항 안내.

교육부 내부자료(2016. 11.).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방안.

Abstract

Plans to Further Safe Childcare Education Environments(Ⅱ): Reality of awareness of young child abuse in home and institutions and prevention measures of it

Eunyoung Kim, Wonsun Park, Jaehee Lee, Hyemin Le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topic of 'Child abuse targeting of young children' being the second year study of 「Plans to Further Safe Childcare Education Environments」, which is composed of 3-year-study. Social awareness highlighted as child abuse happens more and abuse targeting of young children especially has a high rate to result in serious results even among child abuse. Thus, this study intends to find ways to prevent of young child abuse in advance through teacher's awareness in child care center and kindergarten that care and educate of young children and that of parents who raise of young children.

For this, definition of child abuse and features of it were understood, with causes and effects, related awareness of it reviewed, and prevention system along with institutions related to child abuse in developed countries and our country were studied. Through survey, awareness related to young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 kindergarten, home was analyzed, and supporting policy to prevent young child abuse was proposed based on this.

As a result of pilot study review, ratio of neglect lessens as the age of child increases, but physical abuse and sexual abuse tend to increase. Although many people are aware of child abuse, they tend to avoid active measures such as reporting it. The ratio of parents being doers of child abuse is high with 80%. Child abuse was shown to influence adjustment matters, behavioral matters and emotional matters of children. As a result of

meta analysis done in this study, factors affecting neglect,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of young children were shown to be various including features of young children, family, teachers, local community factors and factors affecting occurrence of young child abuse uniformly were nurtur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ttachment, and maternal attitudes.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constructed overall system regarding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early detection after declaring 2016 as the first year to construct system to eliminate child abuse. Likewise, recent policies related to child abuse are having their focus moved to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rather than post-process. In foreign cases, laws of England let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gion take the task about child abuse but also admit legal positions of NSPCC, a charitable organization founded in 1884, to intervene child abuse matters. Child and Juvenile Support Act of Germany was enacted in 1991 and clarified that Jugendamt is generally responsible for prevention measure of child abuse through afterward revision.

This study conducted survey targeting parents and teachers and for the reason that they did not take any measures although they heard or witnessed abusing actions, most of them answered 'because it did not look serious to get myself included' with the highest rate as a result of analyzing surveys from both of them. Teachers were shown to have relatively longer training hours related to child abuse on average by session and more training chances related to it. The biggest reason for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 or kindergarten with the highest rate was answered 'job stress from teachers because of poor working conditions', and most parents wanted 'strengthening teacher training course' while teachers wanted 'manpower expansion for child care center and kindergarten' for number one priority to prevent child abuse. The biggest reason for child abuse to happen in home with highest rate drew responses 'nurturing stress' from both parents and teachers. Most parents wanted 'policy support to reduce nurturing stress' while teachers wanted 'mandatory training related to child abuse for parents'

for the most important and desirable measure at national levels to prevent child abuse in home.

Based on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first, policy establishment in the direction to prevent child abuse and second, importance in supporting policy for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s policy orientations to prevent child abuse. For policy plan, systematic and administrative support and support by target were proposed, divided. In systematic and administrative support, it suggested review over systems regarding child abuse, cooperation and system sharing between departments and executing institutions, medical system and big data utilization, elastic intervention towards child abuse, utilization of family visit program, foundation of objective standard for child abuse and education. As support policies for parents in support by target, it included mandatory parental education, provision of parental counseling, expansion of childcare support service, campaign utilizing TV media, activation of self-help meetings, support management for vulnerable people. Supporting policies for teachers included support for teachers, reinforcement of current teacher's training, reinforcement of selection process for pre-teachers and improvement of teacher training curriculum, structurally improvement of institution operation for child abuse prevention, manpower support to reduce burden of teachers' task, improvement of teacher's working conditions, provision of teachers counseling service, reinforcement of teachers' self-esteem through improvement on social awareness.

부 록

부록 1. 학부모 대상 설문지

부록 2. 교사 대상 설문지

부록 3. 메타분석에 활용된 연구와 각 변인별 상관 계수

부록 1. 학부모 대상 설문지

영유아 학대에 대한 부모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안전한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조성 방안 연구(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진행 관련: ☎ 한국리서치 이혜민 차장 02-3014-1052 hmlee@hrc.co.kr
전혜진 과장 02-3014-1056 hjjun@hrc.co.kr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이혜민 연구원 02-398-7727 hmlee@kicce.re.kr
김은영 연구위원 02-398-7712 keycandy@kicce.re.kr

자녀	자녀 수	총 _____ 명 (____남 ____여)	연령	첫째, 만 _____세 / 둘째, 만 _____세 셋째, 만 _____세 / 넷째, 만 _____세
취학 전 자녀	제원기관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 ※ 취학 전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 응답	장애 및 장기 질병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있음 (장애나 장기 질병 유형: _____)
응답자	연령	만 _____ 세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 대졸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원졸 이상	자녀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② 어머니
가정	가정형태 (중복)	<input type="checkbox"/> ① 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② 다문화가정 (국적: _____) <input type="checkbox"/> ③ 재혼가정 <input type="checkbox"/> ④ 위에 해당 없음	다문화 가정 국적	<input type="checkbox"/> ① 중국(조선족, 한족) <input type="checkbox"/> ②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③ 일본 <input type="checkbox"/> ④ 필리핀 <input type="checkbox"/> ⑤ 몽골 <input type="checkbox"/> ⑥ 캄보디아 <input type="checkbox"/> ⑦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가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본인 취업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취업 <input type="checkbox"/> ② 미취업	배우자 취업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취업 <input type="checkbox"/> ②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③ 해당없음
	가구 월평균 수입	월 _____ 만원	보조 양육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조부모, 유급 육아도우미 등)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소재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육아정책연구소

I.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1. 귀하는 일반적으로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 전혀 심각하지 않음						매우 심각함 →
	1	2	3	4	5	6	
1) 가정(집)							
2) 어린이집							
3) 유치원							

2. 귀하는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때 아동학대에 대하여 얼마나 우려하고 계십니까?

- ① 기관에서 학대 당할까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2-1번으로)
- ② 기관을 믿고 맡기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기관에서의 학대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 3번으로)
- ③ 기관의 교사 및 원장님을 신뢰하므로 걱정하지 않음(⇔ 3번으로)

2-1.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학대 당할까봐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하원 이후 아이 몸을 탐색함
- ② 하원 이후 아이의 표정이나 기분을 살핌
- ③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물어봄
- ④ 상황에 따라 CCTV 열람을 요청함
- ⑤ 기타 ()

II.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3. 귀하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음의 행동 중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한 적이 있는 행위에 V표 해 주십시오. 한 적이 있을 경우 빈도와 지속성을 표시해 주세요.

구분	자녀에게 한 적 있음	빈도				지속성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지난 3개월 간 대체로 지속적으로 함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어남
1)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2)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3)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리는 행위							
4)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린 행위							
5) 아이를 꼬집은 행위							
6) 아이를 잡고 흔든 행위							
7)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외의 곳을 때린 행위							
8)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힌 행위							
9)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							
10)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향을 지른 행위							
11)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위							
12)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							
13)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14)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행위							
15)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16)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행위							
17)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행위							
18)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							
19) 아이를 혼자 집 혹은 고립된 장소에 있게 한 행위							

5-3. (5번 문항 중 1개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없는 경우) 귀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 자녀일 경우와 다른 아동일 경우에 각각 우선순위별로 2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구분	1순위	2순위
내 자녀일 경우		
다른 아동일 경우		

- ①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 ②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함
- ③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 ④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알림
- ⑤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 ⑥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 ⑦ 내 자녀/피해아동을 위로함
- ⑧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⑨ 기타()

6. 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다음의 생각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				
2)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3) '사랑의 메'가 존재한다는 생각				
4) '한 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5)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6)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7) '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				
8) '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				

III. 아동학대 관련 교육 정도

7. 귀하는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어디서 알게 되었습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TV 등 언론 (⇨ 8번으로)
- ② 인터넷 (⇨ 8번으로)
- ③ 관련 책 (⇨ 8번으로)
- ④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 7-1번으로)
-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 7-1번으로)
- ⑥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 (⇨ 7-1번으로)
- ⑦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부모교육 (⇨ 7-1번으로)
- ⑧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모교육 (⇨ 7-1번으로)
- ⑨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부모교육 (⇨ 7-1번으로)
- ⑩ 기타() (⇨ 8번으로)
- ⑪ 특별한 관련 정보나 지식을 얻은 적이 없음 (⇨ 8번으로)

7-1. 자녀를 자녀를 키우면서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을 총 몇 회 받았습니까?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4회 이상

7-2. 1회당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1시간 미만
- ② 1-2시간
- ③ 2-3시간
- ④ 3시간 이상

10-1. 귀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유치원/어린이집 인력 확충 | <input type="checkbox"/> ② 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
| <input type="checkbox"/> ③ 교사 처우 개선 | <input type="checkbox"/> ④ 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
| <input type="checkbox"/> ⑤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실시 | <input type="checkbox"/> ⑥ 신고의무제 강화 |
| <input type="checkbox"/> ⑦ 기관 내 CCTV 설치 | <input type="checkbox"/> ⑧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
| <input type="checkbox"/> ⑨ 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 <input type="checkbox"/> ⑩ 학대 원장 및 학대 교사 명단 공개 |
| <input type="checkbox"/> ⑪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 <input type="checkbox"/> ⑫ 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평가 및 상담 |
| <input type="checkbox"/> ⑬ 교사의 인·적성 검사 강화 | <input type="checkbox"/> ⑭ 기타() |

11. 귀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양육스트레스 |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 <input type="checkbox"/> ③ 부부 및 가족갈등 |
| <input type="checkbox"/> ④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 <input type="checkbox"/> ⑤ 중독(술, 도박, 게임 등) 문제 | <input type="checkbox"/> ⑥ 자녀의 기질 및 행동 문제 |
| <input type="checkbox"/> ⑦ 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 | <input type="checkbox"/> ⑧ 혼혈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 | <input type="checkbox"/> ⑨ 부모 역할에 대한 무지 |
| <input type="checkbox"/> ⑩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

11-1. 귀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 |
| <input type="checkbox"/> ②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홍보 |
| <input type="checkbox"/> ③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
|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문제(가족 갈등 등)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
| <input type="checkbox"/> ⑤ 아동학대 관련 법규 홍보 |
| <input type="checkbox"/> 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

12.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아서 |
| <input type="checkbox"/> ②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
| <input type="checkbox"/> ③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서 |
| <input type="checkbox"/> ④ 신고 시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
| <input type="checkbox"/> ⑤ 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
| <input type="checkbox"/> ⑥ 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

V.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13. 2012년에 발생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201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어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2016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는 알고 계셨습니까?

관련 내용	전혀 모르고 있었음	들은 적은 있으나 잘 모르고 있었음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
1) 유아 대상 체벌을 금지함				
2)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유치원을 폐쇄함				
3) 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4) 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5) 아동학대범죄피력자는 취업을 제한함				
6)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로 기존에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됨				
7)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음				
8)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함				
9) 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10)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11) 2일 이상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함				

14. 귀하는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 ① 네(⇒ 14-1번으로) ② 아니오(⇒ 14-2번으로)

14-1.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_____

14-2. 귀하는 아동학대 신고 시 다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관련 내용	전혀 모르고 있었음	들은 적은 있으나 잘 모르고 있었음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
1) 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 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함				
3)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4)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5)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6) 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7) 신고 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함				

부록 2. 교사 대상 설문지

영유아 학대에 대한 교사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안전한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조성 방안 연구(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학대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진행 관련: (주) 한국리서치 이해민 차장 02-3014-1052 hmlee@hrc.co.kr
전혜진 과장 02-3014-1056 hjjun@hrc.co.kr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이해민 연구원 02-398-7727 hmlee@kicce.re.kr
김은영 연구위원 02-398-7712 keycandy@kicce.re.kr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연령	만 _____ 세	
소속 기관 소재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자격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① 정교사 2급	<input type="checkbox"/> ② 정교사 1급	<input type="checkbox"/> ③ 원감	<input type="checkbox"/> ④ 원장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① 3급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② 2급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③ 1급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④ 원장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 대졸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원졸 이상				
전공	<input type="checkbox"/> ① 유아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② 아동(가족)학 <input type="checkbox"/> ③ 아동(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④ 보육학 <input type="checkbox"/> ⑤ 간호학 <input type="checkbox"/> ⑥ 영양학 <input type="checkbox"/> ⑦ 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⑧ (유아)특수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input type="checkbox"/> ⑩ 없음				
소속 기관 설립유형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① 공립단설 <input type="checkbox"/> ② 공립병설 <input type="checkbox"/> ③ 사립법인 <input type="checkbox"/> ④ 사립사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①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③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④ 민간 <input type="checkbox"/> ⑤ 가정 <input type="checkbox"/> ⑥ 직장			
직위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① 교사 <input type="checkbox"/> ② 부장(주임)교사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① 교사 <input type="checkbox"/> ② 주임교사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소속 기관 규모	정원 _____ 명	교사 경력	_____ 년 _____ 개월		
담당 영유아 연령	만 _____ 세	담당 영유아 수	_____ 명		

육아정책연구소

I.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1. 귀하는 일반적으로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 전혀 심각하지 않음						매우 심각함 →
	1	2	3	4	5	6	7
1) 가정(집)							
2) 어린이집							
3) 유치원							

II.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2. 귀하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음의 행동 중,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V표 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학대가 아님	별로 학대가 아닌 것 같음	대체로 학대인 것 같음	확실한 학대임
1)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2)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3)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리는 행위				
4)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린 행위				
5) 아이를 꼬집은 행위				
6) 아이를 잡고 흔든 행위				
7)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외의 곳을 때린 행위				
8)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힌 행위				
9)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				
10)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향을 지른 행위				
11)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위				
12)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				
13)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14)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행위				
15)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여주고 하는 행위				
16)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행위				
17)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행위				
18)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				
19) 아이를 혼자 집 혹은 고립된 장소에 있게 한 행위				
20) 아이에게 애정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행위				
21)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행위				
22)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23)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컴퓨터나 핸드폰 게임에 중독되어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있는 행위				

3. 귀하는 **귀하가 보육/교육하는 아동에게서** 다음과 같은 신체적·행동적 징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징후를 본 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아동학대를 의심하십니까?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이러한 징후를 본다면 어느 정도로 아동학대를 의심하겠습니까?

구분	본 적 있음	학대 의심 정도			
		전혀 의심하지 않음	별로 의심하지 않음	가끔 의심함	매우 의심함
1) 알 수 없는 멍과 매를 맞은 자국이 있을 때					
2) 몸에 설명되지 않는 화상이나 골절상을 입은 흔적이 있을 때					
3)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있을 때					
4) 다쳤거나 상처가 있어도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을 때					
5) 신체적 상처로 자주 병원에 갈 때					
6)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가 있을 때					
7) 과도한 수면부족 증세를 보일 때					
8)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할 때					
9)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을 때					
10)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때					
11) 잠이 많고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할 때					
12)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순종적일 때					
13) 활동에서 호기심과 탐구심이 없을 때					
14)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극단적 행동을 할 때					
15)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또래들 간에 소외되어 혼자 서성일 때					
16) 강박증이나 공포를 보일 때					
17) 아픔을 호소하고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18) 입전장의 손상이 있을 때					
19)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조속한) 행동을 할 때					
20) 나이에 맞지 않는 해박하고 조속한 성지식을 보일 때					
21) 신체적으로 접촉을 할 때 갑작 놀랄 때					
22) 이유 없이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23) 항상 배고파하고 영양결핍으로 보일 때					
24) 날씨나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당한 옷을 지속적으로 입고 다닐 때					
25)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 때					
26) 어린이집/유치원이 끝난 후 늦은 시간까지 집에서 혼자 있다고 할 때					
27)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할 때					
28)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을 때					

3-1. (3번 문항 중 1개라도 본 적이 있다고 체크한 경우) **귀하가 보육/교육하는 아동에게서** 3번과 같은 징후를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행하신 모든 조치에 체크해주시시오.

- ①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 4번으로)
- ②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보고함 (☞ 4번으로)
- ③ 부모와의 개별 면담 (☞ 4번으로)
- ④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 4번으로)
- ⑤ 피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핌 (☞ 4번으로)
- 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3-1-1번으로)
- ⑦ 기타() (☞ 4번으로)

3-1-1. 귀하가 **귀하가 보육/교육하는 아동에게서** 3번과 같은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이에 대해 대처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①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 ②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을 간섭할 수 없어서
- ③ 해당 부모의 보복이나 비난 등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 ③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 ④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 ⑤ 학대 관정 시 기관이 폐쇄되는 것이 두려워서
- ⑥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 ⑦ 기타()

3-2. (3번 문항 중 1개도 본 적이 없다고 체크한 경우) 귀하는 **귀하가 보육/교육하는 아동에게서** 3번과 같은 징후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①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 ②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보고함
- ③ 부모와의 개별 면담
- ④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 ⑤ 피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핌
- 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⑦ 기타()

4. 귀 기관에서는 아동이 유치원/어린이집에 무단결석할 경우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를 보호자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5. 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다음의 생각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어느 정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라는 생각				
2)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3) '사람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4) '한 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5)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6)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7) '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				
8) '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				

6. 귀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생활 시** 일어날 수 있는 다음의 행동 중, 목격한 적이 있는 행동과 본인이 한 적이 있는 행동에 V표 해 주십시오. 본인이 한 적이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빈도와 지속성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목격한 적이 있음	본인이 한 적이 있음	빈도				지속성 지난 3개월 간 매월 특수한 대체로 상황에서만 지속적으로 함 일어남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1) 영유아의 머리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							
2)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3)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							
4) 도구(장난감, 식판, 막대기 등)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5)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							
6) 특정 공간에 장시간(10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행동							
7)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8)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							
9)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행동							
10)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11)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고의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							
12)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							
13)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 주는 행동							
14) 교사가 영유아에게 또래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							
15)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그냥 두는 행동							

6-1. (6번 문항 중 1개라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체크한 경우) 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6번에서 기술하고 있는 행위를 목격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다가? 행하신 모든 조치에 체크해주세요.

- ①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 6-3번으로)
- ②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함 (☞ 6-3번으로)
- ③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 6-3번으로)
- ④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알림 (☞ 6-3번으로)
- ⑤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 6-3번으로)
- ⑥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 6-3번으로)
- ⑦ 피해아동을 위로함 (☞ 6-3번으로)
- ⑧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6-1-1번으로)
- ⑨ 기타() (☞ 6-3번으로)

6-1-1. 귀하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6번**에서 기술하고 있는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에 대해 대처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 ② 보육/교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 ③ 해당 교사의 보복이나 비난 등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 ④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 ⑤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 ⑥ 피해 영유아 및 부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 ⑦ 학대 관정 시 기관이 폐쇄되는 것이 두려워서
- ⑧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 ⑨ 기타()

6-2. (6번 문항 중 1개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체크한 경우) 귀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6번에서 기술하고 있는 행위를 목격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함
- ②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함
- ③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함
- ④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알림
- ⑤ 언론사나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
- ⑥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함
- ⑦ 피해아동을 위로함
- ⑧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⑨ 기타()

6-3. (6번 문항 중 1개라도 본인이 한 적이 있다고 체크한 경우) 귀하가 6번에서 기술하고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는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내 기분이 우울할 때
- ②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
- ③ 이유 없이 화가 날 때
- ④ 해야 할 일이 많아 짜증이 날 때
- ⑤ 무언가 해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못할 때
- ⑥ 기타 ()

6-4. (6번 문항 중 1개라도 본인이 한 적이 있다고 체크한 경우) 귀하가 6번에서 기술하고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평상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함
- ②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함
- ③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 ④ 아이들과 있는 동안은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노력함
- ⑤ 기타 ()

III. 아동학대 관련 교육 정도

7. 귀하는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7·1번으로) ② 아니오(≡7·5번으로)

7-1. on-line 교육이었습니까? off-line 교육이었습니까?

- ① on-line 교육 ② off-line 교육 ③ on-line과 off-line 교육 모두 받음

7-2. 1년에 총 몇 회를 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7-3. 회당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③ 2~3시간 ④ 3시간 이상

7-4. 해당 교육의 주최 기관은 어디였습니까?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⑤ 유아교육진흥원 ⑥ 건강가정지원센터
 ⑦ 시·도청 ⑧ 시·도 교육청 ⑨ 기타()

7-5. 해당 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8번으로)

- ① 전혀 효과가 없었음 ② 별 다른 효과가 없었음 ③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
 ④ 큰 효과가 있었음 ⑤ 잘 모르겠음

7-6. 귀하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련 교육 일정 등을 알지 못해서
 ② 학대 관련 연수가 없어서
 ③ 업무가 너무 많아서
 ④ 관심이 없어서
 ⑤ 원장이나 학부모가 교육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을 싫어해서
 ⑥ 기타()

8.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피해아동 발견 방법 ② 피해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
 ③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 ④ 학대 부모의 면담방법이나 부모 교육
 ⑤ 아동학대 지원 기관 관련 정보 소개 ⑥ 피해유아에 대한 지도
 ⑦ 아동 인권 ⑧ 아동학대의 영향 및 결과
 ⑨ 아동학대 관련 법률 ⑩ 아동학대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
 ⑪ 스트레스 관리 방안 ⑫ 기타()

9.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대집단 강의 및 강연 ② 소집단 강의 및 강연 ③ 1:1 개별교육
 ④ 집단 토론 ⑤ 온라인교육 ⑥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를 통한 교육
 ⑦ 아동학대 예방 관련 책자 제공

9-1.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강사는 어떤 사람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아교육이나 보육과 교수 ②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 ③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
 ④ 심리학 전공 교수 ⑤ 상담센터 전문가 ⑥ 관련 공무원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⑦ 기타()

IV.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10. 귀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② 원장이나 교사들 간의 갈등
 ③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부족 ④ 교사의 성격이나 정신건강 문제
 ⑤ 영유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 ⑥ 학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⑦ 아동의 기질 및 행동 문제 ⑧ 기관 차원의 관리 및 모니터링 부족
 ⑨ 정책적 지원의 부족 ⑩ 기타 ()

10-1. 귀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유치원/어린이집 인력 확충 ② 교사양성과정 강화(인성교육 등)
 ③ 교사 처우 개선 ④ 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⑤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실시 ⑥ 신고의무제 강화
 ⑦ 기관 내 CCTV 설치 ⑧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⑨ 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⑩ 학대 원장 및 학대 교사 명단 공개
 ⑪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⑫ 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평가 및 상담
 ⑬ 교사의 인·적성 검사 강화 ⑭ 기타()

11. 귀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양육스트레스 |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 <input type="checkbox"/> ③ 부부 및 가족갈등 |
| <input type="checkbox"/> ④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 <input type="checkbox"/> ⑤ 중독(술, 도박, 게임 등) 문제 | <input type="checkbox"/> ⑥ 자녀의 기질 및 행동 문제 |
| <input type="checkbox"/> ⑦ 양육지식의 부족 | <input type="checkbox"/> ⑧ 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 | <input type="checkbox"/> ⑨ 부모 역할에 대한 무지 |
| <input type="checkbox"/> ⑩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

11-1. 귀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
- ②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홍보
- ③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 ④ 기타 문제(가족 갈등 등)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 ⑤ 아동학대 관련 법규 홍보
- 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⑦ 기타 ()

12.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아서
- ②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 ③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서
- ④ 신고 시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 ⑤ 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 ⑥ 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 ⑦ 기타 ()

V.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13. 2012년에 발생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201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어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2016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는 알고 계셨습니까?

관련 내용	전혀 모르고 있었음	들은 적은 있으나 잘 모르고 있었음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
1) 유아 대상 체벌을 금지함				
2)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유치원을 폐쇄함				
3) 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4) 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5) 아동학대범죄피전력자는 취업을 제한함				
6)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로 기존에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됨				
7)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음				
8)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함.				
9) 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10)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11) 2일 이상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함				

14. 귀하는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 ① 네(⇒ 14-1번으로) ② 아니오(⇒ 14-2번으로)

14-1.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_____

14-2. 귀하는 아동학대 신고 시 다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관련 내용	전혀 모르고 있었음	들은 적은 있으나 잘 모르고 있었음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
1) 학대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 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함				
3)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4)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5)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6) 관련 법령				
7)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8) 피해아동보호절차(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17.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②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④ 아동학대 신고자 신변 보호
 ⑤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⑥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⑦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⑧ 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⑩ 기타()

18. 영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영유아 학대 관련한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록 3. 메타분석에 활용된 연구와 각 변인별 상관 계수*)

〈부록 표 1〉 신체적 학대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요인	Zr	95% CI		r	Q	k	I ²	n
		하한	상한					
개인요인-아동특성								
아동성별	0.04	0.00	0.08	0.04	3.82	4	21.5	2,338
아동연령	0.08	0.04	0.13	0.08 ^{***}	1.48	4	0.0	1,882
출생순서	0.15	0.06	0.24	0.15 [*]		1		702
개인요인-부모특성								
아버지 연령	0.13	-0.01	0.27	0.13		1		210
아버지 학력	0.03	-0.04	0.11	0.03	2.07	2	51.7	710
아버지 직업	0.15	0.01	0.29	0.15 [*]		1		500
어머니 연령	0.02	-0.02	0.06	0.02	6.10	5	34.4	2,381
어머니 학력	-0.07	-0.10	-0.03	-0.07 ^{***}	39.15	5	89.8	
경제 수준	-0.06	-0.10	-0.02	-0.06 ^{***}	12.55	6	60.2	2,630
어머니 근무형태	0.19	0.06	0.31	0.18 [*]		1		245
어머니 성격	-0.55	-0.63	-0.47	-0.50 ^{***}	34.10	2	97.1	590
어머니 우울	0.20	0.16	0.24	0.20 ^{***}	14.14	3	85.9	2,785
어머니 종교	0.08	-0.05	0.20	0.08		1		245
어머니 취업유무	0.00	-0.04	0.05	0.00	5.67	3	64.7	1,926
어머니 음주	0.12	0.06	0.18	0.12 [*]		1		1,223
어머니 피학대경험	0.22	-0.07	0.52	0.22		1		47
부모 건강	-0.12	-0.19	-0.05	-0.12 [*]	1.62	2	38.3	745
결혼만족도	-0.22	-0.27	-0.17	-0.22 ^{***}	28.20	2	96.5	1,562
가족유형	0.05	-0.04	0.14	0.05	0.63	2	0.0	448
부부갈등	0.21	0.17	0.25	0.21 ^{***}	26.73	5	85.0	2,565
자녀수	0.07	0.02	0.12	0.07 ^{**}	2.70	3	25.9	1,678
결혼가정	0.31	0.17	0.44	0.30 ^{***}		1		210
양육스트레스	0.20	0.16	0.25	.20 ^{***}	1.43	5	0.0	1,916
양육태도	0.16	0.02	0.30	0.16 [*]		1		500
애착	-0.21	-0.27	-0.15	-0.21 [*]		1		1,062
어머니 사회적지지	-0.13	-0.18	-0.07	-0.13 [*]		1		1,223

*) 동일한 연구에 유사한 변인으로 측정된 경우 별개의 독립적인 연구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종속변인이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방임으로 구분되지 않고 세 변인을 포괄한 아동학대 변인으로 측정되어 진행된 연구는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방임에 미치는 효과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각 메타분석에 투입되었음.

(부록 표 1 계속)

요인	Zr	95% CI		r	Q	k	I^2	n
		하한	상한					
부모의 기타 스트레스 요인	0.15	0.06	0.24	.12***	0.92	2	0.0	1,000
개인요인-교사특성								
교사 연령	-0.06	-0.14	0.03	-0.06	0.66	2	0.0	581
교사 학력	0.09	0.00	0.17	0.09 [†]	0.11	2	0.0	581
교사 자녀유무	-0.10	-0.23	0.03	-0.10		1		246
교사 자아존중감	-0.28	-0.36	-0.20	-0.27***	38.47	2	97.4	545
교사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0.49	-0.54	-0.44	-0.45***	18285	5	97.8	1,516
교사 아동학대 교육	-0.03	-0.16	0.09	-0.03		1		246
교사 결혼여부	-0.07	-0.18	0.04	-0.07	1.70	2	41.2	581
교사 경력	302.00	-0.06	0.10	0.02	0.15	2	0.0	581
교사 성격(내적통제)	-0.07	-0.16	0.01	-0.07	44.15	2	97.7	545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0.13	-0.22	-0.04	-0.13*		1		480
교사 직무스트레스	0.40	0.34	0.46	0.38***	51.78	3	96.1	935
교사 사회적 지지	-0.10	-0.21	0.00	-0.10*		1		335
교사 직무태도	-0.01	-0.11	0.10	-0.01		1		246
교사 직무특성	0.16	0.05	0.26	0.16*		1		246
교사 근로조건	-0.12	-0.18	-0.05	-0.12***	8.59	4	65.1	965
지역사회 요인								
시설 수준	-0.03	-0.16	0.11	-0.03		1		210
기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19	0.06	0.31	0.19*		1		246
어린이집유형	0.03	-0.09	0.16	0.03		1		246
주거환경	0.07	-0.02	0.16	0.07		1		500
사회적 신념	0.29	-0.01	0.58	0.28		1		47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2〉 정서적 학대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요인	Zr	95% CI		r	Q	k	I^2	n
		하한	상한					
개인요인-아동특성								
아동성별	0.01	-0.03	0.05	0.01	3.19	4	6.0	2,338

(부록 표 2 계속)

요인	Zr	95% CI		r	Q	k	I ²	n
		하한	상한					
아동연령	0.12	0.08	0.17	0.12 ^{***}	3.65	5	0	2,019
출생순서	0.19	0.11	0.26	0.19 [*]		1		702
개인요인-부모특성								
아버지 연령	-0.01	-0.15	0.13	-0.01		1		210
아버지 학력	-0.06	-0.13	0.02	-0.06	8.15	2	87.7	710
아버지 직업	0.04	-0.05	0.13	0.04		1		500
어머니 연령	0.06	0.02	0.10	0.06	0.80	5	0	2,381
어머니 학력	-0.04	-0.08	-0.01	-0.04 [*]	34.62	5	88.5	2,583
경제수준	-0.03	-0.07	0.01	-0.03	19.76	7	69.64	2,804
어머니 근무형태	0.00	-0.13	0.13	0.00		1		245
어머니 성격	-0.26	-0.31	-0.22	-0.26 ^{***}	105.68	6	95.3	2,070
어머니 우울	0.19	0.16	0.22	0.19 ^{***}	18.56	6	73.1	3,779
어머니 자기효능감	-0.17	-0.26	-0.07	-0.17 [*]		1		420
어머니 종교	0.06	-0.06	0.19	0.06		1		245
어머니 취업유무	0.03	-0.01	0.08	0.03	0.70	3	0.0	1,926
어머니 음주	0.11	0.05	0.16	0.11 [*]		1		1,223
어머니 피학대경험	0.22	-0.07	0.52	0.22		1		47
부모 건강	-0.11	-0.16	-0.05	-0.11 ^{***}	1.73	4	0.0	1,419
결혼만족도	-0.10	-0.15	-0.05	-0.10 ^{***}	4.09	2		1,562
가족유형	-0.05	-0.15	0.04	-0.05	0.74	2	0.0	448
부부갈등	0.23	0.20	0.27	0.23 ^{***}	23.35	7	74.3	3,565
자녀수	0.07	0.02	0.12	0.070	0.45	3	0.0	1,678
결혼가정	0.15	0.01	0.29	0.15 [*]		1		210
양육스트레스	0.30	0.26	0.33	0.29 ^{***}	52.51	8	86.7	2,830
양육태도	0.00	-0.08	0.09	0.00		1		500
애착	-0.21	-0.27	-0.15	-0.21 [*]		1		1,062
양육시간	-0.08	-0.23	0.07	-0.08		1		174
어머니 사회적지지	-0.08	-0.12	-0.03	-0.08 ^{***}	9.49	3	78.9	1,817
부모의 기타스트레스	0.13	0.08	0.17	0.13 ^{***}	0.15	4	0.0	2,000
개인요인-교사특성								
교사 연령	-0.09	-0.17	-0.02	-0.09 [*]	2.83	3	29.3	718
교사 학력	0.03	-0.04	0.11	0.035	6.14	3	67.4	718
교사 자녀유무	-0.19	-0.32	-0.07	-0.19 [*]		1		246
교사 자아존중감	-0.43	-0.52	-0.35	-0.41 ^{***}	5.27	2	81.0	545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0.52	-0.57	-0.47	-0.48 ^{***}	145.24	5	97.3	1,516
교사 아동학대 교육	-0.08	-0.21	0.04	-0.08		1		246

(부록 표 2 계속)

요인	Zr	95% CI		r	Q	k	I ²	n
		하한	상한					
교사 결혼여부	-0.09	-0.17	-0.02	-0.09 [†]	3.89	3	48.6	718
교사 경력	0.04	-0.03	0.12	0.044	0.87	3	0.0	718
교사 성격(내적통제)	-0.09	-0.18	-0.01	-0.09	26.72	2		545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0.13	-0.22	-0.04	-0.13 [*]		1		480
교사 직무스트레스	0.40	0.34	0.46	0.38 ^{***}	51.80	4	94.21	1,072
교사 사회적 지지	-0.27	-0.38	-0.17	-0.20 [*]		1		335
교사 직무태도	-0.20	-0.31	-0.09	-0.20		1		246
교사 직무특성	0.41	0.30	0.52	0.39		1		246
교사 근로조건	-0.09	-0.15	-0.03	-0.09 [*]	25.50	6		1,239
지역사회요인								
시설 수준	-0.10	-0.24	0.03	-0.17		1		210
기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10	0.00	0.20	0.10	0.15	2	0.0	383
어린이집유형	0.03	-0.07	0.13	0.033	0.15	2	0.0	383
주거환경	0.13	0.06	0.19	0.13	0.03	2	0.0	1,000
사회적 신념	0.29	-0.01	0.58	0.28		1		47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3〉 방임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요인	Zr	95% CI		r	Q	k	I	n
		하한	상한					
개인요인-아동특성								
아동성별	-0.02	-0.06	0.02	-0.02	0.90	4	0.0	2,338
아동연령	0.14	0.09	0.19	0.14 ^{***}	10.05	4	70.1	1,882
출생순서	0.01	-0.06	0.09	0.01		1		702
개인요인-부모특성								
아버지연령	0.03	-0.11	0.17	0.03		1		210
아버지학력	0.00	-0.08	0.07	0.00	0.15	2	0.0	710
아버지직업	0.07	-0.02	0.16	0.07		1		500
어머니 연령	0.09	0.05	0.13	0.09 [*]	1.40	5	0.0	2,381
어머니 학력	-0.06	-0.10	-0.02	-0.06 ^{***}	6.76	5	40.8	2,583
경제수준	-0.02	-0.05	0.02	-0.02	21.05	6	76.2	2,630
어머니 근무형태	0.14	0.01	0.26	0.14 [*]		1		245
어머니 성격	-0.55	-0.63	-0.47	-0.50 ^{***}	34.10	2	97.1	590
어머니 우울	0.20	0.16	0.24	0.20 ^{***}	13.29	3	85.0	2,785
어머니 종교	0.13	0.01	0.26	0.13 [*]		1		245

(부록 표 3 계속)

요인	Zr	95% CI		r	Q	k	I	n
		하한	상한					
어머니 취업유무	0.08	0.04	0.13	0.08 ^{***}	10.43	3	80.8	1,926
어머니 음주	-0.03	-0.08	0.03	-0.03		1		1,223
어머니 피학대경험	0.22	-0.07	0.52	0.22		1		47
부모 건강	-0.09	-0.17	-0.02	-0.09 [*]	0.40	2	-150.0	745
결혼만족도	-0.25	-0.30	-0.20	-0.24 ^{***}	45.48	2	97.8	1,562
가족유형	-0.02	-0.11	0.08	-0.02	0.24	2	0.0	448
부부 갈등	0.22	0.18	0.26	0.22 ^{***}	55.31	5	92.8	2,565
자녀수	0.08	0.03	0.13	0.08 ^{***}	0.55	3	0.0	1,678
결혼가정	0.06	-0.08	0.19	0.06	-	1		210
양육스트레스	0.28	0.23	0.33	0.27 ^{***}	2.21	4	0.0	1,671
양육태도	0.50	0.42	0.59	0.46 [*]		1		500
애착	-0.21	-0.27	-0.15	-0.21		1		1,062
어머니 사회적지지	-0.16	-0.22	-0.11	-0.16		1		1,223
기타스트레스	0.24	0.18	0.30	0.24 ^{***}	0.03	2	0.0	1,000
개인요인-교사특성								
교사 연령	-0.08	-0.17	0.00	-0.08 [*]	2.62	2	61.8	581
교사 학력	0.10	0.01	0.18	0.09 [*]	0.35	2	0.0	581
교사 자녀유무	-0.18	-0.31	-0.06	-0.18 [*]		1		246
교사 자아존중감	-0.35	-0.43	-0.09	-0.33 ^{***}	32.10	2	96.9	545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0.50	-0.55	-0.45	-0.46 ^{***}	165.78	5	97.6	1,516
교사 결혼여부	-0.07	-0.15	0.01	-0.07	2.00	2	50.0	581
교사 경력	0.03	-0.06	0.11	0.03	0.32	2	0.0	581
교사 성격(내적통제)	-0.12	-0.20	-0.03	-0.12 ^{**}	23.54	2	95.8	545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0.13	-0.22	-0.04	-0.13 [*]		1		480
교사 지위	0.03	-0.13	0.20	0.03		1		137
교사 학대교육	-0.09	-0.22	0.03	-0.09		1		246
교사 직무스트레스	0.40	0.34	0.46	0.38 ^{***}	51.78	3	96.1	935
교사 사회적지지	-0.20	-0.31	-0.10	-0.20 [*]		1		335
교사 직무태도	-0.03	-0.14	0.07	-0.03		1		335
교사 직무특성	0.23	0.12	0.34	0.23 [*]		1		335
교사 근로조건	-0.19	-0.26	-0.13	-0.19 ^{***}	56.86	4	94.7	965
지역사회요인								
시설 수준	-0.18	-0.31	-0.04	-0.17 [*]		1		210
기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15	0.03	0.28	0.15 [*]		1		246
어린이집 유형	0.02	-0.11	0.14	0.02		1		246
주거환경	0.20	0.11	0.29	0.20 [*]		1		500

(부록 표 3 계속)

요인	Zr	95% CI		r	Q	k	I	n
		하한	상한					
사회적 신념	0.29	-0.01	0.58	0.28		1		47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4〉 신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연구	독립변인	n	r
김미희(2000)	가족유형	203	0.0906
김순희(2002)	가족유형	245	0.0147
석현숙(2001)	결혼가정	210	0.2973
김아립·탁영란(2016)	결혼만족도	1,062	-0.13
백경숙(2011)	결혼만족도	500	-0.3965
김미희(2000)	경제(소득)	203	-0.0106
도현심 등(2012)	경제(소득)	702	-0.09
석현숙(2001)	경제수준	210	-0.2664
유영선(2012)	경제수준	1,223	-0.022
이주희·이양희(2000)	경제수준	47	-0.13
김순희(2002)	경제수준(월평균수입)	245	-0.0429
도현미(2014)	교사 결혼여부	246	-0.1289
이현순(2014)	교사 결혼여부	335	-0.0194
도현미(2014)	교사 경력	246	0.0388
이현순(2014)	교사 경력	335	0.0065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근로시간)	210	-0.086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근무여건)	210	-0.281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급여)	210	-0.113
이현순(2014)	교사 근로조건(직무여건)	335	-0.034
유성연(2015)	교사 내적통제	210	-0.408
이현순(2014)	교사 내적통제	335	0.154
이현순(2014)	교사 사회지지	335	-0.103
유성연(2015)	교사 시설수준	210	-0.028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480	-0.731
김윤희(2016)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177	-0.6046
도현미(2014)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246	-0.3026
서동미·안선영(2016)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278	-0.225
도현미(2014)	교사 연령	246	-0.0954
이현순(2014)	교사 연령	335	-0.027
도현미(2014)	교사 영유아비율	246	0.1863
도현미(2014)	교사 자녀유무	246	-0.0993

*) 각 연구의 모든 효과의 크기의 값을 r값으로 수정한 결과. r값으로의 변환은 <http://cebc.org/practical-meta-analysis-effect-size-calculator/correlation-coefficient-r/correlation-and-sample-size/>을 활용하였음.

(부록 표 4 계속)

연구	독립변인	n	r
유성연(2015)	교사 자아존중감	210	-0.55
이현순(2014)	교사 자아존중감	335	-0.069
이현순(2014)	교사 지식	335	-0.079
이현순(2014)	교사 직무 태도	335	-0.007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 직무스트레스	480	0.558
김윤희(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177	0.1626
서동미·안선영(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278	0.1511
이현순(2014)	교사 직무특성	335	0.156
도현미(2014)	교사 학대 교육	246	-0.0308
도현미(2014)	교사 학력	246	0.1019
이현순(2014)	교사 학력	335	0.0737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가 과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	480	-0.1336
강성애(2003)	기타 스트레스(경제직업)	500	0.15
강성애(2003)	기타 스트레스(고립)	500	0.11
강성애(2003)	부모건강	500	-0.15
김순희(2002)	부모건강	245	-0.0514
강성애(2003)	부부갈등	500	0.17
유영선(2012)	부부갈등	1,223	0.173
이주희·이양희(2000)	부부갈등	47	0.19
조숙현·윤혜미(2005)	부부갈등	295	0.46
강성애(2003)	부부갈등(가족갈등)	500	0.18
이주희·이양희(2000)	사회적신념	47	0.28
강성애(2003)	스트레스(시험)	500	0.09
김미희(2000)	아동성별	203	-0.0409
도현심 등(2012)	아동성별	702	0.0922
석현숙(2001)	아동성별	210	0.045
유영선(2012)	아동성별	1,223	0.018
김미희(2000)	아동연령	203	0.1464
석현숙(2001)	아동연령	210	0.0485
유영선(2012)	아동연령	1,223	0.085
석현숙(2001)	아버지 연령	210	0.13
강성애(2003)	아버지 직업	500	-0.0184
강성애(2003)	아버지 학력	500	0.068
석현숙(2001)	아버지 학력	210	-0.0508
김아림·탁영란(2016)	애착	1,062	-0.21
김미희(2000)	양육 스트레스	203	0.2517
김미희(2000)	양육 스트레스	203	0.1584
김순희(2002)	양육 스트레스	245	0.2355
김아림·탁영란(2016)	양육 스트레스	1,062	0.19
백경숙(2001)	양육태도	500	0.1798

(부록 표 4 계속)

연구	독립변인	n	r
도현미(2014)	어린이집 유형	246	0.0315
강성애(2003)	어머니 근무(직업유무)	500	-0.0875
김순희(2002)	어머니 근무형태	245	0.1848
유영선(2012)	어머니 사회적지지	1,223	-0.127
조숙현·윤혜미(2005)	어머니 성격(외내향성)	295	-0.3
조숙현·윤혜미(2005)	어머니 성격(정서강박성)	295	-0.66
강성애(2003)	어머니 연령	500	-0.0441
김미희(2000)	어머니 연령	203	0.0506
김순희(2002)	어머니 연령	245	0.0771
석현숙(2001)	어머니 연령	210	0.14
유영선(2012)	어머니 연령	1,223	0.013
김아림·탁영란(2016)	어머니 우울	1,062	0.28
유영선(2012)	어머니 우울	1,223	0.158
유영선(2012)	어머니 음주	1,223	0.119
김순희(2002)	어머니 자녀수	245	0.1675
김순희(2002)	어머니 종교	245	0.0751
김미희(2000)	어머니 취업	203	0.0437
유영선(2012)	어머니 취업	1,223	0.035
김미희(2000)	어머니 타인양육 죄책감	203	0.1907
이주희·이양희(2000)	어머니 피학대 경험	47	0.22
김미희(2000)	어머니 학력	203	-0.0106
김순희(2002)	어머니 학력	245	-0.2211
도현심 등(2012)	어머니 학력	702	-0.21
석현숙(2001)	어머니 학력	210	-0.1183
유영선(2012)	어머니 학력	1,223	0.051
도현미(2014)	연령	246	0.0426
석현숙(2001)	자녀수	210	0.0491
유영선(2012)	자녀수	1,223	0.056
강성애(2003)	주거환경	500	0.07
도현심 등(2012)	출생순서	702	0.1994

〈부록 표 5〉 정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연구	독립변인	n	r
김순희(2002)	가족유형	245	-0.0889
김미희(2000)	가족형태	203	-0.0071
석현숙(2001)	결혼가정	210	0.1483
김아림·탁영란(2016)	결혼만족도	1,062	-0.13
백경숙(2011)	결혼만족도	500	-0.0208
석현숙(2001)	경제수준	210	-0.2504

(부록 표 5 계속)

연구	독립변인	n	r
유영선(2012)	경제수준(가구경제)	1,223	0.012
김미예·박동영(2009)	경제수준(가족수입)	174	0.0957
이주희·이양희(2000)	경제수준(사회경제적지위)	47	-0.13
김미희(2000)	경제수준(소득)	203	0.0261
도현심 등(2012)	경제수준(소득)	702	-0.09
김순희(2002)	경제수준(월평균수입)	245	0.025
도현미(2014)	교사 결혼여부	246	-0.183
이현순(2014)	교사 결혼여부	335	-0.0194
허진년(2014)	교사 결혼여부	137	-0.1087
도현미(2014)	교사 경력	246	0.076
이현순(2014)	교사 경력	335	0.0065
허진년(2014)	교사 경력	137	0.078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근로시간)	210	-0.06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근무여건)	210	-0.322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급여)	210	-0.143
허진년(2014)	교사 근로조건(임금)	137	-0.1196
이현순(2014)	교사 근로조건(직무여건)	335	0.101
허진년(2014)	교사 근무시간	137	-0.1193
유성연(2015)	교사 내적통제	210	-0.358
이현순(2014)	교사 내적통제	335	0.083
허진년(2014)	교사 대 영유아비율	137	0.1222
이현순(2014)	교사 사회지지	335	-0.266
허진년(2014)	교사 시설수준	137	0.0063
이현순(2014)	교사 아동학대 지식	335	-0.24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480	-0.731
김윤희(2016)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177	-0.6046
도현미(2014)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246	-0.3013
서동미·안선영(2016)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278	-0.225
도현미(2014)	교사 연령	246	-0.1582
이현순(2014)	교사 연령	335	-0.027
허진년(2014)	교사 연령	137	-0.1399
도현미(2014)	교사 영유아비율	246	0.0813
도현미(2014)	교사 자녀유무	246	-0.1917
유성연(2015)	교사 자아존중감	210	-0.506
이현순(2014)	교사 자아존중감	335	-0.34
허진년(2014)	교사 지위	137	0.0347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 직무스트레스	480	0.558
김윤희(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177	0.1626
서동미·안선영(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278	0.1511
허진년(2014)	교사 직무스트레스	137	0.3921

(부록 표 5 계속)

연구	독립변인	n	r
이현순(2014)	교사 직무태도	335	-0.198
이현순(2014)	교사 직무특성	335	0.39
도현미(2014)	교사 학대교육	246	-0.0845
도현미(2014)	교사 학력	246	0.087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가 과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	480	-0.1336
강성애(2003)	기타스트레스(고립)	500	0.18
강성애(2003)	기타스트레스(고립)	500	0.16
강성애(2003)	기타스트레스(시험)	500	0.13
강성애(2003)	기타스트레스(시험)	500	0.13
강성애(2003)	기타스트레스(직업)	500	0.11
강성애(2003)	기타스트레스(직업)	500	0.13
이현순(2014)	보육교사 학력	335	0.0737
허진년(2014)	보육교사 학력	137	-0.1564
김순희(2002)	부모 건강(어머니 건강)	245	-0.0488
강성애(2003)	부모건강	500	-0.13
강성애(2003)	부모건강	500	-0.09
김미예·박동영(2009)	부모건강(부모의 건강상태)	174	-0.1591
강성애(2003)	부부갈등	500	0.22
강성애(2003)	부부갈등	500	0.23
유영선(2012)	부부갈등	1,223	0.218
조숙현(2005)	부부갈등	295	0.46
강성애(2003)	부부갈등(가족갈등)	500	0.17
강성애(2003)	부부갈등(가족갈등)	500	0.19
이주희·이양희(2000)	사회적신념(성공욕망)	47	0.28
유성연(2015)	시설수준	210	-0.103
김미희(2000)	아동성별	203	-0.1038
석현숙(2001)	아동성별	210	-0.0166
유영선(2012)	아동성별	1,223	0.023
도현심 등(2012)	아동성별(유아 성별)	702	0.028
김미희(2000)	아동연령	203	0.0578
석현숙(2001)	아동연령	210	0.2056
유영선(2012)	아동연령	1,223	0.105
허진년(2014)	아동연령	137	0.2019
도현미(2014)	아동연령 유아연령	246	0.132
석현숙(2001)	아버지 연령	210	-0.01
강성애(2003)	아버지 직업	500	0.0403
강성애(2003)	아버지 학력	500	0.0108
석현숙(2001)	아버지 학력	210	-0.2216
김아림·탁영란(2016)	애착	1,062	-0.21

(부록 표 5 계속)

연구	독립변인	n	r
김미예·박동영(2009)	양육 스트레스	174	0.486
김미희(2000)	양육 스트레스	203	0.2409
김미희(2000)	양육 스트레스	203	0.3745
김순희(2002)	양육 스트레스	245	0.3827
박동영(2012)	양육 스트레스	420	0.47
박동영(2013)	양육 스트레스	320	0.1438
김미희(2000)	양육 죄책감	203	0.2618
김아립·탁영란(2016)	양육스트레스	1,062	0.19
김미예·박동영(2009)	양육시간	174	-0.0771
백경숙(2011)	양육태도	500	0.0031
이주희·이양희(2000)	양육태도	47	0.19
도현미(2014)	어린이집 유형	246	0.0481
김순희(2002)	어머니 근무형태	245	0.0016
박동영(2012)	어머니 사회적지지	420	0.001
유영선(2012)	어머니 사회적지지	1,223	-0.073
김미예·박동영(2009)	어머니 사회적지지(가족양육지원)	174	-0.2714
박동영(2012)	어머니 성격(분노)	420	-0.217
박동영(2013)	어머니 성격(분노)	320	-0.1458
박동영(2013)	어머니 성격(분노표현)	320	-0.148
박동영(2012)	어머니 성격(신경증)	420	-0.08
조숙현(2005)	어머니 성격(외내향성)	295	-0.3
조숙현(2005)	어머니 성격(정서강박성)	295	-0.66
강성애(2003)	어머니 연령	500	0.0671
김미희(2000)	어머니 연령	203	0.0393
김순희(2002)	어머니 연령	245	0.0486
석현숙(2001)	어머니 연령	210	0.02
유영선(2012)	어머니 연령	1,223	0.077
김미예·박동영(2009)	어머니 우울	174	0.287
김아립·탁영란(2016)	어머니 우울	1,062	0.28
박동영(2013)	어머니 우울	320	0.1403
유영선(2012)	어머니 우울	1,223	0.123
유영선(2012)	어머니 음주	1,223	0.105
박동영(2012)	어머니 자기효능감	420	-0.166
김순희(2002)	어머니 종교	245	0.0632
강성애(2003)	어머니 취업	500명	0.0224
김미희(2000)	어머니 취업	203	0.0451
유영선(2012)	어머니 취업	1,223	-0.015
이주희·이양희(2000)	어머니 피학대 경험	47	0.22
김미희(2000)	어머니 학력	203	0.0275

(부록 표 5 계속)

연구	독립변인	n	r
김순희(2002)	어머니 학력	245	-0.0974
도현심 등(2012)	어머니 학력	702	-0.17
석현숙(2001)	어머니 학력	210	-0.2365
유영선(2012)	어머니 학력	1,223	0.061
김순희(2002)	자녀수	245	0.1087
석현숙(2001)	자녀수	210	0.0724
유영선(2012)	자녀수	1,223	0.062
강성애(2003)	주거환경	500	0.12
강성애(2003)	주거환경	500	0.13
도현심 등(2012)	출생순서	702	0.1857

〈부록 표 6〉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연구	독립변인	n	r
김미희(2000)	가족유형	203	0.0906
김순희(2002)	가족유형	245	0.0147
석현숙(2001)	결혼가정	210	0.2973
김아림·탁영란(2016)	결혼만족도	1,062	-0.13
백경숙(2011)	결혼만족도	500	-0.3965
김미희(2000)	경제(소득)	203	-0.0106
도현심 등(2012)	경제(소득)	702	-0.09
석현숙(2001)	경제수준	210	-0.2664
유영선(2012)	경제수준	1,223	-0.022
이주희·이양희(2000)	경제수준	47	-0.13
김순희(2002)	경제수준(월평균수입)	245	-0.0429
도현미(2014)	교사 결혼여부	246	-0.1289
이현순(2014)	교사 결혼여부	335	-0.0194
도현미(2014)	교사 경력	246	0.0388
이현순(2014)	교사 경력	335	0.0065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근로시간)	210	-0.086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근무여건)	210	-0.281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급여)	210	-0.113
이현순(2014)	교사 근로조건(직무여건)	335	-0.034
유성연(2015)	교사 내적통제	210	-0.408
이현순(2014)	교사 내적통제	335	0.154
이현순(2014)	교사 사회지지	335	-0.103
유성연(2015)	교사 시설수준	210	-0.028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480	-0.731
김윤희(2016)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177	-0.6046
도현미(2014)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246	-0.3026

(부록 표 6 계속)

연구	독립변인	n	r
서동미·안선영(2016)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278	-0.225
도현미(2014)	교사 연령	246	-0.0954
이현순(2014)	교사 연령	335	-0.027
도현미(2014)	교사 영유아비율	246	0.1863
도현미(2014)	교사 자녀유무	246	-0.0993
유성연(2015)	교사 자아존중감	210	-0.55
이현순(2014)	교사 자아존중감	335	-0.069
이현순(2014)	교사 지식	335	-0.079
이현순(2014)	교사 직무 태도	335	-0.007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 직무스트레스	480	0.558
김윤희(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177	0.1626
서동미·안선영(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278	0.1511
이현순(2014)	교사 직무특성	335	0.156
도현미(2014)	교사 학대 교육	246	-0.0308
도현미(2014)	교사 학력	246	0.1019
이현순(2014)	교사 학력	335	0.0737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가 과거에 경험한 부모 의 양육태도	480	-0.1336
강성애(2003)	기타 스트레스(경제직업)	500	0.15
강성애(2003)	기타 스트레스(고립)	500	0.11
강성애(2003)	부모건강	500	-0.15
김순희(2002)	부모건강	245	-0.0514
강성애(2003)	부부갈등	500	0.17
유영선(2012)	부부갈등	1,223	0.173
이주희·이양희(2000)	부부갈등	47	0.19
조숙현·윤혜미(2005)	부부갈등	295	0.46
강성애(2003)	부부갈등(가족갈등)	500	0.18
이주희·이양희(2000)	사회적신념	47	0.28
강성애(2003)	스트레스(시험)	500	0.09
김미희(2000)	아동성별	203	-0.0409
도현심 등(2012)	아동성별	702	0.0922
석현숙(2001)	아동성별	210	0.045
유영선(2012)	아동성별	1,223	0.018
김미희(2000)	아동연령	203	0.1464
석현숙(2001)	아동연령	210	0.0485
유영선(2012)	아동연령	1,223	0.085
석현숙(2001)	아버지 연령	210	0.13
강성애(2003)	아버지 직업	500	-0.0184
강성애(2003)	아버지 학력	500	0.068
석현숙(2001)	아버지 학력	210	-0.0508

(부록 표 6 계속)

연구	독립변인	n	r
김아림·탁영란(2016)	애착	1,062	-0.21
김미희(2000)	양육 스트레스	203	0.2517
김미희(2000)	양육 스트레스	203	0.1584
김순희(2002)	양육 스트레스	245	0.2355
김아림·탁영란(2016)	양육 스트레스	1,062	0.19
백경숙(2001)	양육태도	500	0.1798
도현미(2014)	어린이집 유형	246	0.0315
강성애(2003)	어머니 근무(직업유무)	500	-0.0875
김순희(2002)	어머니 근무형태	245	0.1848
유영선(2012)	어머니 사회적지지	1,223	-0.127
조숙현·윤혜미(2005)	어머니 성격(외내향성)	295	-0.3
조숙현·윤혜미(2005)	어머니 성격(정서강박성)	295	-0.66
강성애(2003)	어머니 연령	500	-0.0441
김미희(2000)	어머니 연령	203	0.0506
김순희(2002)	어머니 연령	245	0.0771
석현숙(2001)	어머니 연령	210	0.14
유영선(2012)	어머니 연령	1,223	0.013
김아림·탁영란(2016)	어머니 우울	1,062	0.28
유영선(2012)	어머니 우울	1,223	0.158
유영선(2012)	어머니 음주	1,223	0.119
김순희(2002)	어머니 자녀수	245	0.1675
김순희(2002)	어머니 종교	245	0.0751
김미희(2000)	어머니 취업	203	0.0437
유영선(2012)	어머니 취업	1,223	0.035
김미희(2000)	어머니 타인양육 죄책감	203	0.1907
이주희·이양희(2000)	어머니 피학대 경험	47	0.22
김미희(2000)	어머니 학력	203	-0.0106
김순희(2002)	어머니 학력	245	-0.2211
도현심 등(2012)	어머니 학력	702	-0.21
석현숙(2001)	어머니 학력	210	-0.1183
유영선(2012)	어머니 학력	1,223	0.051
도현미(2014)	연령	246	0.0426
석현숙(2001)	자녀수	210	0.0491
유영선(2012)	자녀수	1,223	0.056
강성애(2003)	주거환경	500	0.07
도현심 등(2012)	출생순서	702	0.1994

연구보고 2016-34-02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앤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07-7 94330